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How to Improve Goverment Welfare Services for
Low- Income Unwed Mothers in Korea

2010. 9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2010. 9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 보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 구 보 조 원 : 김 은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위원)

최 형 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조사원)

Executive Summary

How to Improve Government Welfare Services for Low-Income Unwed Mothers in Korea

Mijeong Lee, Hye Young Kim, Bo Young Sun, Eunjoeng Kim, Hounng Suk Choi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 . Introduction

A. Background of Study

Along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unwed mothers raising their children,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unwed mother families i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a nationwide public survey on perceptions of unwed mothers, the tendency of judging the moral standards of unwed mothers has significantly declined in Korea (Kim, Hye Young et al., 200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had failed to aggressively support unwed mothers in the past, despite being criticized for carrying out mass “exports” of Korean babies for overseas adoption, has recently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child-care support to unwed mothers and has vigorously initiated support activities.

However, despite the weakened social prejudice against unwed mothers and active government support, the majority of unwed mothers are still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and social prejudice. Women who had been employed at a solid workplace often fall into poverty after becoming an unwed mother. Savings accumulated during employment become depleted as they undergo an emergency

situation of an unexpected pregnancy. The moment a woman decides to carry on with the pregnancy and keep her child, regardless of what her education level or occupational competency may be, social prejudice pushes her into a most strenuous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various welfare services for unwed mothers who are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but many *Yangyukmihonmos* continue to voice concerns about the financial hurdles they face while rearing their children. Although the government states that it provides a wide range of services, the actual welfare services that are perceived to be helpful by *Yangyukmihonmos* seem to be limited. This study will review the welfare services for unwed mother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look into the degree of which such services are being utilized by *Yangyukmihonmo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will go on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welfare services for *Yangyukmihonmos*.

B. Methodology

The main methodologies incorporated in this study are a survey conducted on *Yangyukmihonmos*, analysis of the 2009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data, and interviews with *Yangyukmihonmos*. Interviews with employees of district and *Dong* (village; primary administrative division of a district) offices were also carried out in order to identify the details and execution status of government welfare services. In addition, forums were held to collect opinions of experts and service providers working in the facilities for unwed mothers.

2010 Survey of *Yangyukmihonmos*

Cases were obtained through a snowball sampling method: Members of the "Korean Unwed Mother Family Association" (KUMFA) familiar with the need and details of this survey contacted other unwed mothers who are raising their children (*Yangyukmihonmos*) in community.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Yangyukmihonmos* across the country from April to August of 2010. Survey participant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Jeolla province were located through

referrals by other unwed mothers or by receiving cooperation from unwed mothers' group homes. In the case of Busan, Wonju, Daegu and Inchoen, a survey interviewer took part in self-help meetings for unwed mothers held at each region's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for Single Parents to conduct the surveys. A total of 117 survey responses were collected.

Analysis of 2009 KWDI Data on Unwed Mothers

Data from the KWDI's 2009 study of unwed mothers was used in this study. The KWDI's 2009 study data includes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on unwed mothers of 48 institutions and information collected from unwed mothers who had stayed in facilities for unwed mothers but are now residing in community. They were located through referrals from individuals affiliated with the institutions based on a snowball sampling method. An analysis of the 213 *Yangyukmihonmos* surveyed in the 2009 study was carried out.

Focus Group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Yangyukmihonmos* on the various issues concerning childbirth and childcare, their experiences in using welfare services, and attitudes of social welfare public officials were carried out. Before holding the FGIs, a considerable number of pre-meetings were held in order to build rapport with interview participants. The FGIs with unwed mothers took place from November, 2009 to July, 2010. Around three to five unwed mothers participated in each FGI. A total of seven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collected number of 17 individuals.

II. Literature Review

A. Lives of *Yangyukmihonmos*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unwed mothers raising their children. Most of the studies conducted up until now have been those of unwed mothers residing in

facilities and there exists only limited research on unwed mothers living in community. Because the socio-demographic background or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of unwed mothers suggested in past studies are based on studies of unwed mothers placed in facilities, it is yet unclear whether such findings can be applied to all unwed mothers in Korea including the *Yangyukmihonmos* residing in community.

It is believed that there exist a considerable number of unwed mothers who go through their out-of-wedlock pregnancy without seeking support from facilities, and instead receive assistance from friends and family while giving birth and raising their children. One of the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identify unwed mothers who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while residing in community is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them. Such social prejudice is why locating *Yagyukmihonmos* in community remains to be a great challenge.

Widespread social notions of out-of-wedlock pregnancies have not only affected the lives of unwed mothers but also the studies or policies concerning unmarried mothers (Han, In Young, 1998). Grounded on a widely accepted idea in our society that premarital childbirth is a major social or unethical issue, the early studies have linked single-parent families, poverty-stricken families, reckless sexual relationships, and lack of knowledge on sexual relationships to unwed motherhood (Kong, Il Sook, 2005; Lee, Sam Sik, 1998). The earlier studies on unwed mothers suggest solutions to, and preventive measures for, out-of-wedlock children, an issue that has arisen as a result of non-marital pregnancies.

The reason that the earlier studies focus on finding the causes of unwed-motherhood is due to the belief that such findings are necessary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These studies attempt to understand unwed mothers by associating them with a limited level of education, childhood troubled by poverty and lack of affection, reckless sexual behavior, and lack of proper sex education. The studies also present strengthened sex education as a preventive measure in addition to suggesting adoption as an alternative for unwed mothers (Park, Heung Ju et al., 1993).¹⁾

1) In the 1990s, adoption was thought to be the best option for both the unwed mother and child. Wishes of unmarried mothers to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were

Unwed Mother Related Facilities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Most maternity facilities, which are widely known as “*Mihonmojasiseol*” or “*Mihonmosiseol*” exhibit poor conditions and provide inadequate childcare services (Kong, Il Sook, 2005; Huh, Nam Soon et al., 2005). A study conducted in the early 2000s point out that those living within these facilities experience considerable inconveniences (Lee, Jong Soo, 2003). In these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unwed mothers who have sent their children away for adoption (*Ipyangmihonmo*) and those who continue to rear their children (*Yangyukmihonmo*) reside within the same space, making it emotionally difficult for the former who are suffering pain from the absence of their children. The study suggests that it is advisable for the two groups to be placed separately (Lee, Jong Soo, 2003). Securing private living spaces for the unwed mothers within the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was perceived to be desirable due to the frustrations facility residents feel while abiding cohabitation rules and conflicts arising from interaction between facility residents and staff (Kim, Yu Kyung et al., 2006). One of the problems of living in a maternity facility (*Mihonmoseiseol*) is that they are unable to keep their jobs while staying in a facility. They also noted that they are not given enough time to themselves as they are busy taking care of the work distributed to them such as cooking and cleaning, and spoke of the difficulties of abiding cohabitation rules (Kim, Yu Kyung et al., 2006).

Maternity Homes (*Mojawon*)

According to studies carried out in the early 1990s, families of single mothers rais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or unwed mothers leaving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who wish to rear their children without giving them up for adoption are qualified to enter support facilities known as maternity homes (*Mojawon*). However, it is in fact single-mother families faced with adversities due

dismissed as unreasonable hopes of individuals who are not qualified to be parents (Aeranwon 2010: 45).

to a loss of a spouse (caused by death or other reasons) that actually are admitted into the maternity homes (*Mojawon*) (Park, Heung Ju et al., 1993; Kong, Il Sook, 2005). As of 2002, there are 39 maternity homes (*Mojawon*) throughout Korea. In Seoul, one must stay on the waiting list for one or two years before actually entering into a maternity home (*Mojawon*) (Sa, Yeoun-Keoung, 2002). Even if an unwed mother decides to keep her child, she may eventually end up giving her child up when having to wait a long period of time before being accepted into a home (Sa, Yeoun-Keoung, 2002). A 2003 study points out the low maternity home (*Mojawon*) utilization rate of unwed mothers. According to the 2009 KWDI report, maternity home (*Mojawon*) utilization rate by unwed-mother families accounted for only a meager 10% (Lee, Mijeong et al., 2009; Lee, Jae Jeong, 2003).

Group Homes

The studies conducted in the late 1990s to early 2000s suggest the need of establishing housing in which unwed mothers can raise their children after leaving maternity facilities they used shortly before and after giving childbirth. The 2004 study of 14 *Yangyukmihonmos* residing outside of various support facilities by J. S. Lee suggest that unwed mothers experiencing inconveniences from having to stay in the homes of their family or acquaintances desired for a facility in which they can continue to dwell and rear their children (Lee, Jong Soo, 2003).²⁾ According to information identified through facilities and other sources, there exist a higher percentage of preschoolers among the children raised by *Yangyukmihonmos* than among those reared by other single-parent families. Without childcare support, unwed mothers raising young children experience many challenges in carrying out economic activities. *Yangyukmihonmo* studies of the early 2000s calls for further establishment of maternity homes and strengthened childcare support for single-parents (Lee, Jae Jeong, 2003). With the opening of group homes for *Yangyukmihonmos* in 2003, the government has begun injecting funds into related projects, thereby expanding the supply of such shelters.

2) Among the 14 yangyukmihonmos, 11 lived with their families, one lived with a friend, and one lived alone (Lee, Jong Soo, 2003).

Difficulties Experienced by *Yangyukmihonmos*

Balancing Work and Childcare

Yangyukmihonmos in the late 1990s have identified childcare as a great challenge with which they are faced. According to the *Yangyukmihonmos*, they experience difficulty in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when having to work long hours or during holidays, and because of their relatively low hourly wages, it is financially challenging to pursue both work and childcare (Park, Sook Hee, 2000). Working *Yangyukmihonmos* complain of the frustrations they undergo as they juggle work and child-rearing such as the hurdles they face when attempting to take their children to the hospital or attend after-hour dinner and drinks with colleagues, which is a common practice in Korea's corporate culture (Lee, Jong Soo, 2003).

Some of the challenges of childcare that are pointed out include: the shortage of childcare facilities that provide services during the evening or holidays; heavy burden of childcare costs; the guilt they feel for causing an inconvenience to their family members; and childcare hindering their efforts to obtain necessary job skills or qualifications for seeking employment. Working single-parent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childcare services during evening hours (Lee, Jae Jeong, 2003). Mothers caring for a child encountered many obstacles when preparing for, and seeking, employment, and were living on savings they had accumulated while working at their previous jobs.

Challenges Faced by *Yangyukmihonmos* in Community

The challenges unwed mothers in community experience in terms of childcare include clashes with family members or relatives and frustrations due to limited living quarters (Sa, Yeoun-Keung, 2002). The *Yangyukmihonmos* living with their family say they are troubled by rent, their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and perceptions their neighbors have of them (Lee, Jong Soo, 2003). *Yangyukmihonmos* living with their parents must face the cold and disapproving glances of their conservative neighbors who have lived in the same neighborhood since they were a child, and the negative attitude by neighbors towards their daughters make their parents feel shame and disgr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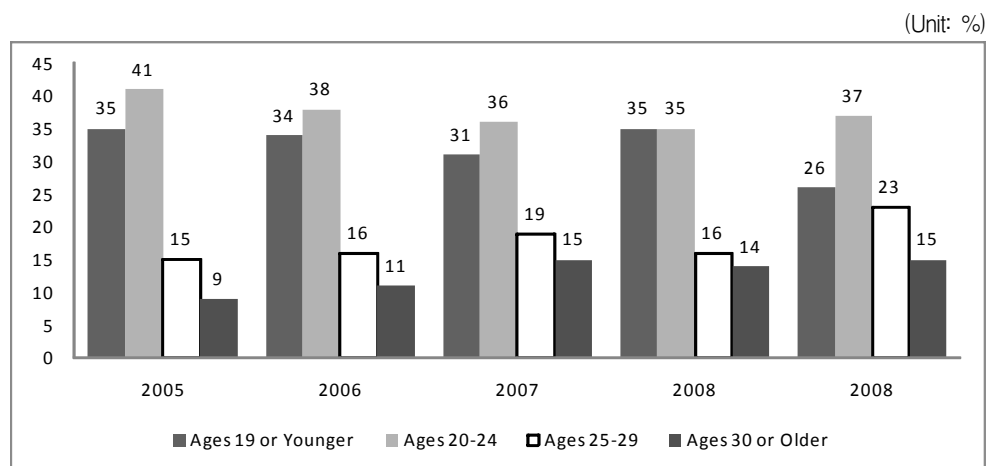
In many cases, unwed mothers who have left maternal facilities with young babies are in need of welfare benefi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y may consider applying for benefits provided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NBLS) scheme but becoming a recipient of NBLS benefits is not an easy task (Huh, Nam Soon et al., 2005). A considerable number of unwed mothers have severed ties with their parents who the law states as the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them, and thus has no one from whom they can receive practical assistance. These unwed mothers can be found ineligible to receive welfare benefits if their estranged parents are deemed economically-capable of supporting them (Huh, Nam Soon et al., 2005).

Yangyukmihonmos Receiving Welfare Benefits

At present, there exists no comprehensive statistics on unwed mothers in Korea.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can gather related statistics by using the data on *Yangyukmihonmos* receiving welfare benefits from local municipal governments. As part of the 2010 survey of living conditions of unwed mothers and fathers raising children on their own (*Yangyukmihonmos* and *Yangyukmihonboos*) in Gyeonggi-do, data of unwed mothers or fathers receiving welfare benefits in Gyeonggi-do broken down by the different districts within the province was released (Seo, Hye-jung, 2010: 39). Among the 371 unwed mothers registered in Gyeonggi-do who received benefits in 2009, 71% receive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PFS) benefits, while 29% received benefits under the NBLS scheme (Seo, Hye-jung, 2010). The 2010 study by Hye-jung Seo conducted a survey on 311 unwed mothers and fathers residing in Gyeonggi-do who are welfare benefit recipients. Among the surveyed individuals, 283 were unwed mothers. Age distribution of the surveyed individuals was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facilities: 22.2% were aged 24 or younger; 22.3% were aged 25 to 30; and over 55.5% were 31 years or older. Compared to other studies,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those in their 30s or older (Seo, Hye-jung, 2010).

B. Decreasing Proportion of Teen Unwed Mothers

Recent media reports or studies have claimed that the proportion of teen unwed mothers is on the rise. However, there is no concrete evidence that supports this view. Let us review a number of data to investigate the arguments that the age of unwed mothers is moving in the downward di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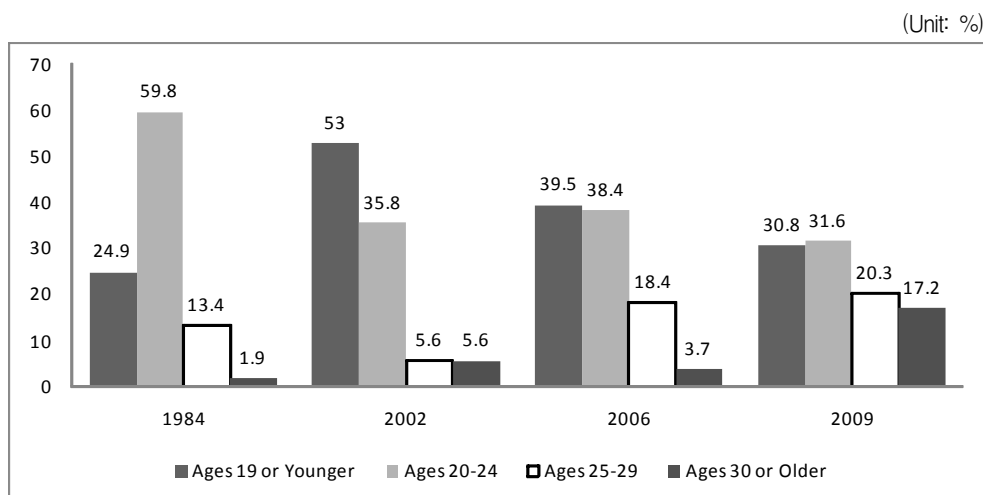


Source: 2005-2009 Internal Data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Figure II-1〉 Age Distribution of Unwed Mothers in Maternal Facilities
(*Mihonmosiseols*)

Let's take a look at data from the mid 2000 and late 2000s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1990s data reflecting the age distribution of unwed mothers residing in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Figure II-1〉 exhibits the age distribution of unwed mothers residing in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by year. The percentage of unwed mothers in their teens continued to grow from the mid 1990s to early 2000s but began to fall in the mid 2000s.

The decline in the proportion of teens among total unwed mothers can also be confirmed in the data compiled under the study of unwed mothers residing in maternity facilities (see 〈Figure II-2〉). There exists no concrete evidence that supports the concern within our society that the proportion of teen unwed mothers is on the rise and that the age of unmarried mothers continues to dec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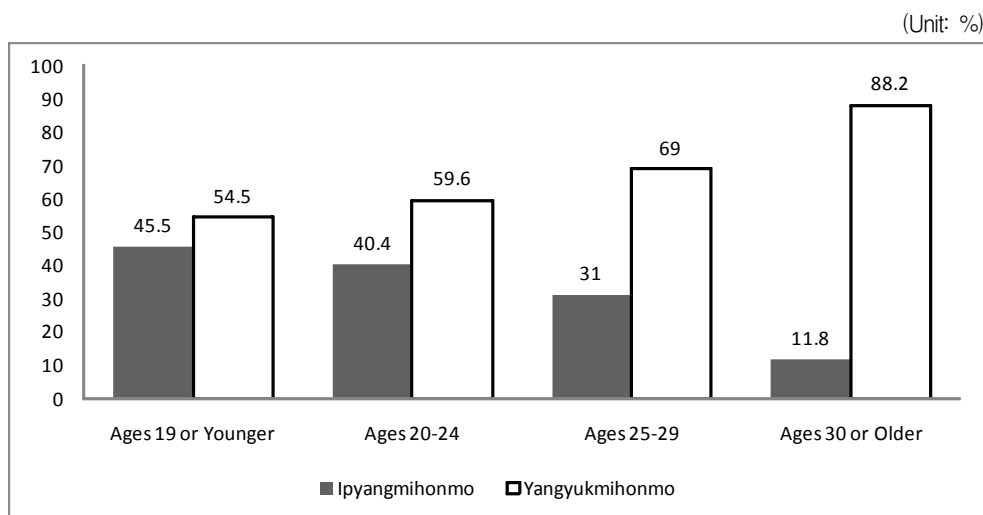
Note: 1984: Ahn, Soon Duk et al., 1984.
 2002: Lee, Si Baek et al., 2002.
 2005: Huh, Nam Soon et al., 2005.
 2006: Kim, Yu Kyung et al., 2006.
 2009: Kim, Hye Young et al., 2009.

〈Figure II-2〉 Age Distribution of Unwed Mothers in Major Studies

The percentage of teens among total unwed mothers continued its upward climb from the mid 1990s to the early 2000s but began to slide from the mid and late 2000s. Although the proportion of teen unwed mothers is decreasing, continuou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occurrence of teen-age unwed mothers, considering how greatly teen pregnancy can limit their education and career opportunities.

C. Difference between *Yangyukmihonmos* and *Ipyangmihonmos*

KWDI's 2009 study of unwed mothers was us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Ipyangmihonmos* and *Yangyukmihonmos*. Among the 321 unwed mothers who gave birth, 33.6% decided to give their child up for adoption while the remaining 66.4% are raising, or planning to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Figure II-3〉 shows the distribution of unwed mothers who have decided to put their children up for adoption or raise them on their own by age.



〈Figure II -3〉 Distribution of *Yangyukmihonmo* and *Ipyangmihonmo* by Age

There wa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Ipyangmihonmos* among the younger unwed mothers, whereas the older age group showed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in the *Yangyukmihonmo* category. 45.5% of unwed mothers aged 19 or younger were found to be *Ipyangmihonmos*. However, the proportion of *Ipyangmihonmos* continued to decline as the age of the unwed mothers went up, with the figure at 40.4% in the 20 to 24 age group, 31.0% in the 25 to 29 age group, and a mere 11.8% among those aged 30 or older. Meanwhile, *Yangyukmihonmos* accounted for 54.5% of unwed mothers aged 19 or younger, 59.6% of unwed mothers aged 20 to 24, 69.0% of those aged 25 to 29, and 88.2% of age 30 and over group, signifying that the older the unwed mothers are,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women deciding to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III. Welfare Services for *Yangyukmihonmos*

A.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PFS) Program

Yangyukmihonmos Related Facilities

Support provided to unwed mothers is based on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PFS) Act. The main support extended to unwed mothers under this act is facility-related. Various facilities for low-income single-parents are provided under the SPFS Program. The faciliti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Yangyukmihonmos* are the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group homes for unwed mothers, and maternity homes (*Mojawon*). The number and housing capacity of maternal facilities increased from the mid 2000s, and with the growing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hildcare support for unwed mothers, there has been a gradual expansion of related services.

Each facility provides free-of-charge housing or accommodations, and based on the SPFS Act, those residing in the facilities can receive welfare benefits. Facility-dwellers who qualify for benefits under the NBS scheme receive the NBS benefits for facility residents, which excludes expenses for housing and meals that are provided by the facilities. During the time period mentioned above, the number of facilities for other single parents did not increase at an exponential rate. However, the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increased from 12 units in 2004 to 32 units in 2009 and the group homes for unwed mothers increased by 2.5 folds from nine units to 23 units within the same time period. The expansion of related facilities in the mid-2000s and late-2000s points to increased interest in support for unwed mothers' childbirth and childcare by policymakers.

In principle, those who enter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are allowed to hold jobs during their stay. However, there are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that do not allow unwed mothers to go to work in order to equally apply the cohabitation rules to all facility inmates. As a result, unwed mothers entering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must experience a discontinuation in their career.

Unwed mothers who leave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are faced with many challenges in terms of seeking a place of residence or rearing their children on their own. Group homes are provided as temporary shelters where the unmarried mothers can stay during the stage when they receive vocational training and prepare to stand on their own feet shortly after leaving the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The significance of the group homes lies in the fact that a place

to stay is provided to unwed mothers raising their children (*Yangyukmihonmo*). However, because there is a ceiling placed on the number of people the group homes can accommodate, only a limited few can benefit from this facility. In addition, as group homes are shared by a number of unw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dependent space and privacy that those residing in the group homes can enjoy are very limited. The fact that they have to share kitchens and eat meals together has also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inconveniences experienced by group home inmates.

Maternity homes (*Mojawon*) are living facilities in which low-income single-mother families can reside for up to three years. Compared to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and group homes for unwed mothers, maternity homes ensure greater privacy of its residents such as providing separate kitchens for each family. However, the percentage of unwed-mother families among total families entering the maternity homes nationwide is relatively low and many *Yangyukmihonmos* give up waiting for an opening during the long wait-list period. Therefore, more maternity homes should be built and provided for the use of *Yangyukmihonmos*.

Welfare Benefits

Welfare benefits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PFS) policy is provided to single-parent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In order to be eligible for the SPFS welfare benefits, single-parent families must have an income level that does not exceed 130% of minimum living costs, which equals to a monthly income of KRW 1,116,370 for a two-person family as of 2010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10).

The welfare benefit which concerns *Yangyukmihonmos* raising young children is the childcare allowance of KRW 50,000. The maximum eligibility age of potential beneficiary children was gradually lifted, and as of 2010, unwed mother families with children up to 12 years of age may receive the childcare allowance. However, although the cap placed on the eligibility age of children has been raised, the amount of the benefit itself remains at KRW 50,000.

Housing Support

According to existing studies on *Yangyukmihonmos*, securing housing was found to be on the top of the list of unwed mothers wanting to raise their children in a stable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provides rental housing to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However, as the demand significantly outnumbers the supply, many give up on securing a rental housing unit. Even if a *Yangyukmihonmo*-family is placed on the same rental housing wait list ranking as a single-parent family, it may be given a lower priority compared to the latter.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number of dependants in a *Yangyukmihonmo* family is typically smaller than that of a single-parent family; the number of consecutive years a *Yangyukmihonmo* has lived in the region of the rental home tends to be relatively shorter; the period in which a *Yangyukmihonmo* participated in a self-support program is relatively shorter, as there was no need for her to become a program participant before her pregnancy; and the number of monthly deposits she has made into her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account will tend to be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others on the wait list.

Welfare Fund Loans

As part of the SPFS Program, loans are extended to single-parents who wish to start their own business. The maximum amount of a loan is KRW 12 million for those without a guarantor and KRW 20 million for those with a guarantor or collateral. The use of the welfare fund loans under the SPFS Program is limited to business start-up capital only. However, KRW 12 million to KRW 20 million is not a sufficient amount to begin a business, and even if one does start a business, there is no guarantee that it will be a success. In fact, in many cases, the endeavors end in failure. For these reasons, it is incomprehensible why such a welfare fund for low-income earners whose basic livelihood should be ensured is limited to the use of business seed money.

Looking at the number of single-parent welfare fund loans by year, there were 123 loans given out in 2004, 138 loans in 2006, and 129 in 2008. During the given time period, only 123 to 143 families received the loans. There is a need to review

ways to more effectively utilize the fund. The welfare fund, which has a low utilization track record, should be used for supply of housing, which is a precondition for individuals to actively engage in income-earning activities, rather than being tied up as start-up capital.

Child Support Enforcement Support Services

Beginning in 2007, the Korean government has begun a free-of-charge legal service program for enforcing single-parent family child support obligations. The program is run by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nd th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Korean Women's Association of Judicial Scriveners, 2010). Under the program, financial support is given to cover costs for child support lawsuits. However, according to interviews with individuals who have pursued child support lawsuits in the past, the process from beginning a lawsuit to actually collecting child support is not so simple. Meanwhile, there are many *Yangyukmihonmos* who do not welcome the government's program for supporting child support lawsuits. Because they have already experienced severe confrontations with the fathers of their children, they are unwilling to once again clash with the fathers during the process of a lawsuit. A system which simplifies the filing for, and execution of, child support is in need.

In Korea, the collection of child support is a matter to be taken care of by the involved parties themselves. However, in the US, the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SCE) is in charge of collecting and transferring child support in accordance to court rulings. The OCSE works with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to identify the amount of income and wealth of a parent living apart and cooperates with the Federal Parent Locator Service (FPLS) for locating a parent who has failed to provide an accurate address or has severed ties (Kang, Ji Won, 2010). In the US or Germany, when a parent living apart refuses to provide child support or cannot pay the mandated amount due to loss of job or other economic difficulties, the government pays the child support on his or her behalf and collects the money from the parent in question when an income is generated. The adoption of such practices sh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to better ensure the welfare of children in Korea (Kang, Ji Won, 2010; Park, Young Mee, 2010).

Community Center for Single Parents

As of 2010, 17 Community Centers Supporting Single Parents are operating in 16 cities or provinces in Korea. The main function of such centers is providing support services concerning childbirth and childcare to single parents. The centers play another important role of informing single parents of the various welfare services and resources that the government offers to them as well as putting them in contact with related institutions. More specifically, community centers supporting single parents give out daily necessities or hospital fees to single parents raising their children on their own who do not qualify for benefits under the NBLS scheme. The centers also support regional self-help meetings of single (unwed) mothers and fathers and promote strengthened ties among them. These community centers assist childbirth costs and children's hospital fees to single-parents in addition to handing out subsidies for purchasing basic childcare supplies such as powdered milk and diapers. Another important function of the community centers is supporting *Yangyukmihonmos* in finding emotional stability and capacity-building by providing consultation services and education or cultural-experience programs as well as assisting unwed mothers' self-help meetings.

Teen Single-Parent Assistance Program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e Teen Single-Parent Self-Support Assistance Program is that it acknowledges and accepts the existence of teen *Yangyukmihonmos* rather than regarding teen pregnancy and childbirth as delinquent behaviors as in the past. The program reflects a policy approach of officially acknowledging and supporting teen unwed mothers. The program, which was put into place to prevent teen unwed mothers from quitting their studies or giving up their child due to social prejudice against non-marital teen pregnancy, is expected to give considerable assistance to teen unwed mothers in pursuing their education and childcare.

Important features of the program include expanded eligibility, which now makes it possible to accept teen single-parents with income levels up to 150% of the minimum living costs into the program, and childcare allowance of KRW 100,000,

which is double that of the allowance granted under the SPFS Program. Medical fees and tuitions are also assisted.

However, the program, established to support *Yangyukmihonmos*, does have limitations: it is offered only to single parents aged 24 or younger. According to existing studies or statistical data analysis, there is a higher proportion of *Yangyukmihonmos* among unwed mothers in their late 20s or 30s compared to unwed mothers in their teens. Therefore, if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lated policy is to support the childcare of unwed mothers, it should be the age of the children, rather than that of the single-parent, that should be used as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recipients of the program's benefits.

B.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NBLS) Scheme

The most important welfare benefit that a low-income *Yangyukmihonmo* can receive i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NBLS) benefits. Potential recipients must satisfy the eligibility criteria of Recognized Amounts of Income, which requires that the potential recipient's income level is below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The Recognized Amounts of Income criteria takes into consideration both the income and asset amount of the potential recipient while the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criteria looks at the ability of the potential recipient's lineal relation to support the potential recipient.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that a *Yangyukmihonmo* may face is the severe confrontations she may experience with her family due to her non-marital pregnancy. Once she decides to raise her child, the emotional or financial ties she had with her family may be ruptured. A serious loophole of this program is that many *Yangyukmihonmos*, who have severed ties with their family and cannot receive any assistance from them, are found to be ineligible for receiving benefits under this program because their parents (the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under the law) have been identified as being financially capable of supporting them based on the parents' income and asset amount.

The benefits provided under the NBLS scheme include livelihood benefits, housing benefits, education benefits, childbirth benefits, and medical benefits. Housing benefits are not provided to recipients residing in a living facility.

Meanwhile, childbirth benefits of KRW 500,000 are granted for every child that is born. An unwed expectant mother who plans to raise her child on her own without residing in a facility can receive the childbirth benefits once she has been designated as a beneficiary under the NBLS scheme.

There are two types of beneficiaries under the NBLS scheme: one is the general recipient who resides in a place of residence other than a facility and another is the special (facility-resident) recipient who receives the benefits while staying in a facility. Unwed mothers who are admitted into maternity facilities (*Mojasiseol*) or maternity homes (*Mojawon*) receive NBLS benefits as special (facility-resident) recipients. In principle, not all of the unwed mothers staying at the facilities are designated as NBLS recipients. Same as the general recipients, they too must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of Recognized Amounts of Income and Person Liable for Support. However, in the case of *Yangyukmihonmos* who fall under the category of special (facility-resident) recipients, the Person Liable for Support criteria may be applied in a more lenient manner than is the case of general recipients.

C. Childcare Support System

Government support services for childcare greatly improved after the year 2000 when Korea's low-birth rate surfaced as a clear social issue. In studies of the early 2000s, the greatest challenge of a *Yangyukmihonmo* rearing a child and engaging in economic activities was found to be childcare. Childcare support is an effective measure that can help *Yangyukmihonmos* be self-sustainable without falling into poverty as they shoulder the responsibility of childcare and livelihood activities.

The government is providing childcare support services on various levels. In the case of qualifying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four, differentiated amounts of childcare subsidies are provided, with subsidy amounts depending on their level of income and age of children. *Yangyukmihonmos* can also receive assistance through a program that supports childcare costs for preschoolers aged 5 years or younger and after-school childcare costs for children under 13 who are attending school. Government support for childcare of infants and toddlers have greatly improved compared to the early 2000s, providing much assistance to *Yangyukmihonmos* who must assume the dual responsibility of work and childcare.

However, despite the extensive childcare support of the government, unwed mothers must still assume the cost of special activity fees, lunch money, teaching material expenses, and field trip expenses when sending their children to day 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Aside from the childcare subsidies for children enrolled in childcare facilities or programs, KRW 100,000 is provided monthly as childcare allowance for parents who look after their children aged under 24 months on their own without using any childcare services. When the income amount of a *Yangyukmihonmo* household falls under the lowest or second lowest income bracket, the *Yangyukmihonmo* can choose to look after her child at home without sending the child to a childcare facility and receive the childcare allowance.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in-home childcare services to households with children of three months to 12 years, whose income levels are below the national average. Although the in-home childcare services has been of great assistance to the *Yangyukmihonmos* who are in need of childrearing support due to their jobs or studies, the budget for such services have been reduced and additional fees have increased, thereby making it burdensome for the *Yangyukmihonmos* to use the service.

Despite the greatly improved childcare support environment, raising a child on one's own remains a great challenge for the *Yangyukmihonmos* living in Korea known for a working environment in which overtime work hours and after-hour staff get-togethers remain as common practice. Given the corporate culture of Korea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avoid working overtime in the evening and attending after-work dinners and drinks, flexible childcare services such as the in-home childcare service should be expanded.

D. Healthcare and Nutrition Services

Healthcare services are available to unwed mother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through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Community Centers for Single Parents, and childbirth benefits under the NBS scheme. In addition, public health centers throughout the country also offer prenatal and postpartum health services. Prenatal blood tests, urine tests, chest x-rays, and ultrasound tests, along with pregnancy ultrasounds, rubella antibody tests, and quad screenings are provided for

free. In addition, vaccines for tuberculosis, diphtheria, polio, typhoid, and varicella are given to infants and toddlers for free of charg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has a program that supports pregnant women up to KRW 300,000 through a voucher card (*Goeunmom*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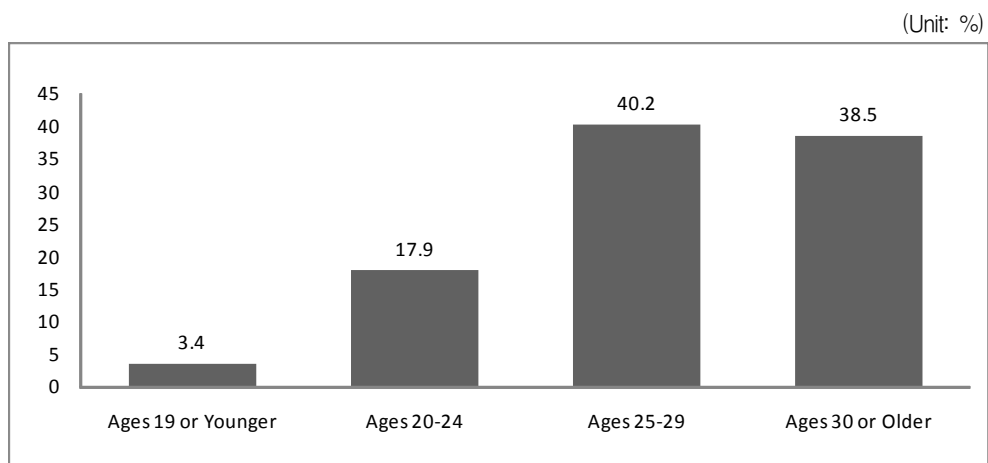
Nationwide public health centers offer a maternal and newborn home care assistant support program to families with a newborn child whose income level does not exceed 50% of the national average household income. Applications for the program can be submitted to local public health centers as early as two months before, and as late as 20 days after, a child is born. The home care assistant service is provided for two weeks and the amount that the service recipient family must assume differs, depending on its level of income. Meanwhile, 250 public health centers in 16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are operating the Nutrition Plus program. Eligible program participants, households with income level that does not exceed 200% of the average national household income, are provided with nutrition-related education and consulting services in addition to meal packages composed of food that have been prescribed to the families based on their nutrition data analysis. Meal packages include items such as rice, potatoes, eggs, milk, black beans, seaweed, carrots, canned tunas, tangerines, and orange juice. Applicants usually exceed the restricted number of people that can be accepted into the program due to a limited budget. Potential health and nutrition risks of applicants are considered when selecting program participants, with priority given to infants and toddlers, expecting mothers, and breast-feeding mothers. When determining the priority order of applicants, a number of factors aside from nutrition and health conditions are also considered. Such factors include: income amount; number of one or two year-old children in the family; and whether the family is a grandparent-grandchild family, a single-parent family, or an unwed mother family.

IV. Economic Situations of *Yangyukmihonmos*

A. Data Description

The majority of *Yangyukmihonmo* cases collected under the 2010 survey, which is around 86.2% of the total, resided in community, a finding that differed from the results of existing studies which mainly collected data from facility-dwelling *Yangyukmihonmos*. Looking at the age distribution of *Yangyukmihonmos* in the 2010 survey of this study, only 3.4% of the total were found to be women aged 19 or younger, a considerable variation from the 26% represented in the data of maternity facility (*Mihonmosiseol*) inmates collected by the government in 2009. Those aged under 25 accounted for only 21.3% of the total, once again significantly deviating from the 63% represented in the 2009 government data of unwed mothers residing in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Unwed mothers in the 25 to 29 and the 30 and over age groups accounted for 40.2% and 38.5% of the total, respectively. In short, survey participants aged 25 or older represented 78.7% of the total, meaning that most of the survey subjects are distributed in the mid-20s to late-20s and 30s age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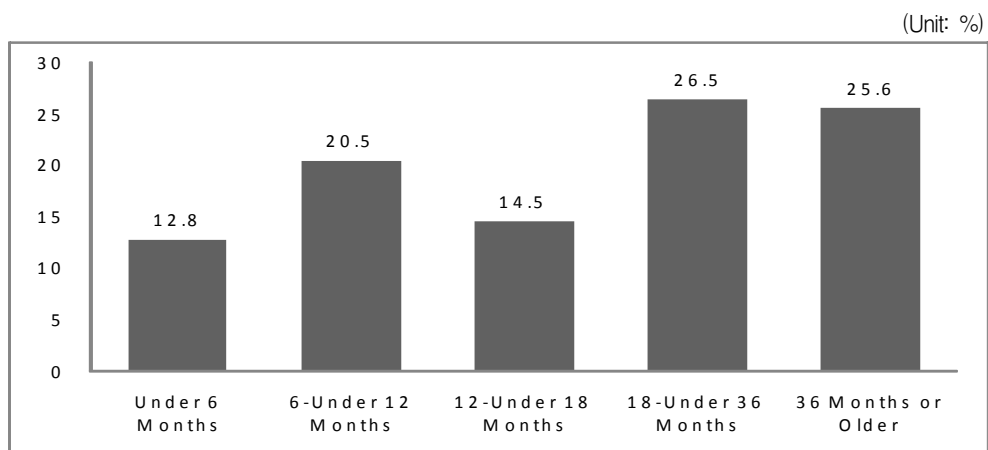
The fact that the survey participants of the 2010 *Yangyukmihonmo* data implies that the *Yangyukmihonmos* who do not turn to various unwed mother facilities tend to be older than those who do reside in the facilities. As can be seen, the age distribution of unwed mothers varies, depending on the incorporated sampling method or survey venue. When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age distribution and survey venue of the various study data, understanding of overall unwed mothers can be enhanced.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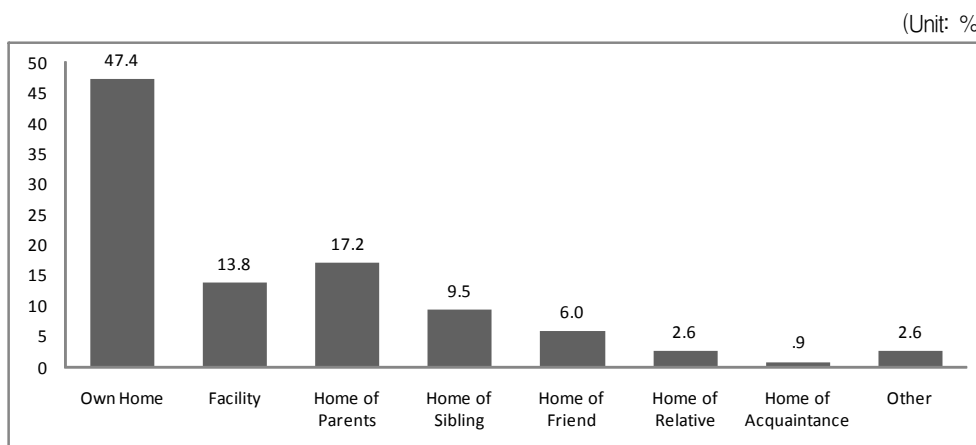
〈Figure IV-1〉 Age Distribution of *Yangyukmihonmos* in 2010 Study

Unwed mothers whose children are under 12 months accounted for 33.3% of the total in the 2010 data. And the 18 to 36 months group represented 26.5% while the 36 months or older group 25.6% of the total in the 2010 study.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Figure IV-2〉 Age Distribution of Children of Unwed Mothers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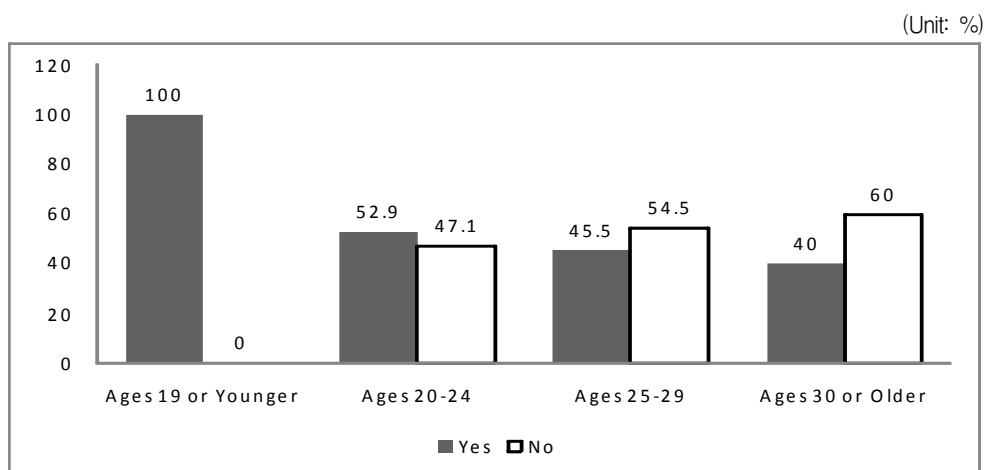
〈Figure IV-3〉 Residence of Respondents

The place of residence of *Yangyukmihonmos* in the 2010 study also differed greatly from the results found in existing studies. Only 13.8% of the total was found to live in facilities for unwed mothers while the remaining respondents resided in community. 47.4% of the subjects inhabited in their own homes, 17.2% in the home of their parents, 9.5% in the home of their siblings, and 6.0% in the home of their friends (see <Figure IV-3>). As can be identified in these figures, approximately 40% of all subjects were staying in a home of someone other than themselves such as their parents. Most of the *Yangyukmihonmos* in the 2010 survey were found to be living in community.

B. Residence Conditions of *Yangyukmihonm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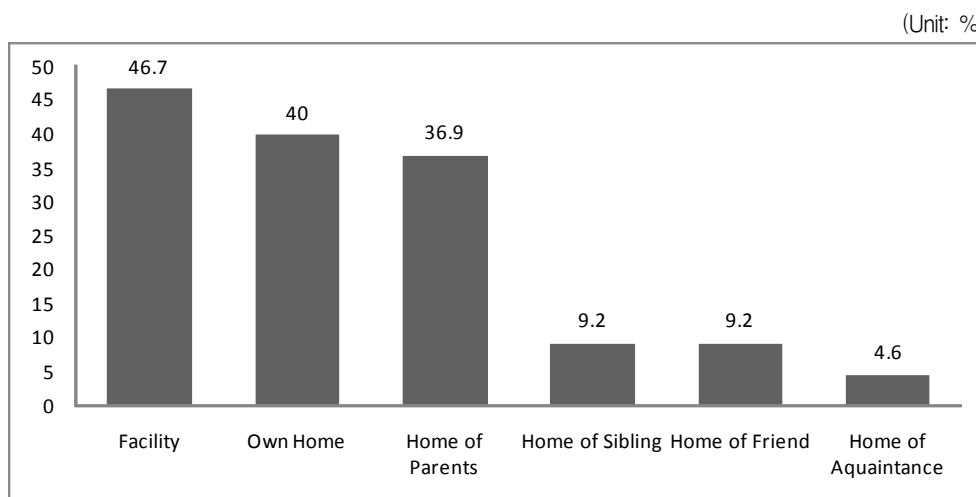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2010 *Yangyukmihonmo* study, *Yangyukmihonmos* who resided in a maternity facility (*Mihonmosiseol*) at the time of childbirth accounted for 46.7% of the total, with the remaining 53.3% having given birth to their children without the assistance of a maternity facility (*Mihonmosiseol*). The maternity facility (*Mihonmosiseol*) utilization rate at the time of childbirth differed by age groups. The figure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maternity facility (*Mihonmosiseol*) users at the time of childbirth is relatively high among the *Yangyukmihonmos* aged 24 and

under. Meanwhile, only 45.5% of *Yangyukmihonmos* aged 25 to 29 and 40% of those over 30 replied that they had resided in a maternity facility (*Mihonmosiseol*) at the time of childbirth, showing us that the proportion of *Yangyukmihonmos* who had turned to a maternity facility (*Mihonmosiseol*) for childbirth in the older age groups was lower than those who had not. Al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urvey, we can assume that the proportion of the mothers under-25 staying in maternity facilities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older age group(*Mihonmosiseoul*). When considering that the data of previous unwed mother studies were mainly based on unwed mothers residing in facilities and that their ages are relatively younger than the subjects of the 2010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age of unwed mothers who have not utilized facilities i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who have.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Figure IV-4〉 Use of Maternity Facility (*Mihonmosiseol*) by Age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Note: Bar to the far left shows that the ratio of respondents who resided at a facility before or after giving birth is 46.7%, which also signifies that 53.3% gave birth to child without utilizing a facility. The five bars to the right display the distribution of places in which the respondents who gave birth at a venue other than a facility resided before and after childbirth. The sum of the percentage of the five bars equals 100%.

〈Figure IV-5〉 Residence Before and After Giving Birth

46.7% of survey respondents gave birth to their child in a facility while more than half of the survey participants, 53.3%, gave birth in community. One third of the total in the 2010 survey are *Yangyukmihonmos* who had resided in facilities for childbirth or child rearing but are now living in community.

Where did the mothers in community stay as they prepared for childbirth and looked after themselves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Figure IV-5〉 shows the distribution of *Yangyukmihonmos*' place of residence at the time of childbirth. Among the *Yangyukmihonmos* who did not stay in facilities, 40% were found to have stayed in their own homes, 36.9% in their parents' home, and 9.2% in their sibling's home.

C. Income Level of *Yangyukmihonmos*

Income Level

In this chapter, income level of *Yangyukmihonmos* will be reviewed using the 2009 and 2010 data. 52.1% of the 2010 respondents earned income through employment activities while 47.9% were found to have no earned income. Without any earned income, how are these women able to support child rearing expenses? A review of income generation by source was carried out with the possibility of respondents having more than one income source taken into account. Various sources of income were identified through this review: 54.7% of the total were found to have income generated through benefits under the NBLS scheme, 22.2% through SPFS benefits, 18.8% from assistance from parents/siblings, and 8.6% through the financial assistance of the child's father of the family of the child's father.³⁾

〈Table IV-1〉 Income Generation by Income Source

(Unit: %,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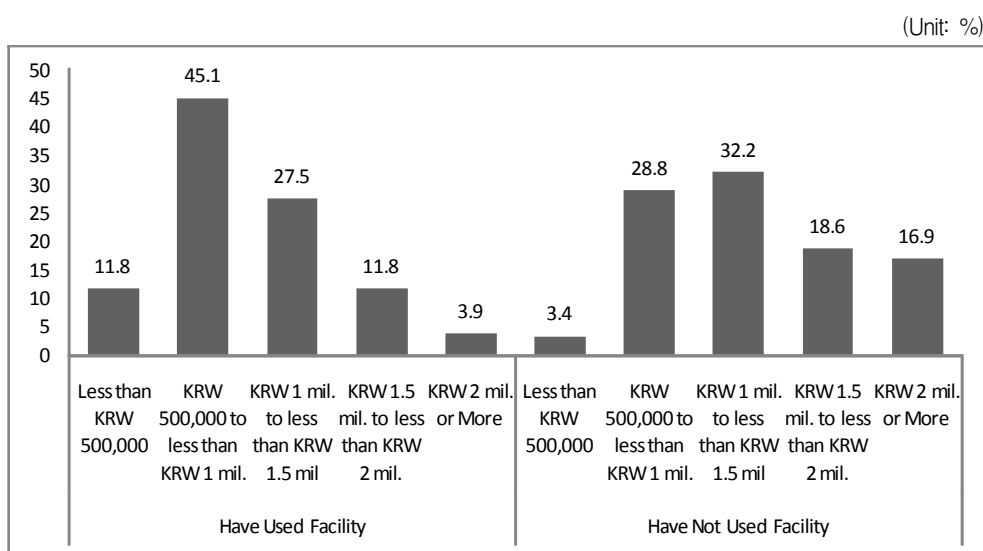
Income Source	Income Generation
Regular employment activities	52.1% (61 persons)
NBLS benefits	54.7 (64)
Single-Parent Family Support benefits	22.2 (26)
Part-time job	6.8 (8)
Financial Assistance from parent/sibling	18.8 (22)
Financial Assistance from friend/relative	1.8 (2)
Financial assistance from father of child/family of father of child	8.6 (10)
Other	4.3 (5)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Let's take a look at how income levels vary by *Yangyukmihonmos*' characteristics, using the 2010 data analysis. First, let's review if there i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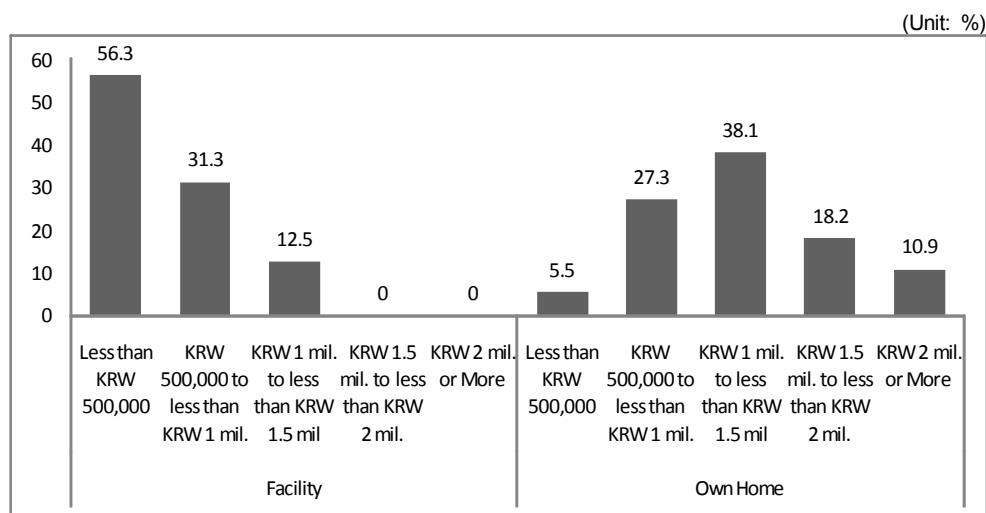
3) Income generated from employment activities and part-time jobs are all accounted as earned income. Employment activities, in comparison with part-time jobs, refer to full-time work on a continuous basis.

difference in the level of income between *Yangyukmihonmos* who have and do not have a facility experience. <Figure IV-6> below displays the gross income distribution by facility experience. Overall, *Yangyukmihonmos* who have resided in facilities have a relatively lower income level compared to those who have not. *Yangyukmihonmos* with an income level under KRW one million accounts for 56.9% of respondents who have resided in facilities, whereas only 32.2% of the non-facility users fall under this income bracket. On the other hand, only 15.7% of facility users have income levels of KRW 1.5 million or more, but this figure increases by two-folds to 35.5% in the non-facility user group. It would be inaccurate to interpret the data as the facility utilization experience bringing down one's income level. Rather,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re exists a socioeconomic gap among the two groups before they become unwed m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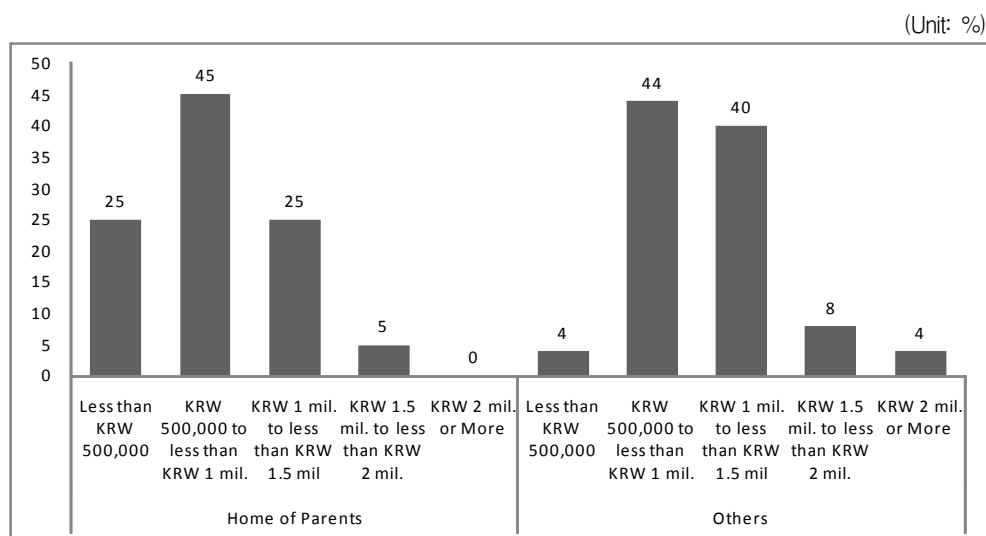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Figure IV-6> Gross Income Distribution of Facility Users and Non-Users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Figure IV-7〉 Distribution of Current Gross Income by Residenc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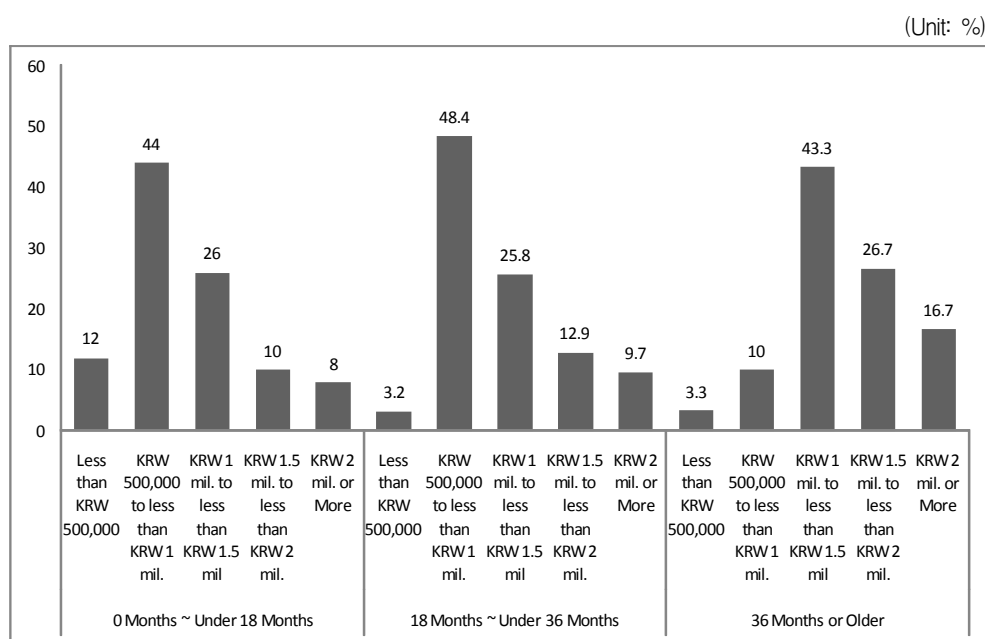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Note: "Other" includes "Home of Sibling," "Home of Friend," "Home of Relative," "Home of Acquaintance" and "Other".

〈Figure IV-8〉 Distribution of Current Gross Income by Residence II

When looking at the current income distribution by residence, it can be found that the respondents residing in a facility or their parent's home are more likely to have a low level of income. 56.3%, 25%, 5.5%, and 4% of *Yangyukmihonmos* living in a facility, their parent's home, one's own home, and other place of residence, respectively, had an income of KRW 500,000 or less. Meanwhile, 29.1% of respondents residing in their own home were found to have an income level of KRW1.5 million or more, whereas only 5% of those residing in the home of a parent and 12% of those in the "other" category matched this income level. These statistics should also be interpreted as the *Yangyukmihonmos*' place of residence differing by their socioeconomic capacity rather than their current place of residence affecting their income level.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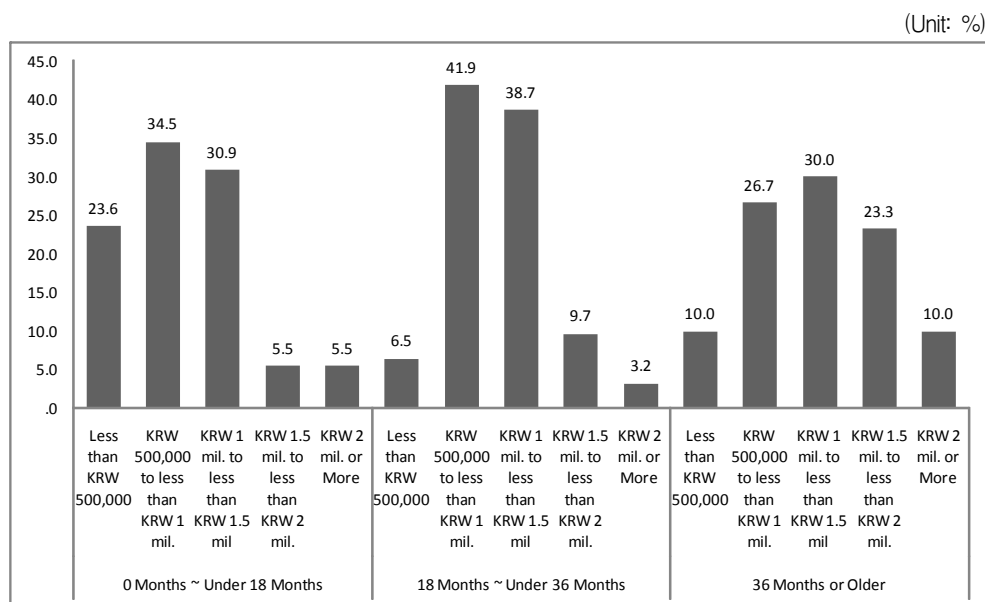
〈Figure IV-9〉 Distribution of Gross Income by Child's Age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having a young child to care for serves as a variable which hinders the economic activity of women. In order to identify the income

distribution by the respondents' children's age, the children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0 to 18 months, 18 to 36 months, and over 36 months. The income distribution of each age group is presented in <Figure IV-9>. The younger the children are, the lower the income level was found to be. Although the income level of the 0-18 month and the 18-36 month age group does not vary significantly, there is a vivid difference in the income level of those under 36 months compared to that of the over-36-month group. Only 13.3% of the over-36-months group displayed an income level of less than KRW one million, whereas in the 0-18 months age group and the 18-36 months group, the rate jumped to 56% and 51.6%, respectively. The finding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ies of *Yangyukmihonmos* with children under age three can be limited.

Level of Spending

The level of spending by *Yangyukmihonmo* households varies, depending on the age of the children. After categorizing the respondents' children into the three groups of 0-18 months, 18-36 months, and over 36 months, an analysis to identify the total monthly spending by the age of the children was carried out.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older the children, the greater the amount of spending. Those who spent less than KRW 1 million in total monthly spending within each group of the 0 to 18 months, 18 to 36 months and over 36 months, accounted for 58.1%, 48.4% and 36.7% of the surveyed,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spent KRW 1.5 million or more within each group of the 0 to 18 months, 18 to 36 months and over 36 months tends to increase with the children's age, comprising 11%, 12.9% and 33.3%, respectively.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Figure IV-10〉 Distribution of Total Spending by Child's Age

Yet, it may be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ost spent on raising a child aged 0 to 18 months is lower than that for a child over 36 months. The reason being is that, as stated previously,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come level between the 0 to 18 month group and the over 36 months group, which affects their spending.

〈Table IV-2〉 Recipients/Non-recipients of the NBLS Benefits by Child's Age

(Unit: %, Persons)

Child's Age	NBLS Benefits		Total
	Recipients	Non-recipients	
0-18 months	58.9 (33)	41.1 (23)	100 (56)
18-36 months	58.1 (18)	41.9 (13)	100 (31)
Over 36 months	43.3 (13)	56.7 (17)	100 (30)
Sub total	54.7 (64)	45.3 (53)	100 (117)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Figure IV-2> shows that 54.7% of the surveyed received the NBLS benefits while that percentage dropped with an increase in the age of the children; 58.9% of the 0 to 18 months group received the benefits whereas only 43.3% of the over 36 months group were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Difference does exist by the age of the respondents' children not just in whether or not to have received the NBLS benefits, but in the amount of benefits received. As presented in <Table IV-3>, the median amount of the NBLS benefits received by the 0 to 18 month group was KRW 630,000, and it goes down to KRW 500,000 for the 18 to 36 month group and KRW 320,000 for the over 36 month group.

Respondents with younger children (aged 0 to 18 months) in the survey received the NBLS benefits more compared to those with older children (aged over 36 months) means that the overall income level of the former group is lower. In other words, the income level of the 0 to 18 month group is lower than that of the over 36 month group, which has impact on their overall spending. NBLS beneficiaries are also entitled to additional government support such as Class I and II medical protection and coverage for childcare costs. Being an NBLS beneficiary indicates that his/her income is low but, at the same time, it means that he/she is provided with government support in healthcare and childcare, therefore does not or hardly need to spend out-of-pocket on such items.⁴⁾

4) Let's look at the respondents' actual spending amount broken down by the age of their children, which does not include the government support and goods in kind received from family. Unlike the total spending, the 0 to 18 months group was found to spend the most, especially on childcare and purchasing powdered milk/diapers. The amount spent on childcare was KRW 300,000 for the 0 to 18 months group, KRW 200,000 for the 18 to 36 months group and KRW 155,000 for the over 36 months group, signifying that the older the child is, the lower his/her mother tends to spend on childcare. Powdered milk/diaper costs also showed a downward trend with an increase in the age of their children, spending KRW 100,000 by the 0 to 18 months group, KRW 80,000 by the 18 to 36 months group and KRW 54,000 by the over 36 months group. Among those who spent out-of-pocket without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the 0 to 18 months group was found to spend more on childcare than the other groups. The same was true with the costs related to baby product purchase and health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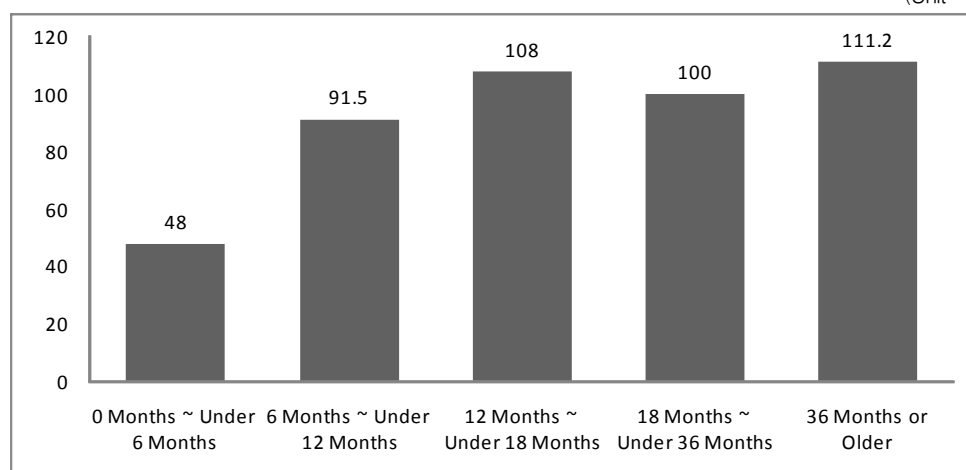
〈Table IV-3〉 Median Amount of the NBLS Benefits Received by Child's Age

(Unit: KRW 10,000)

Child's Age	Median Amount of the NBLS Benefits Received
0-18 months	63
18-36 months	50
Over 36 months	32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Unit: %)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Figure IV-11〉 Median Monthly Spending by Child's Age

〈Figure IV-11〉 above demonstrates the distribution of total monthly spending by the age of the children. The spending amount varies, depending on the age of the children. The median monthly spending of the 0 to 6 months group was KRW 480,000, which was the lowest among the groups surveyed, and the 6 to 12 months group spent KRW 915,000, which is still KRW 100,000-200,000 lower than that of those over 12 months groups who spent at least KRW 1 million; KRW 1.08 million by the 12 to 18 months group, KRW 1 million by the 18 to 36 months group and KRW 1.11 million by the over 36 months group. It is believed that the significantly lower amount of spending by *Yangyukmihonmos* with children aged 6 months or

younger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limited employment opportunities due to taking care of their babies as well as a higher percentage of them receiving the NBS benefits and living in a facility or their parents' home.

The government support and goods in kind received from family seem to have some bearing on the gap in the respondents' monthly spending by the age of their children. According to <Table IV-4> below, the median monthly spending varies depending on the respondents' place of residence. Those who were staying in facilities and living in their parents' home spent KRW 335,000 and KRW 629,000, respectively, while those who were living in their own home spent the highest KRW 1.18 million. Those who were staying in the home of a friend or relative spent KRW 1.01 million. As can be seen, the amount of monthly spending is much lower when living in facilities or parents' home.

<Table IV-4> Median Monthly Spending by Current Place of Residence

(Unit: KRW 10,000/No. of persons)

Current Place of Residence	Total Monthly Spending in Median Amount
Own Home	KRW 1.18 million (55)
Facility	33.5 (16)
Home of Parents	62.9 (20)
Other	101 (25)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Table IV-5> Residence by Child's Age

(Unit: %, Persons)

Child's Age	Own Home	Facility	Home of Parents	Other	Total
0-18 months	30.9 (17)	12.7 (7)	30.9 (17)	25.5 (14)	100% (55)
18-36 months	51.6 (16)	16.1 (5)	6.5 (2)	25.8 (8)	100 (31)
Over 36 months	73.3 (22)	13.3 (4)	3.3 (1)	10 (3)	100 (30)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Let's look at the respondents' residence to better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spending broken down by the age of their children. According to <Table IV-5> above, 30.9% of the 0 to 18 months group answered they were living in their

parents' home. Those living in their own home were found to be the biggest spender and, the younger the children are, the lower the percentage of the unwed mothers living in their own home, accounting for a mere 30.9% of the 0 to 18 month group but as high as 73.3% of the over 36 month group. As indicated here, the difference in residence and the children's age has impact on the spending of *Yangyukmihonmo* households.

D. Economic Activities of *Yangyukmihonmos*

According to existing studies, the course of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greatly affects women's pursuit of economic activities and career development. Women who are at the life stage of taking care of young children tend to experience shortened working hours, change in jobs and discontinuation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Here, a review was conducted on how pregnancy and childbirth have changed the economic activities and status of *Yangyukmihonmos*.

While most *Yangyukmihonmos* are high school graduates or have studied in college, one of the reasons that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stay self-sustaining is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ccording to the 2009 KWDI report, almost all *Yangyukmihonmos* regardless of ages quit their jobs due to their pregnancy. Although they are entitled to take maternity leave and they know that, these unwed mothers quit or are forced out of job as they fail to overcome social prejudice. Only 5.7% of those aged 20 to 24, 6.5% of those aged 26 to 29 and 2.2% of those aged over 30 were able to stay with their jobs during pregnancy. Against this backdrop,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a policy that ensures the self-support of *Yangyukmihonmos* by providing them with substantial rights to continue to work regardless of their non-marital pregnancies. The following summarizes an interview with a *Yangyukmihonmo* who was under pressure of leaving her company due to social prejudice.

Is motherhood only acknowledged within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re there no cases of women using maternity leaves even if they are not married? However, I do not have the courage [to go on a maternity leave]. I don't have a particularly large sum of money I have saved nor do I have a competitive skill. Quitting my job is the same as giving up my source

of livelihood (Mindulae 2002, pp. 622-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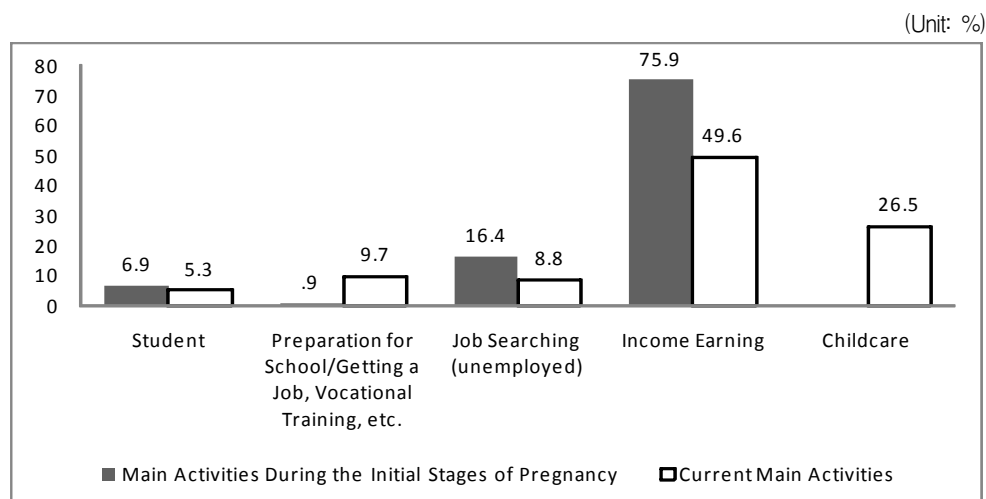
<Figure IV-12> shows that most *Yangyukmihonmos* had participated in economic activities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pregnancy, which is more than 90% of the surveyed total, with 75.9% engaging in income-earning activities and 16.4% in job searching. However significant changes took place along the cours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proportion of those engaging in income-earning activities at the time of the survey declined to 49.6% of the total, which means more than a quarter (1/4) of the survey respondents stopped earning income. Meanwhile, 26.5% answered that they were focusing on raising their children without having a job, which interestingly was a similar percentage to those who gave up on earning income (26.3%). This indicates that many unwed mothers tend to be too busy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able IV-6> Main Activities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Pregnancy and Current Main Activities

(Unit: %, Persons)

	Main Activities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Pregnancy	Current Main Activities
Student	6.9% (8)	5.3% (6)
Preparation for School/Getting a Job, Vocational Training, etc.	0.9 (1)	9.7 (11)
Job Searching (Unemployed)	16.4 (19)	8.8 (10)
Earned Income	75.9 (88)	49.6 (56)
Childcare	–	26.5 (30)
Total	100.0 (116)	100.0 (113)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Figure IV-12〉 Main Activities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Pregnancy and Current Main Activities

Weakened income-earning activities of *Yangyukmihonmos* are also associated with the discrimination put against them in the job hiring process, which makes it even worse for those who have already been suffer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After having my child, I attended a vocational school and shortly after graduation, I entered a junior college where I was always at the top of my class...After graduation, I submitted my resume to a number of companies that had job openings. I was contacted by quite a few of them, which made me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that my past efforts had not been wasted. However, during my final interviews, I was devastated. My strong academic record and certificates didn't help me overcome the fact that I was an unwed mother. The moment I told them I was an unwed mother, they looked at me as if they were saying, "You have some nerve to come here. I just wasted my time." I eventually failed in finding a job (34 year-old unwed mother raising a 9 year-old daughter).

〈Table IV-7〉 shows the change in the respondents' monthly earned income through employment before and after childbirth. There was a considerable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earned income through employment after childbirth; only 13.9%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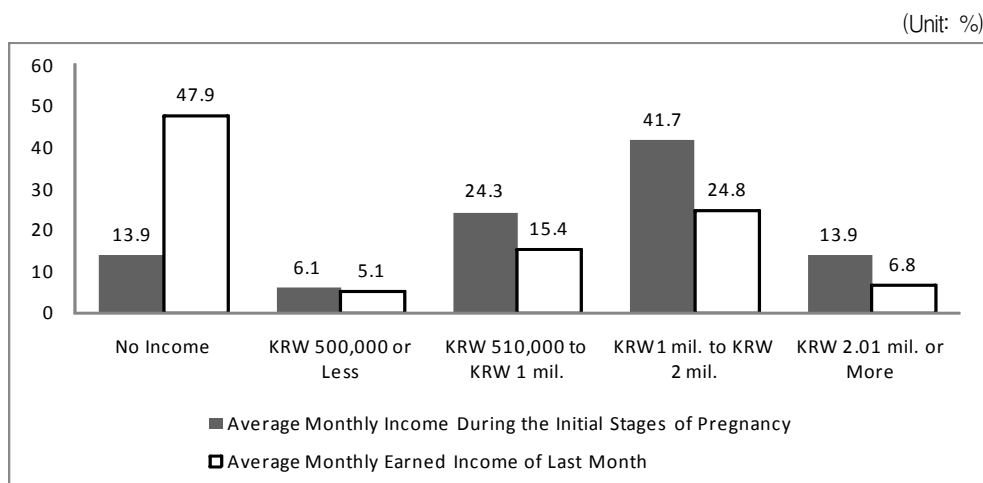
the respondents did not earn any income through employment before they gave birth but the figure jumped to a whopping 47.9% after giving birth. The same trend was detected in the KRW 1.01-2 million income earning group where it went down from 41.7% to 24.8% of the total. Those earning KRW 2.01 million or more also declined sharply from 13.9% to 6.8%, suggesting that their income dropped significantly due to childbirth and care. It is believed that such reduction in income is also affected by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n-marital pregnancy. More often than not, *Yangyukmihonmos* are not in a position to take maternity leave due to cold and disapproving glance of colleagues and pressure from the company, leading them to quit or get forced out of job. This results in a discontinuation in their career and cut in income.

〈Table IV-7〉 Average Monthly Income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Pregnancy and Earned Income of Last Month

(Unit: %, Persons)

	Average Monthly Income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Pregnancy	Monthly Earned Income of Last Month
No Income	13.9% (16)	47.9% (56)
KRW 500,000 or Less	6.1 (7)	5.1 (6)
KRW 510,000 to KRW 1 mil.	24.3 (28)	15.4 (18)
KRW 1.01 mil. to KRW 2 mil.	41.7 (48)	24.8 (29)
KRW 2.01 mil. or More	13.9 (16)	6.8 (8)
Total	100 (115)	100 (117)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Note: The average monthly income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pregnancy includes all types of income such as monthly salary (before tax), allowance and part-time income.

〈Figure IV-13〉 Monthly Income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Pregnancy and Earned Income of Last Month

V. *Yangyukmihonmos*' Experience on Welfare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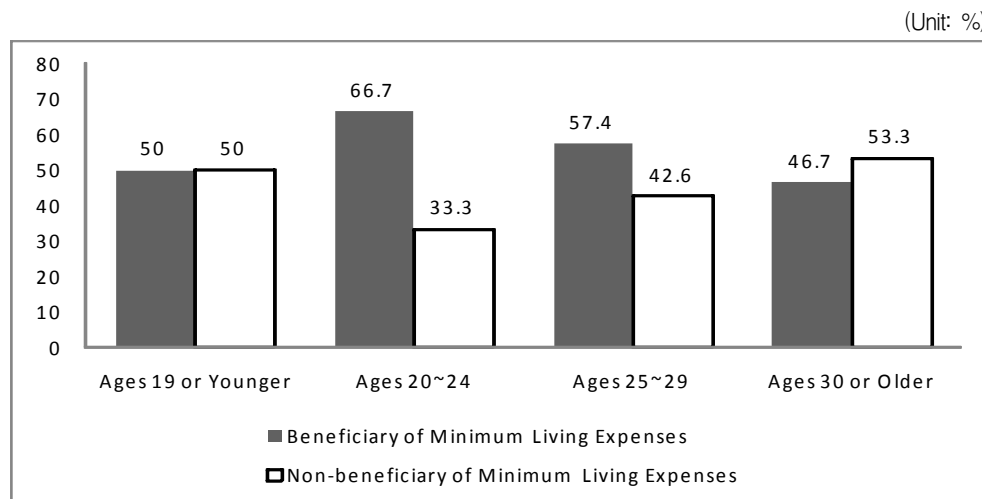
A. Welfare Benefits

The previous chapter of this study looked into *Yangyukmihonmos*' place of residence, economic activities, and their income and spending trend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Now, let's discuss welfare services provided to and experienced by those unwed mothers who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Figure V-1〉 presents the percentage of the *Yangyukmihonmos* who receive the NBLS benefits broken down by age. The respondent group aged 20 to 24 topped the list with 66.7% of them receiving the NBLS benefits, followed by the 20 to 25 age group with 57.4% and the teenager group with 50%. Meanwhile, NBLS beneficiaries accounted for 46.7% in the 30-plus age group, which was the lowest among the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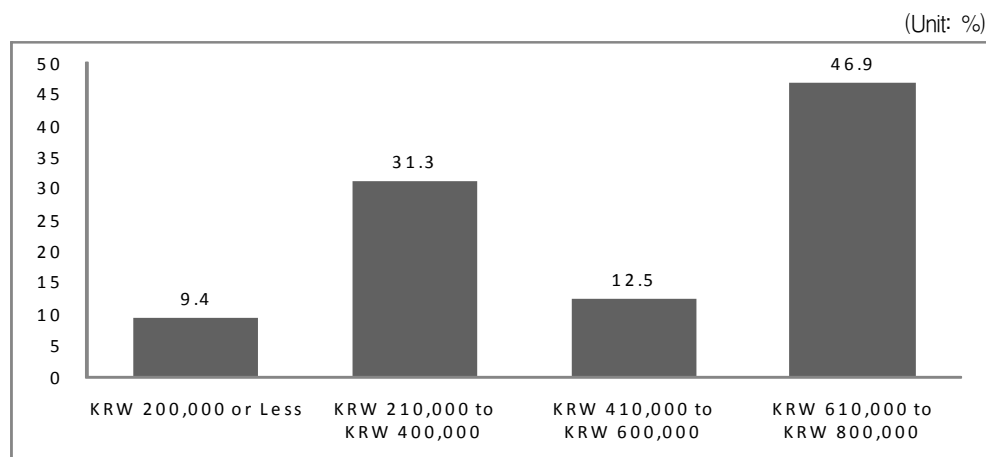
The amount of the NBLS benefits received is shown in 〈Figure V-2〉 where

46.9%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received between KRW 610,000 and KRW 800,000 and 31.3% received between KRW 210,000 and KRW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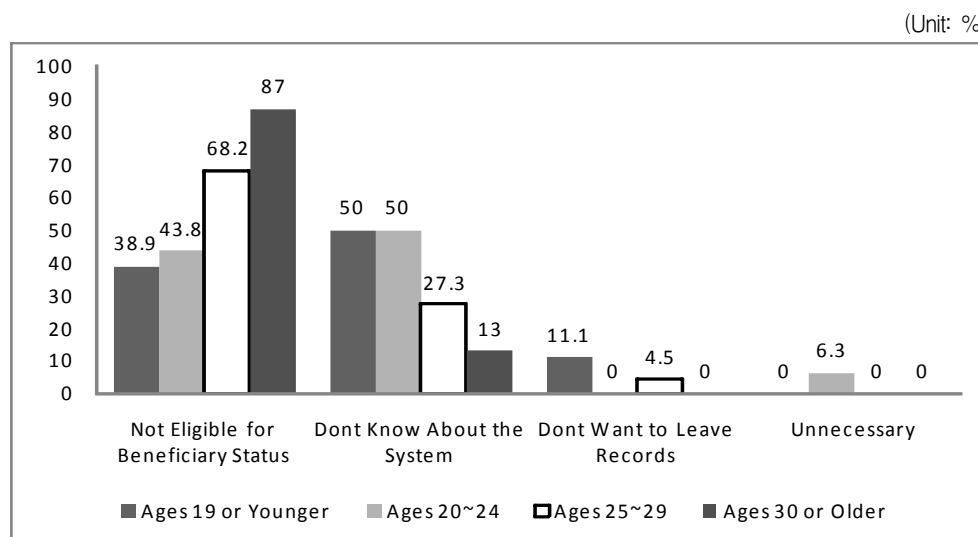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Figure V-1〉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of the NBLS Scheme by Age



Source: 2010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under This Study

〈Figure V-2〉 Distribution of the Amount of the NBLS Benefits



Source: 2009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by KWDI

〈Figure V-3〉 Reason for Not Registering in the NBLS Benefit Scheme

According to the 2009 KWDI study, when asked why they did not register as NBLS beneficiaries, 62%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were not eligible for the beneficiary status and 32.9% said because they did not know about the program (Kim, Hye Young et al., 2009). If parents, the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are deemed to have income and properties that exceed the NBLS beneficiary qualification, their daughter as a *Yangyukmihonmo* becomes ineligible to receive the benefits, which in this survey accounted for two third (2/3) of the total, while those who did not know about the program represented one third (1/3) of the total. Meanwhile, 41.1%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registered in the low-incom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rogram. On the reason for not registering in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rogram, 42.4%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not eligible and 50.8% said because they did not know about the program. Many of them did not appear to have the information on the government’s welfare benefits although they were in serious need of such help.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strong communication to *Yangyukmihonmos* is required to allow them to access such relevant services.

[Have you ever applied for the NBLS benefits?] I didn't even know there was such a thing. There's no one around me who is a recipient. My mother is having a hard time. She also lives alone and is in bad health but has to go to work. So I have to raise my child alone. My baby is now 19 months old. I have to receive postpartum care, and I found that postpartum care services are also provided by the public health centers (29 year-old unwed mother, raising a 19 month daughter).

B. Delivery of Welfare Services

Basic livelihood and childcare support services by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rapidly though not yet sufficient. Despite the government's vigorous efforts, it was suggested that those at Dong offices who are in charge of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Yangyukmihonmos* have a lot to improve; lack of information on the NBLS benefits provided to *Yangyukmihonmos* and rudeness/unkindness to service recipients.

I was staying at a 000 [maternity facility] group home. After residing there for around four months, I moved to Hongeun-dong, which is located near Hongjae-dong. If you stay in a facility, you can maintain your benefit recipient status. After leaving the group home, I went to the dong office to request that 'I may maintain my benefit recipient status.' I began explaining the whole story starting with how I had been staying at the 000 facility. However, the (workers of) the dong office knew nothing about 000. They had no related knowledge. After explaining everything, they let me maintain my benefit recipient status. But then, the social worker in charg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social welfare] was replaced and the new social worker knew nothing about maternity homes...Because I now reside in Hongeun-dong, I asked for the 00 maternity home, but the social worker had no idea where the maternity home is located. So, I wasn't able to apply for the maternity home that day. I submitted my application in March but the application was processed over to the Sungbuk District Office in June. It doesn't make sense not to know about these things in this day and age but when I went to apply for a maternity home,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social welfare) took out a thick book and starting asking around (39 year-old unwed mother raising a 6 year old son).

In my case, I went to apply for the NBLS benefit after becoming an unwed mother. The people 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ried to help me, but the employee at the district office basically told me was that I should go stay at a facility and that NBLS benefits are not for unwed mothers. I don't know who he (she) is to say that the NBLS benefits are not for unwed mothers. I eventually ended up receiving a very small sum of money. [How much?] I called to ask why I received such a small amount but the person on the other end made it

impossible to ask over the phone. So I made an inquiry through a website where you can raise complaints, and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district office], and the person who called told me, in a very condescending voic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handle the issue in this manner” and that it will take about two months to adjust the benefit amount due to their heavy workload. Eventually, I told them that they had hurt my feelings and demanded an apology from them (26 year-old unwed mother raising a 3-year old daughter).

C. Childcare Support Services

Since 2000, perhaps one of the most notable areas in *Yangyukmihonmo* services has been the childcare support services. With the acceleration of an aging population and low birth rates, the government has offered various services to support childcare and has expanded to the middle class, which can be seen as unprecedented given that most welfare services in Korea had been limited to the low-income population. This also demonstrates how serious the low birth rate issue is in Korea. The expansion in childcare support services has improved the working environment for *Yangyukmihonmos*.

I lived in a home of an acquaintance and left my child at a daycare center when I was working. [What was the cost of the daycare center?] I was told that I can receive subsidies. I was told that I don't qualify for benefits under the NBSL scheme, but because we're a low-income single-mother family, I can receive support for childcare. I received 100% of the costs for using the day care center. [How old was your child when you started to use the day care center?] Three months old... [It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for you if you had not received childcare support.] Yes (33 year-old unwed mother, 5 year-old son, 3 year-old daughter).

[19 month daughter is] attending a day care center. [She was sent to the daycare center] after her first birthday. Before [I used the daycare center] I received a subsidy of KRW 100,000. It was in the form of a childcare allowance. I received 100% of childcare costs. But the allowance amount differs according to what support category you are in. If you are better off, you may receive 50% of childcare costs. And you have to apply for the childcare allowance at the Dong office. There is something called childcare cost support...If you send your child to a daycare center, you receive around KRW 300,000 but if [the mother looks after the child] at home, KRW 100,000 is given. Of course, the benefit amount differs by the age of the child (29 year-old unwed mother raising a 3 year-old daughter).

Despite the greatly improved childcare support environment, challenges remain for those *Yangyukmihonmos* who are working for an organization where they frequently have to work overtime and attend after-hour staff get-togethers.

After finding a job, the problem of childcare came up again. I had a hard time because I had to work until the evening quite frequently, and each time, I had to ask people around me to look after my child (34 year-old unwed mother raising a 9 year-old daughter).

D. Adoption Related Services

Child adoption related services remain an important par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According to the interviews conducted for this study, many facilities were found not to provide adequate services for unwed mothers to think through before deciding on whether to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or send them away for adoption, although adoption agencies and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would deny it.

An unwed mother has to have someplace to give birth to her child. She is ostracized from people around her. In such cases, an unwed mother calls [a number of facilities] for consultation. The facility people ask, "Are you going to raise your child or give the baby up for adoption?" If you say you are going to raise your child the facility people tell you, "we have no vacancies." (39 year-old unwed mother raising a 6 year-old son)

I searched for facilities near my company in Yeoksam-dong but they wouldn't even provide basic information or guidelines. If you call and tell them "I'm an unwed mother," they ask, "How many months into your pregnancy?" I tell them "how many months" and that "I want to keep my child." Then they reply that "we have no more vacancies" and refuse to answer further questions (35 year-old unwed mother raising a 27 months-old daugh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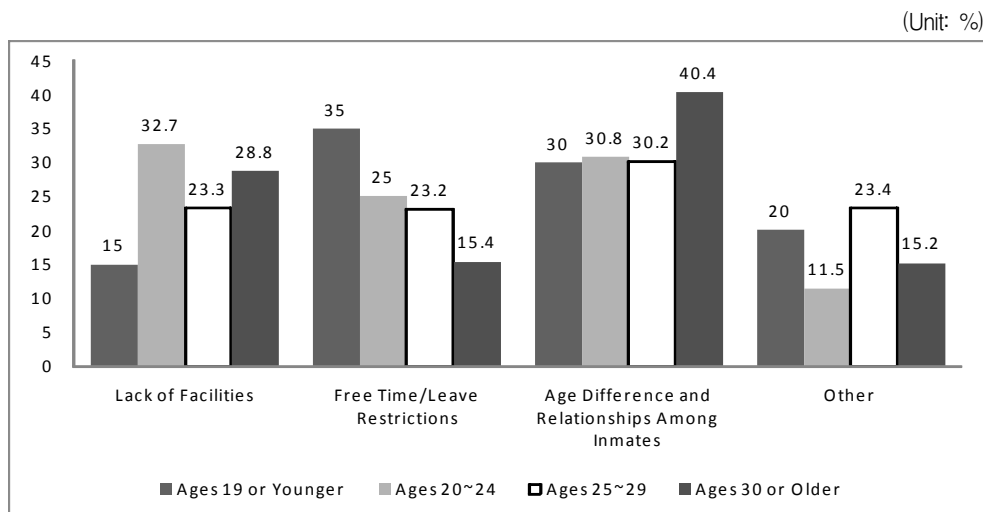
E. Living Environment of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When asked what are the most challenging aspects of living in a maternity facility, 33.2% of the facility-residing respondents pointed to the age difference and interaction among facility residents. 25.7%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facilities and 24.1% noted that they were not given enough free time to themselve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frustrations facility residents feel varied by age group; teenage mothers felt that free time and leave restrictions were the most inconvenient, which was pointed out by 35% of them. Those aged 20 to 24 spoke of the lack of facilities while those aged over 30 considered the age difference and interaction among facility residents the most difficult, which was pointed out by 40.4% of them. Around 30% of those in their teens and 20s also considered it a challenge.

It seems that the privacy issue as well as the control and supervision from facility staff make it not suitable for adult unwed mothers to live in a maternity facility (*Mihonmosiseol*).

I know that there are unwed mothers in a certain age group such as teenage mothers who need to receive care. Also, in the case of the mothers who need to be looked after because they are psychologically unstable, they need to be controlled to some extent or have the welfare workers reprimand them. I too am a facility resident but there is simply no privacy in the facilities. You have to receive permission every time you go outside of the facility or sleep overnight elsewhere (39 year-old unwed mother raising 6 year-old son).



Source: 2009 *Yangyukmihonmo* Data Compiled by KWDI

Note: Other includes a computer use restriction, relationship with people in charge of facility management, strict rules, lack of education programs and the isolation from the outside world.

〈Figure V-4〉 Challenges of Living in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s*)

VI. Policy Suggestions

A. Differential Approach to Unwed Mothers by Age

For a long time, policies related to unwed mothers in Korea were focused on the provision of after-childbirth and adoption related services. Then since the mid 2000s,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among policymakers in providing support for unwed mothers' childbirth and childcare, which was also the time when Korea witnesse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unwed mothers who want to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Most of the data compiled until recently have been about those residing in facilities and relevant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base on that.

This study reveals stark difference between teen and adult unwed mothers in terms of the desire to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dependency on facilities, as well as education and career backgrounds. Such big difference makes it difficult to consider them a homogeneous group. According to the study, there was no concrete evidence for the claim by some media outlets that the proportion of teen unwed mothers is on the rise. Existing policies developed through studies based on maternity facility(*Mihonmosiseol*) view unmarried mothers as being immature and thus need to be protected. Yet, given the adult unwed mothers' level of education, *Yangyukmihonmos* in general should be considered being capable of sorting out their own problems just like other grown-ups. A change in how unwed mothers are seen in our society will lead to a change in policies. And distinctive policy approach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between teen and adult unwed mothers are required; the policy for adult unmarried mothers should focus on restoring their career, which was discontinued due to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hile the policy for teen unwed mothers should help them continue their study, receive proper sex education and explore future career opportunities.

B. Eliminating Job Discrimination based on Non-Marital Childbearing

Although women with non-marital pregnancies are entitled to taking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by the Labor Standard Act and Equal Employment Act, hardly any companies in this country follow this legal requirement. There should be no reason whatsoever to refuse them to enjoy the right that every working mother has. Many unwed mothers fall into poverty after going through the cours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due to social prejudice placed against them. The right to work should be guaranteed of unwed mothers who are highly motivated and capable of working. The Ministry of Labor should come up with a concrete guideline that states forcing employees with non-marital pregnancies to leave their jobs is illegal and that reaffirms the rights of unwed mothers in relation to taking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Discrimination at workplace against pregnant women out of wedlock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female workers and an obstacle to the self-support of *Yangyukmihonmos*. Social prejudice will only increase welfare costs for our society. Efforts should be put in plac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at workplace through massive media campaigns and promotions as well as monitoring and supervision by concerned government agencies.

C. Promoting and Supporting Self-help Groups

Moving away from the previous approach of protecting and educating those presumably-immature unwed mothers, we need to respect them as responsible and independent members of our society and provide information and emotional support they need.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nd support self-help groups for unwed mothers and work in cooperation with community centers to provide welfare inform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As the Korean saying goes, “A thirsty man digs a well”, unwed mothers as they are in great need of various self-support information are to obtain such information more quickly than anyone else. By strengthening support for those self-help groups, the government can save its budget on the traditional activities toward protecting and managing unwed mothers over time.

Given the high level of education that most unwed mothers have received, it is fair to say that they have the capability to collect job-searching and welfare related

information through self-help groups and make due preparations for themselves. If various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re well communicated and delivered to unwed mothers, they will be able to raise their children successfully on their own while residing in community. Close cooperation among community centers supporting single parents, Dong offices delivering welfare services, and self-help groups for unwed mothers will greatly help improve the welfare of *Yangyukmihonmos* residing in community.

D. Improving Service Quality within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researchers and unwed mothers that highlight the problems in the facility centered government policy. They argue that we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unwed mothers can raise their children on their own based on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without seeking assistance from live-in facilities.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quite a number of unwed mothers who need facility services due to social prejudice and confrontations with their familie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maternity facilities should continue to provide service for the time being.

At the same time, the service quality of maternity facilities (*Mihonmosiseol*) should be improved significantly. They should acknowledge and accept unwed mothers as independent members of our society and provide services tailored to their needs. The convenience of such facilities as living spaces for unwed mothers should be improved and the privacy of unwed mothers should be secured. The compliance with cohabitation rules should ensure not to infringe the autonomy of individuals living there.

Rather than providing in-house job training, the focus of maternity facilities should be on providing information on various job training programs that receive government support and grants, as well as supporting facility residents to participate in outside programs of their choice.

Maternity facilities serve as an important pathway to child adoption and many of them are run by adoption agencies. Those run by government grants should provide

services as fairly as they can. And if a facility tries to influence a mother to give up her child for adoption against her desire, severe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the facility in question such as the suspension of government grants.

E. Improving Customer Service at *Dong* Office

One of the effective ways of delivering the government's welfare services to *Yangyukmihonmos* living in community i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em starting from the stage of registering their children's births at *Dong* offices. *Dong* offices should provide all needed information on the government's welfare services to *Yangyukmihonmos* as soon as they are identified during the process of children's birth registration. For this to happen, urgent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manuals and provide education to social workers at *Dong* offices. Those who are in charge of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should respect *Yangyukmihonmos* and help them keep their privacy.

According to this study, problems were revealed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various welfare services to *Yangyukmihonmos*. When unwed mothers inquired on the details of NBLS and/or single-parent family support benefits, there were confirmed cases of public officials not knowing about the services in detail and being rude/unkind to them. Therefore it is urgent to provide appropriate education/training to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the governments' welfare service delivery.

F. Expanding New Style Maternity Homes (*Mojawon*)

A large expansion of maternity homes (*Mojawon*) should be in place so that more *Yangyukmihonmos* can reside there. Maternity homes provide free-of-charge housing or accommodations to low-income, single-mother families for up to three years. Compared to group homes for unwed mothers, maternity homes ensure greater privacy of its residents such as providing separate kitchens for each family. If group homes are a more suitable place for teen mothers or those mothers who seek support for childcare and their career development, maternity homes are meant for those who want to secure separate and independent living spaces from others.

In light of this, the introduction of a brand new type of maternity homes can be suggested. One of the problems that maternity homes currently face is that they can be easily exposed to their neighbors as a number of single-mother families live in concentrated residence.

Maternity home in concentrated residence as it is now is deemed not desirable in a situation where there remains social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and unwed mothers. If the policy enforcement authorities respect unwed mothers as responsible and independent members of our society, not perceiving them as those subject to education or protection, related policy approaches will sure to change. *When it comes to expending maternity homes, having two to four families neighbor each other, rather than concentrating too much, is more desired.* The government and local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work in collaboration to secure spaces for maternity homes while th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the spaces can be delegated to district and dong offices. If such space management at a dong office level becomes a challenge, the local municipal government in question would dispatch people to manage them. The guideline for checking in and checking out maternity homes as well as the use of facility by *Yangyukmihonmos* should follow the provisions of a general lease agreement between the tenant and the landlord. This way, costs related to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which were spent to control the families of unwed mothers and single mothers under the existing policies aimed at providing protection and intervention to them, can be saved over time.

G.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Unwed Fatherhood

The Korean government i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to cover costs for child support lawsuits. However, most unwed mothers go through a lot of difficulties during the process from beginning a lawsuit to actually collecting child support from the fathers of their children. There are many *Yangyukmihonmos* who do not welcome the government's program for supporting child support lawsuits. Because they have already experienced severe confrontations with the fathers of their children, they are unwilling to once again clash with the

fathers during the process of a lawsuit. Unlike in the US where there is a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collecting child support, the collection of child support is a matter to be taken care of by the involved parties themselves in Korea. Such poor institutional conditions make unwed mothers who are in desperate need of financial support for raising their children give up on collecting child support from the fathers of their children. In order for an unwed mother to file a child support lawsuit, the information on the amount of income and wealth as well as an accurate address of the father of the child should be identified. Therefore a system that ensures close cooperation among the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be put in place for the provision of relevant information to the court.

When the father of the child cannot pay the mandated child support amount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we can consider that government pay child support in advance on his behalf and collects it from him when he becomes able to generate income. A thorough review should be made on the current status regarding the collection of child support from the fathers of their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in order to explore ways to more effectively ensure the welfare of children in Korea.

H. Increasing Childcare Allowance

The monthly childcare allowance of KRW 50,000 provided to unwed mothers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PFS) Act should increase to KRW 100,000 per month. The Korean government, which failed to aggressively support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the past, has been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carrying out mass “exports” of Korean babies for overseas adoption. Considering the unique experiences that unwed mothers go through with regard to child adoption, the children of those mothers who choose to raise them and not give them up for adoption should be treated as equally as those adopted to new families.

A family with an adopted child up to 12 years of age can receive the childcare allowance of KRW 100,000 per month regardless of family income.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recommends that governments should use

their best efforts to encourage their people to keep and raise their children before deciding on sending them away for adoption. In this aspect, the fact that a low-income single-parent family with a child up to 12 years of age receives KRW 50,000 while a family with an adopted child receives KRW 100,000 without considering the income of the family goes against the international norm for child welfare, which gives enough justifications to adjust the amount of childcare allowance provided to *Yangyukmihonmo* families to that of families with adopted children.

I. Building Comprehensive Statistics

At present, there exists no comprehensive statistics on unwed mothers in Korea. The government has ye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database on welfare beneficiaries although it has been providing welfare programs such as NBLS and SPFS. It is important to build a statistical database that includes the demographic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Yangyukmihonmos* by gathering related data on *Yangyukmihonmos* receiving welfare services and benefits from local municipal governments, which will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welfare policies and setting related budgets going forward.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배경	5
3. 연구 방법	11
가. 미혼모 대상 집단인터뷰(FGI)	11
나. 설문조사 : 2010년 양육미혼모 대상 실태조사	12
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 데이터 분석	14
라. 포럼	14
II. 양육미혼모 관련 기존 연구	17
1. 기존 연구를 통해 본 양육미혼모의 삶	19
가. 미혼모시설과 양육미혼모	20
나. 양육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	24
다.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양육미혼모	27
2. 10대 미혼모 비중 감소	28
3. 입양미혼모와 양육미혼모 차이	33
III. 양육미혼모 지원 관련 정부 서비스	39
1.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 서비스	41
가. 양육미혼모 관련 시설	41
나. 복지급여	44
다. 주거지원	46
라. 복지자금 대여	47
마.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	49
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51

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52
2.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54
3. 아동보육 지원 서비스	56
4. 보건과 영양 서비스	59
IV. 양육미혼모의 생활현황	63
1. 조사 자료의 특성	65
가. 2009년도 양육미혼모 자료의 특성	66
나. 2010년 양육미혼모 자료의 특성	68
다. 집단인터뷰(FGI) 자료의 특성	72
2. 출산 전후 양육미혼모 거주 여건	73
3. 양육미혼모의 소득수준	78
가. 소득수준	78
나. 생활비 및 아기관련 비용 지출	86
4. 출산전후 경제활동 변화	95
가. 혼외임신을 수용하지 않는 직장문화	99
나. 구직과정에서의 차별	102
5.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	103
V. 정부 복지서비스에 대한 양육미혼모의 경험	107
1. 정부의 복지급여	109
2. 사회복지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115
3.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117
가. 아동양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	117
나. 교육비	119
다. 보건소 보건·영양프로그램	121
4. 주거관련 서비스	122
5. 미혼모시설의 입양 연계 서비스	123
6. 미혼모관련 시설 서비스 전반	125

가. 미혼모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125
나. 시설 이용시 어려운 점	127
다. 미혼모시설 입소 공간의 부족	128
라. 미혼모관련 시설 내 사생활 보장 미흡	131
마.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부족	133
바. 지역사회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135
Ⅵ. 양육미혼모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137
1. 10대와 성인미혼모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필요	139
2.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139
3. 양육미혼모 자조 모임 활성화 적극 지원	140
4. 미혼모자시설(미혼모시설) 서비스 개선	141
5.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개선	142
6. 새로운 형태의 모자보호시설(모자원) 확대	143
7. 미혼부 책임 강화	144
8. 아동양육비 10만원으로 인상	145
9. 양육미혼모 관련 통계구축	145
■ 참고문헌	147
■ 부 록	151
1. 설문조사지	153
2. 미혼모 지원 관련 제도	164

표 목 차

<표 I-1> 미혼모 대상 FGI 일시 및 다룬 내용	12
<표 I-2> 2010년 설문조사의 주요 지표 및 문항 수	13
<표 I-3> 2010년 양육미혼모 지원과 관련한 포럼개최 일정 및 발표제목	15
<표 II-1> 4대 해외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한 미혼모의 연령분포	29
<표 II-2> 미혼모자시설의 미혼모 연령분포	31
<표 II-3> 주요 연구에서 파악된 미혼모 연령 분포	32
<표 II-4> 2009년 임신부, 출산이후, 양육미혼모의 연령별 분포	35
<표 II-5> 출산후 미혼모의 연령별 입양미혼모 및 양육미혼모의 분포	36
<표 III-1> 미혼모 시설 유형별 제공 서비스	41
<표 III-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요	42
<표 III-3>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소수	43
<표 III-4> 아동양육비 지원	45
<표 III-5> 자녀 학비·양육비 지원 현황	45
<표 III-6>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47
<표 III-7> 복지자금 대여 : 창업 비용 지원	47
<표 III-8> 연도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용자실적	48
<표 III-9>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49
<표 III-10> 여성가족부 지원 자녀양육비이행청구소송 현황	49
<표 III-11>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52
<표 III-1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2010 신설)	53
<표 III-13> 기초생활보장 개요	55
<표 III-14> 영유아보육법: 아동보육료 지원 개요	56
<표 III-15>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지원	57
<표 III-16>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8
<표 III-17> 보건소 영양프로그램: 영양플러스 사업	60
<표 IV-1>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지	71

<표 IV-2> 집단인터뷰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2
<표 IV-3> 연령별 출산당시 미혼모 시설 거주 여부	73
<표 IV-4> 조사대상 미혼모의 임신당시 거주지역과 현재의 거주지역	74
<표 IV-5> 현재 거주하는 곳	77
<표 IV-6> 수입원별 소득 유무	79
<표 IV-7> 시설이용경험별 총수입 분포	82
<표 IV-8> 현재 거주유형별 총수입 분포	84
<표 IV-9> 자녀연령별 총수입 분포 그림	85
<표 IV-10> 일반생활비와 자녀관련 비용의 항목별 지출금액	87
<표 IV-11> 자녀 연령별 총지출 분포	88
<표 IV-12> 자녀 연령에 따른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	89
<표 IV-13> 자녀 연령에 따른 기초생계비 수급액 중간값	90
<표 IV-14> 자녀 연령별 거주 유형	90
<표 IV-15> 자녀 연령별 자녀 관련 비용 지출액 중간값	91
<표 IV-16> 자녀 연령별 월지출액 중간값	92
<표 IV-17> 현재 거주유형별 월지출액 중간값	93
<표 IV-18>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별 월지출액 중간값	94
<표 IV-19> 임신초기 주로 하던 일 및 현재 주로 하는 일	96
<표 IV-20> 임신초기 월평균 수입 및 지난달 직업활동 수입	98
<표 V-1> 미혼모 연령별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	109
<표 V-2> 자녀 연령에 따른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	110
<표 V-3> 기초생계비 급여액 분포	111

그 림 목 차

<그림 II-1> 4대 해외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한 미혼모의 연령분포	30
<그림 II-2> 미혼모자시설의 미혼모 연령분포	31
<그림 II-3> 주요 연구에서 파악된 미혼모 연령 분포	32
<그림 II-4> 출산후 자녀와 관련된 미혼모의 향후 계획(2009)	34
<그림 II-5> 미혼모의 연령 분포(2009)	35
<그림 II-6> 출산후 미혼모의 연령별 입양미혼모 및 양육미혼모의 분포	36
<그림 II-7> 아기아빠와 가족들의 아기 존재 인지 여부(2009)	37
<그림 IV-1> 양육미혼모 연령별 분포	66
<그림 IV-2> 양육미혼모 교육수준별 분포	67
<그림 IV-3> 양육미혼모 거주유형별 분포	68
<그림 IV-4> 2010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연령 분포	69
<그림 IV-5> 미혼모 자녀의 연령 분포	70
<그림 IV-6>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70
<그림 IV-7>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지	71
<그림 IV-8> 연령별 출산당시 미혼모 시설 거주 여부	74
<그림 IV-9> 조사대상 미혼모의 임신당시 거주지역과 현재의 거주지역	75
<그림 IV-10> 출산 및 양육시설 이용경험의 유무	76
<그림 IV-11> 출산 전후 거주한 곳	77
<그림 IV-12> 현재 거주하는 곳	78
<그림 IV-13> 수입원별 소득 유무	79
<그림 IV-14> 양육미혼모의 주요 수입원	80
<그림 IV-15> 2010년 양육미혼모 월평균 소득	80
<그림 IV-16> 2009년 양육미혼모의 월평균 소득	81
<그림 IV-17> 시설이용경험별 총수입 분포	83
<그림 IV-18> 현재 거주유형별 총수입 분포 I	84
<그림 IV-19> 현재 거주유형별 총수입 분포 II	85

<그림 IV-20> 자녀연령별 총수입 분포	86
<그림 IV-21> 일반생활비 지출 항목별 지출비용 중간값	88
<그림 IV-22> 자녀 연령별 총지출 분포	89
<그림 IV-23> 자녀 연령별 양육관련 비용 지출액 중간값	91
<그림 IV-24> 자녀 연령별 월지출액 중간값	92
<그림 IV-25> 현재 거주 유형별 월지출 총액 중간값	94
<그림 IV-26> 기초생계비 수급여부별 월지출액 중간값	95
<그림 IV-27> 임신으로 인한 퇴사 여부	96
<그림 IV-28> 임신초기 주로 하던 일 및 현재 주로 하는 일	97
<그림 IV-29> 임신초기 직업분포 및 현재 직업분포	98
<그림 IV-30> 임신초기 수입 및 지난달 직업활동 수입	99
<그림 IV-31> 미혼부의 임신 인지 여부	104
<그림 IV-32> 미혼부와의 관계	104
<그림 V-1> 미혼모 연령별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	110
<그림 V-2> 기초생계비 급여액 분포	111
<그림 V-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등록 사유	112
<그림 V-4> 저소득모자가정 등록 여부	113
<그림 V-5> 시설이용자의 숙식 편리성 및 동거 인원 적절성	125
<그림 V-6> 입소자 의견반영 및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	126
<그림 V-7> 미혼모시설 및 미혼모자시설 이용시 어려운 점	127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배경	5
3. 연구 방법	1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미혼모 이슈는 해외입양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이미정 외, 2009), 해외입양아동 대다수가 미혼모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도입되었지만 한국은 세계 최대의 입양송출국이 되었다. 미혼모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 무관심이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오랫동안 입양은 미혼모 자녀를 위한 복지 제공의 주요 수단이었다. 해외입양이 ‘아기수출’이라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여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였다.¹⁾ 입양은 친부모가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데, 해외입양의 발생은 입양대상 아동의 부모, 즉 친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포기하면서 가능해진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미혼모 양육 지원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을 게을리 하였다(강은화, 2006; 이미정, 2009).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미혼모와 이들의 자녀는 방치되었고, 입양은 이들에게 평생 지고 갈 고통과 죄책감을 심어주었다.

입양이 요보호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복지 대안이지만, 1993년 헤이그협약은 각 국가가 입양에 앞서서 아동이 친부모와 헤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허남순·윤성승, 2005). 미혼모에 대한 우리사회의 외면은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혼외출산에 대한 도덕적 단죄는 미혼의 어머니를 입양으로 내몰았고 가족과 사회의 냉대 속에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을 감추어야 했다. 미혼모에 대한 포괄적 통계가 부재한 이유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서 기인한다(이미정, 2010). 전국적 규모의 가족조사에서도 미혼모 가족은 거의 파악되지 않는다. 인구센서스 자료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못하는데, 자녀 출산에 대한 잘못을 혼인한 사람에게만 묻기 때문이다(이미정 외, 2009).²⁾

1) 해외입양을 목적으로 한국 아동이 대규모로 해외에 송출된 것에 대해 우리사회는 반성해야 한다. 해외입양은 60년대 전쟁 직후나 가난으로 고통 받던 시기보다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던 70년대와 80년대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임지선 기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한다. “전쟁도 없고 대기근도 없고 아이를 수출해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무역수지 문제도 없는 나라에서 해외입양이 여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임지선, 2009).

2) 인구조사에서 통계청이 혼인의 출산을 포함하는 설문문항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과연

4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최근 우리사회에서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전국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미혼모가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9). 미혼모 당사자와 원가족의 태도를 봐도 혼외임신이나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해외입양 송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미혼모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도 최근 미혼모의 양육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악화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 노력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미혼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좋은 직장을 다니던 여성은 미혼모가 되면서 빈곤의 세계로 추락한다. 직장을 다니며 저축했던 돈은 예기치 못했던 임신이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하면서 소진된다. 주위의 편견과 싸우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는 빈곤이다.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는 순간, 사회적 편견은 교육수준이나 직업적 자질이 높은 수준에 있는 미혼모도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자녀양육을 원하는 미혼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과거와 같이 미혼모 자녀의 복지를 입양에 맡긴 채 안이하게 지낼 수 없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아동양육 지원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약속에 대한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어느 때보다 미혼모 양육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미혼모에 대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에 의하면 다수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미혼모 가족을 지원하는 기초적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가 수혜 대상자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 국민기초생계보장, 영유아보육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미혼모 대상 면접 및 사례조사에 의하면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많은 미혼모가 솔직하게 응답하였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결혼 및 자녀출산의 경향과 향후 관련 정책자료의 제공을 위해서, 미혼모 가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지역사회 미혼모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동안 미혼모에 대한 특성은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통해 대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설을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가 시설을 경험한 미혼모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최근 혼인관계 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복지 문제를 입양을 통해서 해결하던 경향에서 점차 스스로 키우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홀로 지역사회에서 양육하는 미혼모 삶의 실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양육미혼모의 생활 현황을 검토하고 이들의 정부 복지 서비스 경험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양육미혼모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복지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 배경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미혼모는 보이지 않는 집단이었다. 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는 미혼모 자녀 대다수가 국내외로 입양되었다는 정부통계와 친어머니를 찾아 고국을 방문하는 입양인의 사연이 전부였다. 이들은 가부장제와 사회적 편견의 희생양이 되어 자녀와 이별한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결혼과 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더불어 점점 더 많은 미혼모들이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 최근 미혼모들은 입양이 자녀의 장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위의 충고와 미혼모는 엄마로서 부족하다는 사회적 불신에 반기를 들고 있다. ‘내 아기를 내가 키우겠다는 것이 죄가 되느냐’며 미혼모들이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녀와 마주하는 현실은 냉혹하다. 기존 연구에서 미혼모가 당면한 문제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편견이 미혼모 가족의 삶을 파괴화시키는 힘은 어마어마하다. 혼외임신이나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법으로 보장된 직업유지나 학습보장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개인의 생계와 장래의 삶을 준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수단을 빼앗기는 것이다. 한 사회의 선진성 정도를 판별하는 주요 기준은 사회적 약

6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자에 대한 대우이다. 미혼모 가족은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선진 국가로 대우 받기는 어렵다.

본 절에서는 미혼모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 편견이 미혼모 가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이야기는 한 월간지 논픽션 부분에 당선된 민들레라는 필명의 미혼모의 자녀양육 수기이다. 민들레 가족의 이야기는 사회적 편견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권을 철저히 침해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³⁾ 수기의 주인공은 지금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 강했던 1997년 아기를 출산하였다. 그동안 미혼모와 관련하여 계획되지 못한 혹은 원치 않는 임신이 언급되었는데, 민들레씨의 경우는 계획된 임신이었다. 민들레씨의 사례는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아기를 갖고 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취향과 권리가 우리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억압받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나의 임신은 주위로부터 전혀 축복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내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는 이 생명에게 가난과 헤어지기 힘든 뿌리 깊은 인습의 멍에를 물려주게 될지도 모른다....[아이를] 간절히 소망하던 것이지만 내 안에 한 생명체가 오롯이 자리한 것을 안 그 순간부터 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야 했다. 가족, 친족은 남부끄럽다고 여길 것이다. 십 수년 간 터 잡은 직장, 동료들과 맺어진 온갖 관계의 끈은 한순간에 끊어지고 나는 '미혼모'로 전락할 것이다.... 그토록 원한 임신이었지만 대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자 나는 많이 흔들렸다. 우선 배가 불러오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고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번거롭고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잠적하는 길 밖에 없는 듯하다.... 일말의 두려움이 잉태의 기쁨을 반감시켰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들은 기쁨은 잠시, 나는 결혼하지 않은 나의 임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생각해야 했다. 그것은 앞으로 맞닥뜨릴 수많은 난관에서 나와 아기를 지켜줄 힘이 될 것이다. 태교는 꿈도 못 꾸었다. 내 머릿속은 계산으로 바빴다. 사직서는 언제 내야 적당할까,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오래도록 생활에 도움이 될까.... 만약 결혼하지 않은 내가 만삭이 되도록 회사에 출퇴근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 산전휴가 조항엔 결혼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임신 중의 여자조합원에게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모성은 결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일까, 미혼에 출산휴가를 쓴 선례는 없을까. 그러나 내겐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다. 특별히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남다른 기술도 갖지 못한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밥줄'을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출산

3) 이 글은 신동아 제38회 논픽션 공모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2002년 12월호에 게재된 수기로, 민들레는 작가의 필명으로 1957년생이며 1997년 어머니가 되었다.

후엔 혼자가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나는 남이 알아채기 전에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서러움을 주체할 수 없어 집으로 오는 좌석버스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민들레 2002, pp. 622-648).

제도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상 출산휴가를 얻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선택한 혼외임신이 일으킬 직장에서의 파장을 두려워한 민들레씨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택함과 동시에 자신의 밥줄을 조용히 내려놓는다.⁴⁾ 출산휴가가 혼외임신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직장 상황은 어머니와 곧 태어날 어린 아기의 삶을 빈곤으로 밀어붙이는 계기가 된다.

내가 미혼모라는 소문이 났던지 일주일 입원 기간 내내 내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6인

-
- 4)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법률에 의하면 혼외임신을 한 여성에게도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 산전후 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산전후 휴가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음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8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용 병실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소곤소곤 키득거리고 회진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신기하다는 듯 나를 한번씩 더 보곤 했다. 미혼모는 동물원 원숭이처럼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보다.... 6인용 병실은 출산을 축하하러 오는 다른 산모들의 친지들로 항시 붐볐다. 산모들의 머리맡엔 선물받은 꽃다발과 갖가지 아기용품들이 쌓였다. 그들처럼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새생명을 얻은 기쁨, 양육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어미의 마음에 차이가 있을까. 남자나 여자나를 떠나서 결혼하고 아니 하고를 떠나서 오로지 한 인간으로서 2세를 갖고자 한 것이 과연 천리를 거스른 것인가.... 이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멸시가 나와 아기 앞에 장벽처럼 놓여 있다. 나는 어머니로서 그 높고도 두터운 장벽을 뚫고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원하면 2세를 낳아 잘 기를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사회라야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민들레 2002, pp. 622-648).

출산 이후 민들레씨가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진 듯하다. 산모의 분만 이후의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진들도 미혼모에 대해 편견으로 대하고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이러한 태도는 확산된다.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어머니가 되려는 민들레씨는, 여느 산모처럼 축하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아기의 곁을 지키면서 극도로 불친절한 사회의 장벽을 실감한다.

[백일] 상차릴 준비를 하다 문득 회사 다닐 때 술하게 초대받았던 백일잔치 돌잔치가 떠올랐다. 남들의 결혼, 백일, 돌, 회갑... 내가 그동안 남의 경조사에 낸 봉투만도 아마 수백만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제 실직한 데다 이른바 미혼모라 사람을 초대할 형편이 못돼 정작 내 아이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처지다보니 마음이 아팠다.... 호텔에서 비디오 촬영기사가 영화 찍듯 백일을 맞은 아기의 온갖 재물을 찍던 광경들, 초라한 백일상 만큼이나 아기에 대한 내 사랑마저 초라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가 들었다(민들레 2002, pp. 622-648).

주변인들의 불친절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백일이 되고 아기를 위해 하객이 없는 조촐한 백일 상을 차리면서 이들 모녀나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한다. 동료와 친지의 백일과 돌잔치에 전해주었던 축하는 돌려받지도 못하고, 백일 상 앞에서 아기에 대한 자신의 사랑도 초라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흔들린다.

아기를 키우는 데는 생각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우선 분유값이 만만찮다.... 이미 적금 들던 것도 깨 생활비로 다 썼고 국민연금도 일시불로 타 생활비에 충당했다. 퇴직금만큼은 비상시에 대비해 건드리지 않으려 했으나 벌지 않고 까먹는 생활에 돈이 굳어있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가진 돈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는 좀 초조했다. 급한 마음에 아이를

들쳐 업고 면접을 보러갔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다. 그 참담함은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다. 돈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 줄 진작 알았다면 사람을 사서라도 위장 결혼식을 올리고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인데 잘못했다는 후회되기도 했다.... 이력서 호주란에 본인이라 기재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떨칠 수 없다. 내 이력서를 받아보는 쪽에서 미혼모인 여성호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품행이 방정치 않다거나 결격사유로 여기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나의 이력서는 널 이유가 없는 휴직조각일 뿐이다. 취직도 못하면서 내가 미혼모임을 광고하는 효과 밖에 없으니까(민들레 2002, pp. 622-648).

한동안은 직장생활하면서 모아 놓은 돈으로 생활하던 민들레씨 모녀에게 드디어 생활고가 닥친다. 들어오는 돈없이 아기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니 비축해두었던 돈이 바닥이 난다. 직장을 알아보지만 미혼모라는 그녀의 처지는 취직을 어렵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냉담함을 절감하며 깊은 상처를 받는다.

딸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꿈 같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미혼모와 사생아란 딱지는 사회관계에서 붙는 것이어서 은둔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나는 벌어먹고 살려고 사회에서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고 아이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딸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면 우리에게 대한 편견과 멸시는 본격적으로 그 비수를 들이댈 것이다. 나는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내 개인의 취향이고 내 개인의지라는 게 중요하다. 이 사회가, 이 사람들이 이런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비난하지 않는 깊이와 폭을 가졌으면 하는 게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솔직히 나는 떳떳하다. 나로서는 미혼모가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모욕과 사갈시하는 이 사회의 압력에 주눅 들어 나는 점점 나약해지고 있다(민들레 2002, pp. 622-648).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반복해서 겪고 절망하지만, 어린아기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견뎌낸다. 그러나, 사회의 편견을 피하기 위해 은둔해서 살 수는 없기에, 민들레씨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이에게 닥칠 무자비한 편견과 멸시를 걱정한다. 가족형성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철학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자신의 자유와 취향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서 한탄한다.

우리 사회에선 미혼모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다. 미혼모라면 불륜이나 낙태, 생명유기, 고아수출의 단어를 곧장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게 됐다는 뉴스에선 언제나 미혼모가 그 장본인이라고 말한다. 그런 뉴스를 들 때마다 낮이 뜨거웠다. 어쨌거나 나 역시 미혼모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뉴스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

10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의 2세를 잘 키워보려는 미혼모에 대한 모성보호와 복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그들에게 비난과 멸시, 온갖 불이익의 굴레를 씌워놓고 기혼 부모처럼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한다고 매도할 뿐이다....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애를 뱉 처녀는 할 말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의 반어적 표현이다. 여기서 처녀라 함은 성관계를 한번도 하지 않은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뜻한다고 본다. 나는 할 말이 많다. 그리고 내 딸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내 딸이 엄마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엄마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라도 엄마처럼 질곡에서 고통받지 않고, 다양한 사고와 다채로운 문화가 꽃피고 다수가 소수를 그러안는 포용성을 갖춘 평화의 공동체에서 살아갈 꿈꾼다. 미혼모는 사회적 약자며 소수다. 결혼을 거부했든,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았든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머니의 길을 택한 사람이다. 한 생명이 자립할 때까지 홀로 뒷바라지하는 길을 택한 이상 그들도 어머니다. 어머니에 기혼모와 미혼모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리라. 어머니는 어머니일 뿐이다(민들레 2002, pp. 622-648).

민들레씨는 미혼모 관련 뉴스가 이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이들에게 비난으로 일관하는 관점이 몹시 섭섭하다. 민들레씨는 딸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획일화된 관습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 가차 없이 처벌하는 사회는 개인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비판하여 모성에 있어서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는 사회가 과연 성숙한 사회냐고 반문한다.

미혼모가 되고 저는 스스로가 몹시 수치스러웠습니다. 미혼모가 되었다는 생각만으로도 얼굴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낙태를 결심하고 병원도 두 번이나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아가서는 검진만을 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지운다면 나중에 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그래 몇 배 더 노력하자, 몇 배 더 열심히 살면 될꺼야. 그러면 다른 이들도 날 인정해 주지 않겠어?’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였습니다....엄마가 된다는 일은 아름다운 일인데, 낳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 속에서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했던,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미혼모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몹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하여 국가 정책에서도 입양가정의 기준을 세우고 또 입양가정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입양아가 만 18세 될 때까지의 의료보호, 양육지원비, 보조금, 입양아를 위한 상담, 그 가족의 위한 상담, 입양인의 날에는 그들의 자신감을 돋워주는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이런 혜택들이 잘못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입양은 아름다운 일이고,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워보려는 [미혼모의] 마음은 책임감이 없고 잘 한 행동 하나 없는 일인가요?... [정부가] 미혼모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혼자서 키우는 일에 대하여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양육미혼모 34세, 8세 자녀).⁵⁾

5) 양육미혼모 당사자로부터 서면을 통해 받은 내용이다.

모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면서 어머니가 된 한 여성은 왜 미혼모의 모성을 지지 해주지 않느냐고 항변한다. 아기가 미혼 엄마의 품에서 자라는 경우와 비교해 입양된 가정에서 자랄 때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미혼모의 모성이 도외시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 대국이 된 일차적 배경은 미혼모의 모성이 존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우리사회에서 모성을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혼인내 출산이 규범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혼외출산과 미혼모 가족은 기존 가족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에 이들에게는 혹독한 처벌이 사회적 편견이라는 형태로 가해진다. 과거 혼전성관계는 부도덕한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성적 자유가 확산되면서 수용되고 있다. 이제 결혼식장에서 임신부 신부를 마주하는 일은 흔한 일인데, 이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축하받고 있다.

학업과 미래의 진로 준비에 전념해야 할 10대의 임신은 우려할만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예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임신과 출산을 규범의 잣대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의 삶이 발전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상규범에 근거한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 것인가를 개인 미혼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은 지역사회 양육미혼모 대상 설문조사, 2009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 양육미혼모 대상 인터뷰이다. 정부의 복지서비스 내용과 전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도 면담하였고, 양육미혼모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럼도 진행하였다.

가. 미혼모 대상 집단인터뷰(FGI)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출산이후 자녀양육과 관련된 그룹인

12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공식적인 그룹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서 이들과 수차례의 친목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친목의 모임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정보 수집의 차이나 지역사회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고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혼모 대상 FGI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6회 실시하였고 총 17명이 참석하였다. 인터뷰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들과 친분이 있는 미혼모를 연구진이 소개받았다. 각 인터뷰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 -1〉 미혼모 대상 FGI 일시 및 다룬 내용

일시	다룬 내용
□ 2009년 12월 19일(토)	입양 중심적인 국내 미혼모 지원 체계의 현황
□ 2010년 1월 31일(일)	양육 미혼모들의 원가족과의 갈등, 일과 양육의 어려움, 주거문제
□ 2010년 2월 7일(일)	입양을 보냈다가 다시 아이를 찾아온 미혼모들 사례
□ 2010년 4월 16일~4월18일	지역에 따른 서비스 접근의 차이, 수도권 거주 미혼모들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비수도권 거주 미혼모들의 실상
□ 2010년 7월 5일(월)	미혼한부모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접근의 사례
□ 2010년 7월 14일(수)	미혼한부모로서의 생활과 향후 계획

나. 설문조사 : 2010년 양육미혼모 대상 실태조사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조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중간의집), 모자보호시설(모자원),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를 소개받아 눈덩이 표집으로 조사 사례수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진 참석 하에 질문지를 배포·회수하기도 하고 양육미혼모와 미리 연락을 취하고 후에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받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설문지는 연구진 참여 하에 미혼모가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한 것이다. 이메일로 조사한 경우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온라인 카페인 ‘미스맘마미야’ 소속 회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응답이 가능하다고 밝힌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 응답을 받았다.

조사는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는데, 방문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강원권(원주),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전라권(순천, 전주, 해남, 무안)으로, 수도권과 전라권의 조사대상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미혼모들의 소개를 받았다. 미혼모자공동가정시설은 두 곳의 협조를 얻었고, 부산, 울산, 원주, 대구, 인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거점센터 당사자 자조모임에 연구진이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거점센터 당사자 자조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하기에 앞서 두 차례 이상 이들 모임에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17부이다.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미혼모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양육미혼모의 생활실태를 검토하고, 정부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미혼모들과 수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이를 근거로 구조화된 질문지와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표 I-2〉 2010년 설문조사의 주요 지표 및 문항 수

지표	문항설명	비고
시설이용자의 출산당시 상황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험/시설의 형태/시설소재지/거주기간/현재거주여부	구조화된 설문지
시설 미이용자 출산당시 상황	출산당시 미혼모 시설 입소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도움 준 사람/출산비용 마련 방법	
출산전 경제활동	임신초기(5개월 이전) 주로 한 일/직종/월평균수입	
현재 생활수준	거주지/거주지 유형/거주기간/요즈음 주로 하는 일/수입원/지난 1개월간 총수입/임신이후 현재까지 수급한 기초생계급여액/지난 1개월간 지출내역 및 금액	
출산후 여건변화	아기 연령에 따른 거주지 변경 여부/생활비 변화/아이 아빠와의 연락여부/아이 아빠의 양육비 지급 여부/부모님 및 형제의 태도/나의 자신감 변화	반구조화된 설문지
산전후 병원진료	산전사후검진, 비용, 병원비 금액 및 병원비 마련 방법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아기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미혼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관한 사항	
출산 후 생활비	출산 직후 12개월까지 생활비 마련/돌부터 최근까지 생활비 마련	
복지급여 수혜	기초생계비 수급에 대한 정보 획득 여부/기초생계비 수급 여부/담당 공무원의 도움 여부/아기 월령에 따른 기초생계비 변화 /기초생계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기초생계비 수급하면서 직업훈련 받았는지 여부/자활급여 수급 여부 및 금액	

14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지표	문항설명	비고
기타 정부서비스	의료급여/학비지원/한부모가족지원/보건소 지원/보육료 지원/임대주택	
향후 계획	현재 하고 있는 일 및 향후 계획	
가족과의 관계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느낀 부모 형제의 존재감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 데이터 분석

2009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 실태조사 자료에는 양육미혼모와 비양육미혼모(임산부, 입양결정 미혼모, 입양과 양육을 결정하지 못한 미혼모)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09년도 7월과 8월 전국 48개 미혼모시설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의 도움으로 재가 미혼모도 조사하였다(김혜영 외, 2009:9-13). 총 571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양육을 결정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수는 총 213명이다. 조사내용은 미혼모가 된 경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낙태·자녀출산의 선택 및 자녀양육·입양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심리정서적 변화, 자녀양육 및 입양을 둘러싼 선택 동기, 자녀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어려움, 자녀양육을 포기한 미혼모들의 어려움과 이들의 생활세계 변화, 미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계변화, 미혼모의 학업 및 취업 욕구 등과 같은 진로계획, 지원 정책욕구, 성과 양육가치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혜영 외, 2009:10).

라. 포럼

총 6회에 걸쳐 포럼이 진행되었는데, 양육 미혼모의 현실을 검토하고 이들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미혼모 당사자 발표를 통해 미혼모지원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미혼모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설장의 운영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미혼부의 법적 책임을 논의하고 이를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혼모 당사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I -3〉 2010년 양육미혼모 지원과 관련한 포럼개최 일정 및 발표제목

일시 및 장소	발표제목 및 발표자
□ 2010년 11월 7일(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미혼모 지원 왜 중요한가? - 발표자: 이미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토론자: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장) 정선옥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고윤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2010년 3월 19일(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실 본관 B125	미혼모 복지 서비스 전달기관의 미혼모 지원사례 발표 1 - 발표자: 임애덕 제주 애서원 원장 - 토론자: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장)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협력팀장)
□ 2010년 3월 21일(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미혼모 복지 서비스 전달기관의 미혼모 지원사례 발표 2 - 발표자: 임애덕 제주 애서원 원장 - 토론자: 장지영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2010년 6월 4일(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실 본관 B125	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실천 현장 사례 : 구세군 두리홈 - 발표: 추남숙 (구세군 두리홈 원장) - 토론: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선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2010년 7월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의 실현 방안 - 발표: 김혜주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회) - 토론: 김현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2010년 9월 5일(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3층	미혼모 당사자조직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발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협력팀장) 정선옥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무국장) 최현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조직교육팀장) 김연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운영진)

II

양육미혼모 관련 기존 연구

1. 기존 연구를 통해 본 양육미혼모의 삶	19
2. 10대 미혼모 비중 감소	28
3. 입양미혼모와 양육미혼모 차이	33

1. 기존 연구를 통해 본 양육미혼모의 삶

미혼모에 대한 기존 연구 대다수가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은 시설 미혼모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 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해나가는 미혼모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향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허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미혼모는 자신과 자녀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 양육미혼모 사례발굴과 관련 연구가 어렵다. 최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미혼모 발굴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양육미혼모 연구는 시설 입소자 사례에 의존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미혼모와 양육미혼모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서 이들의 특성과 양육 상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미혼모의 삶뿐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연구나 정책도 혼외임신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아왔다(한인영, 1998). 초기 연구는 혼외출산을 사회문제나 부도덕한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에 입각하여 결손가정, 빈곤가정, 무분별한 성행위, 성에 대한 지식 부족을 미혼모 발생과 연결 짓고 있다(공일숙, 2005; 이삼식, 1998).

초기 미혼모 연구는 혼외출생 아동을 해결하는 방안과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한 연구는 관련 정책이나 연구가 미혼모를 성적 일탈자나 사회적 일탈자로 보고 있으며 ‘요보호 여성’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한다(박홍주 외, 1993). 초기의 관련 연구들이 미혼모 발생요인을 규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이유도 이를 통해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대체로 이들 연구는 미혼모의 낮은 교육수준, 성장가족의 빈곤과 정서적 결핍, 성적 무분별, 자아정체감, 성교육부재라는 측면에서 미혼모를 이해하고 있었고, 성교육 강화를 예방책으로, 출산한 아동은 입양 보내

6) 미혼모 시설을 통해서 자녀 양육경험이 축적된 미혼모 사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미혼모자시설’은 출산을 앞두고 입소한 임산부의 산전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미혼모들은 입소 기간 중 자녀를 입양 보내거나 산후 몸조리 후 아이를 데리고 시설에서 나온다.

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박홍주 외, 1993).⁷⁾

가. 미혼모시설과 양육미혼모

1) 미혼모자시설(미혼모시설)

미혼모에 대한 초기 복지정책은 모자가정, 윤락여성, 가출여성과 함께 요보호 여성의 범주에서 다루어졌는데, 예방과 시설보호를 통해 이들을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공일숙, 2005). 흔히 미혼모시설이라 불리는 미혼모자시설은 1990년대 초반 부녀직업보도시설 체계 내에서 존재하는데, 갈 곳이 없는 미혼모를 위해 출산전후 분만과 관련된 서비스, 상담, 정신교육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홍주 외, 1993). 1993년 전국 9개 시도 21개 부녀직업보도시설 중 서울에는 6개 부녀직업보도시설이 있고, 그 중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 2곳이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었다. 전국 직업보도시설 중 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총 7개소로 수용인원 225명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그 수가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박홍주 외, 1993; 보건복지가족부, 2010).⁸⁾ 미혼모자시설은 2004년 12개소, 2005년 18개소, 2006년 20개소, 2007년 25개소, 2008년 27개소, 2009년 32개소로 급격히 확대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정원도 2005년 553명에서 2008년 692명으로 증가한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이유는 출산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의 출산 반대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이중수, 2003; 허남순 외, 2005). 시설장이나 미혼모들은 미혼모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출산 스케줄에 맞춰 입소하기가 어렵다고 한다(김유경 외, 2006). 그러나 평균 시설 이용도는 높지 않아, 1998년 정원 대비 현원은 55%, 2006년에는 60.6% 수준이었다(김유경 외, 2006; 한인영, 1996).⁹⁾ 한편에서는 공간부족으로

7) 1990년대에 입양 결정은 미혼모와 아기에게 최선의 선택으로 당연시되었고, 양육하고 싶어하는 미혼모는 부모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리한 것을 바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애란원 2010:45).

8) 1993년 연구에 의하면 미혼모시설 입소자 다수가 해외 입양기관의 의뢰로 들어온다고 한다(박홍주 외, 1993). 서울의 한 미혼모시설의 경우 1991년 입양기관을 통해 입소한 경우가 136건 중 60건이며, 이들은 미혼모에게 친권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미혼모시설에 입소시킨다고 밝히고 있다(박홍주 외, 1993). 입양기관이 의뢰하는 경향은 2000년대에도 계속되어 2006년 미혼모시설 입소자의 22%, 2007년 20.4%가 입양기관의 의뢰로 입소하였다(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각년도).

시설 입소가 어렵다는 미혼모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혼모자시설 현원이 정원의 55%~60.6%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밝혀야 한다.

1993년 연구에 의하면 미혼모 시설은 출산 및 산후조리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미혼모의 자립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박홍주 외, 1993). 미혼모를 위한 직업훈련이 부녀직업보도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산전후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어 직업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강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박홍주 외, 1993).¹⁰⁾

흔히 미혼모시설로 불리는 ‘미혼모자시설’ 다수의 여건은 열악한 편이며 출산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공일숙, 2005; 허남순 외, 2005). 오랫동안 시설에 입소한 ‘혼외임산부’ 다수가 자녀를 입양 보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은 산전후 서비스와 입양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04년 입양기관 통계자료에 의하면 당해연도 입양이 의뢰된 아동 1,160명 중 360명인 31%가 미혼모시설을 통해서 의뢰되었고 나머지 69%는 시설 밖에서 의뢰되었다고 한다(허남순 외, 2005:9).¹¹⁾

미혼모시설의 입소자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2000년대 초반 연구는 출산 후 산모의 상황을 고려한 샤워시설이나 세탁설비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필요할 때 샤워하기가 힘들고, 아기 천기저귀 빨기도 어렵다는 입소자의 경험을 전하고 있다(이종수, 2003). 미혼모시설 내 같은 공간에 입양 보낸 미혼모와 양육미혼모가 함께 거주하는데, 두 집단이 처한 상황이 상이하기에 독립된 공간에 있기를 바란다(이종수, 2003).

입소자들은 미혼모시설에서의 어려움으로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단체생활 규칙, 입소자 및 시설담당자 간의 인간관계를 문제로 지적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이 확보되기를 희망하였다(김유경 외, 2006). 입소자들이 지적하는 미혼모시설의 문제 중 하나는 시설에 있는 동안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시설

9) 2006년 양육그룹홈의 정원 대비 현원은 90%이다(김유경 외, 2006).

10) 미혼모시설은 출산에 임박한 임산부와 갓 출산한 미혼모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출산 후 신체적 안정과 어린자녀 양육의 비중이 큰 시점에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11) 이러한 자료가 제시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미혼모시설이 입양연계의 주요한 통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설 밖에서 입양을 의뢰한 미혼모 수를 고려할 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내의 식사 및 청소 등의 일을 분담해야 하기에 개인적인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고 단체생활과 관련된 규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김유경 외, 2006).

2) 모자보호시설(모자원)

1990년대 초반 연구에 의하면 모자원으로 불리는 모자보호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정과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에게 입소자격이 있지만, 사별 등 배우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모자가정이 주로 입소한다(박홍주 외, 1993; 공일숙, 2005). 2002년 모자보호시설은 전국 39개소인데, 양육을 원하는 경우 3년간 머물면서 주거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기간이 서울의 경우 1-2년이라고 한다(사연경, 2002). 이런 상황으로 아동양육을 결심하였더라도 입소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여성은 아동 양육을 포기하게 된다(사연경, 2002). 2003년 연구에서도 전국 39개 모자보호시설이 양육미혼모 뿐만 아니라 여타 한부모 가족을 위한 곳이기에 자리가 많지 않고, 정보가 부족한 미혼모들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이재정, 2003).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도 모자보호시설 중 미혼모 가족의 이용 정도가 낮아 전체 입소가구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정 외, 2009).¹²⁾

12) 2009년 41개 모자보호시설(일반적으로 모자원이라 불림) 중 36개 모자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혼모 세대 수를 조사한 결과 현재 보호하고 있는 모자세대 총 734세대 중 80세대가 미혼모 세대라고 응답하였다. 아래 제시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자보호시설(모자원) 내 미혼모세대의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지역의 미혼모 세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009 전국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미혼모 가구 분포

서울					
A	B	C	D	E	F
총 5세대 중 4세대	총 32세대 중 16세대	총 20세대 중 4세대	총 20세대 중 6세대	무응답	무응답
부산					
A	B	C	D	E	F
총 13세대 중 3세대	총 13세대 중 0세대	총 38세대 중 2세대	총 7세대 중 0세대	총 15세대 중 2세대	총 22세대 중 3세대
대구					인천
A	B	C	D	E	A
총 50세대 중 5세대	총 27세대 중 5세대	총 30세대 중 2세대	무응답	무응답	총 20세대 중 1세대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중간의 집)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반 연구에서 산전후 지원 시설을 나온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보호기간이 짧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와 아기를 양육할 적절한 공간이 부족하기에, 중간의 집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사연경, 2002; 한인영, 1998).¹³⁾ 이종수의 2003년 지역사회 양육미혼모 14명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나 지인의 집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이종수, 2003).¹⁴⁾ 여타 한부모가족에 비해서 양육미혼모의 경우는 미취학 아동의 비율이 높다. 어린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는 보육지원 없이는 생계활동이 어렵다. 양육미혼모에 대한 2000년대 초반 연구들은 중간의 집 설치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를 위해 보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재정, 2003).¹⁵⁾

2003년부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라 불리는 양육미혼모를 위한 그룹홈인 중간의 집이 개소되어 정부의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하여, 2003년 5개소, 2005년 9개소, 2006년 15개소, 2008년 19개소로 확대되었고 2008년에 236명을 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강은화, 2006; 보건복지가족부, 2010; 애란원, 2010).¹⁶⁾

A	A	A	A	B	A
총 22세대 중 4세대	총 22세대 중 1세대	총 24세대 중 1세대	총 28세대 중 2세대	무응답	총 24세대 중 1세대
전북				전남	
A	B	C	D	A	B
총 24세대 중 2세대	총 17세대 중 0세대	총 18세대 중 0세대	총 16세대 중 1세대	총 24세대 중 1세대	총 12세대 중 0세대
경북				충북	
A	B	C	D	E	A
총 20세대 중 3세대	총 19세대 중 3세대	총 24세대 중 2세대	총 20세대 중 0세대	총 18세대 중 4세대	총 24세대 중 0세대
충남		경남		제주	
A	B	A	B	A	
총 19세대 중 0세대	총 13세대 중 1세대	총 20세대 중 0세대	총 30세대 중 1세대	총 20세대 중 4세대	

- 13) 사연경의 연구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4월 구세군 서울여자관 입소자 25명, 출산전 14명, 출산후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사연경, 2002).
- 14) 14명 중 가족과 사는 경우 11명, 친구 1명, 혼자 사는 경우 1명이다(이종수, 2003).
- 15) 2003년도 정부예산안에 양육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관련 예산으로 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다(이재정, 2003).
- 16) 2002년부터 정부가 미혼모시설의 아동을 입소인원으로 인정하면서 아동 생계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애란원, 2010), 미혼모 자녀양육 지원이 중요함을 정부가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나. 양육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

기존 미혼모 관련 연구를 통해서 양육미혼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공일숙, 2005; 박홍주 외, 1993).¹⁷⁾ 시설 입소 미혼모 중 양육미혼모 비율은 1984년 5.8%, 1998년 7.2%이고 2001년 11.0%로 나타났다(강영실, 2002; 안순덕 외, 1984). 양육미혼모 비율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2005년 허남순팀은 동년 8월 전국 11개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228명을 1차로 조사하고, 동년 9월 16개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한 1,12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육하려는 미혼모 비율이 31.7%라는 수치는 이 연구에서 조사된 것으로 1차 조사 22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허남순 외, 2005:32).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도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미혼모 시설 입소자 190여명 중 출산 후 양육의사가 있는 경우는 33.0%로 나타났다(김유경 외, 2006).¹⁸⁾

1) 생계와 양육의 병행

2001년 박숙희 연구는 서울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퇴소한 후 지역사회에서 8개월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15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것인데, 24세 미만은 4명이고 25세 이상은 8명이다(박숙희, 2001).¹⁹⁾ 미혼부와의 교제기간은 5년 이상 3명, 1년-5년 미만 5명, 6개월 이상-1년 미만 3명으로 조사대상 대다수가 지속적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부와 연락하는 사람은 15명 중 6명이고 결별한 사람은 5명이다. 15명 대부분은 출산에 임박하여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박숙희, 2001).

17) 1989년부터 애란원은 양육미혼모를 위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동돌보기와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서 양육미혼모의 자립기반 마련을 도우려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입소기간 1년이 필요하였지만, 정부나 서울시는 6개월 입소기간이 넘어가는 사례에 대해서 행정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적하는 등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애란원, 2010).

18) 미혼모시설에서 194명과 양육모그룹홈에서 28명이 조사되었다(김유경 외, 2006).

19) 미혼모시설에서는 주요 업무는 산전후 관리와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1990년대 말 아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입양을 의뢰하는 미혼모의 정서적 상실감을 우려하여 시설 내에서 자녀양육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박숙희, 2001). 1998년 말 서울의 한 미혼모시설에서 입양 대신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시설에서 백일까지 아기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박숙희, 2001).

90년대 말 양육미혼모들은 육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장시간 근무나 휴일근무 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많으며 시간당 임금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한다(박숙희, 2001). 아기를 영아원이나 보육원에 맡기고 일한 엄마들은 아기와 떨어지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였고, 친구나 가족과 사는 양육미혼모는 눈치를 보며 불편하게 지낸다(박숙희, 2001). 양육미혼모 스스로는 아이 키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주위의 부정적 시선을 두려워한다(박숙희, 2001).

2003년 이종수의 양육미혼모 연구는 미혼모시설 입소자 8명, 모자원 거주자 3명, 재가 양육미혼모 14명으로 총 2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²⁰⁾ 양육미혼모 25명의 연령분포는 10대 12%, 20대 68%, 30대 16%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25명 중 출산 전에는 23명이 학생이거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출산 후에는 9명만이 직업이 있는데, 9명 중 3명만이 전에 하던 것과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 6명은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이종수, 2003).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미혼모에 대한 편견으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이종수, 2003). 일하는 양육미혼모들은 병원 데려가기와 직장회식 참석이 어려워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거의 대다수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데, 이유는 교육관련 비용 부담, 아기 맡길 곳 없음, 교육받을 시간이 없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수, 2003).

시설 밖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14명 중 7명이 아이를 직접 돌보고, 5명은 가족이, 4명은 놀이방·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이종수, 2003).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기에, 실업상태이기에, 맡길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기에,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이 돌봐주는 경우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경우이고, 놀이방·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는 취업한 경우이다(이종수, 2003). 보육의 애로사항으로 야간·공휴일 보육시설 부족, 보육비용 부담, 가족들에게 피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 양육으로 취업준비가 어려운 점을 들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회식이나 추가업무로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경우 아기 맡길 곳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 한부모를 위한 저녁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

20) 미혼모시설 직접 방문,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상담실, 지방의 홀트아동복지회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면접 실시로 총 25명의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이종수, 2003).

으로 나타났다(이재정, 2003). 영아를 보육하는 어머니는 취업준비, 직장 알아보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이전 직장생활로 모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2003년 이종수는 취업 및 교육을 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 이들을 위해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위탁양육제도 도입을 제안한다(이종수, 2003). 아이와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부산지역의 한 양육미혼모는 아기가 너무 어려서, 시설에서 잠시 아기를 키워준다면 맡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이재정, 2003). 조사대상 중에는 보육료 부담이나 부상으로 위탁가정에 2개월 맡긴 경우도 있다(이재정, 2003). 2001년에서 2002년 기간 동안 부산의 한 복지관 주도로 ‘양육미혼모 아동의 단기위탁보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데, 미혼모 아동을 위해 3개월간 단기위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의 어려움으로 친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이재정, 2003).²¹⁾

2) 양육미혼모의 다양성

정용순의 2003년 연구는 시설거주 양육미혼모 75명과 재가 양육미혼모 10명 총 8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연령분포는 15-19세 21.3%, 20-24세 45%, 25-29세 20%, 30세 이상 13.8%로 20대 이상이 대다수다(정용순, 2003). 미혼부와의 관계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20세 이상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경우가, 19세 이하는 친구사이인 경우가 더 많았다(정용순, 2003). 미혼부와의 관계도 연령별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층이 높은 집단에서는 헤어지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19세 이하나 20대 초반 연령층에서는 미혼부와 동거나 왕래하는 정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정용순, 2003). 임신사실도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더 빨리 인지하고, 원치 않는 임신비율은 저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기를 원해서 가진 비율도 25세 이상에서 37%로, 24세 이하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임신사실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한 경우는 30세 이상에서 45.5%, 25-29세 37.5%, 20-24세에서 22.2%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정용순, 2003).

21) 2003년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각 시·도에 가정아동위탁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15세 미만이거나 부모의 질병·가출·학대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이재정, 2003).

양육미혼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접근하기보다는 각 집단 특성에 적합한 접근이 필요하다(강영실, 2002). 아이아빠와 결혼이나 동거가 예정인 엄마들과 홀로 양육을 선택하는 엄마들이 상황이 다르고,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연령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미혼모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다(강영실, 2002).

3) 지역사회 양육미혼모의 어려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미혼모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가족이나 친지와 의 갈등이나 거주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힘들어 한다(사연경, 2002). 가족과 함께 사는 양육미혼모의 어려움은 집세부담, 가족과의 관계, 이웃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한다(이종수, 2003).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평생 살아온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의 보수적인 시선을 받아야 하고 부모는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미혼모 시설장들도 재가미혼모의 경우 생계 및 주거가 보장되지 못하며 심리·정서상 외로움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하다고 한다(김유경 외, 2006).

어린 아기를 데리고 퇴소한 미혼모들 중 일정기간 복지급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허남순 외,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등 1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로 규정되며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기초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그러나 다수의 미혼모는 법에서 ‘부양의무자’로 규정한 부모와 단절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미혼모들은 수급권자로 지정되지 못한다(허남순 외, 2005).

다.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양육미혼모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혼모에 대한 포괄적 통계가 부재하지만,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양육미혼모에 대해 통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육미혼모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정부부처나 지자체는 미혼모로서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양육미혼모지원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있어서 관련 통계가 부족한데 정부의 복지급여지급 자료를 정리하면

전국 양육미혼모의 규모, 연령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010년 경기도 양육미혼모부자 생활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급여 수혜 미혼부모의 경기도내 지역별 분포가 공개되었다(서해정, 2010:39). 2009년 경기도에는 총 448세대 미혼부모 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전국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국적으로 취합한다면, 복지급여를 받는 미혼부모 세대의 규모가 제시될 수 있으며, 이것은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009년 경기도에 등록되어 복지급여를 받는 미혼모 376명 중 71%는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급여를, 29%는 기초생계급여를 받고 있다(서해정, 2010).

2010년 서해정의 연구는 복지급여를 받는 경기도내 총 311명 미혼모부자 대상의 실태조사인데, 이중 미혼모는 283명이다. 311명의 미혼모부자 중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21명에 불과하기에 지금까지의 미혼모 연구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사례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다. 연령분포도 이전의 시설을 통해 수집된 사례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데, 24세 이하가 22.2%, 25-30세 이하 22.3%, 31세 이상이 55.5%로 여타 연구와 비교해 30대 이상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서해정, 2010). 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에 20대 연령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대조적이다.

2. 10대 미혼모 비중 감소

최근 10대 미혼모 비중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대중매체나 관련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 1990년대 보호시설 입소 미혼모 자료를 보면 10대의 비율이 1991년 24.3%, 1993년 32.4%, 1996년 42.5%, 1997년 47.9%로 증가하여, 이를 근거로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한다(이삼식, 1998).²²⁾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등장한다(한인영, 1998).²³⁾ 그러나 이러한

22) 1998년 미혼모시설 입소자 통계로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23) 1998년 한인영의 연구는 1996년 서울특별시 부녀복지연합회가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3개 입양기관, 7개 미혼모 시설을 통해 296명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데, 연령 분포는 19세 이하가 49.7%, 20-24세 35.5%, 25-29세 9.5%, 30세 이상 5.4%이다(한인영, 1998). 입양을 계획하는 비율이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에서는 92.7%, 1996년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자료에서는 87.9%다.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와 비교하여

경향은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반까지 관찰되다가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10대의 비율이 감소하여 최근에는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연구에서도 미혼모의 저연령화를 주장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부족하다(김유경 외, 2006:20). 김유경 연구팀은 2006년 연구에서 한국여성개발원(1984), 김영숙(1998), 이시백 외(2002) 연구의 미혼모 연령분포를 인용하면서 미혼모의 연령이 최근 20대에서 10대로 낮아진다고 주장한다(김유경 외, 2006:20).²⁴⁾ 그러나 자신들의 2006년 연구에서 10대 비율이 39.5%로 나타나, 1998년 김영숙의 52.7%, 2000년 53%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²⁵⁾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미혼모의 저연령화 주장을 검토해보자. 다음의 <표 II-1>은 4대 해외입양기관에 상담을 요청한 미혼모 상담통계에 근거한 의뢰자의 연령분포이다(허남순 외, 2005:19).²⁶⁾

<표 II-1> 4대 해외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한 미혼모의 연령분포

(단위: 명, %)

	20세 이하		21-25세		26세 이상		계
2002	2007명	58.3%	1126명	32.8%	305명	8.9%	3438명
2003	1758	46.1	1396	36.6	662	17.3	3816명
2004	1355	39.3	1170	34.0	918	26.7	3443명

자료: 위의 표는 4대 해외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 사회봉사회)의 미혼모 상담부서의 내부통계에 근거한 자료이다(허남순 외, 200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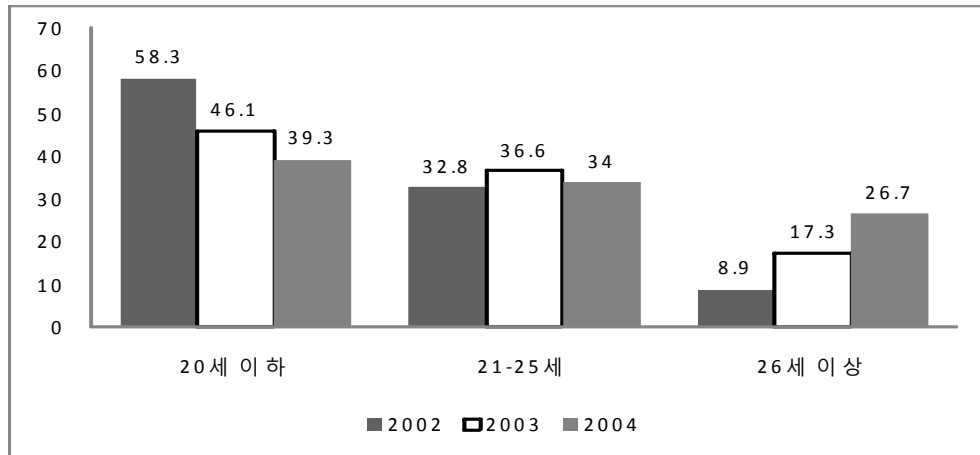
미혼모의 저연령화를 주장하고 있다.

24) 1998년 김영숙의 연구는 강원, 경기, 충북에 위치한 5개 미혼모시설 입소자 68명의 소규모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 미혼모시설인 애란원의 1991년과 1992년 입소자 연령분포를 보아도 10대 미혼모 증가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1991년 입소자 135명 중 20세 이하는 35.5%, 21-25세 43%, 26세 이상 22.2%이고 이듬해인 1992년 195명 입소자 중 각각 연령집단별 분포는 27.2% 46.7%, 26.2%이다.

25) 1998년 김영숙의 연구는 5개 미혼모시설 68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세 미만의 비율이 54.4%, 20세 이상은 45.5%로 10대의 비중이 높았다(김영숙, 1998).

26) 2004년 한 입양기관 통계에 의하면 전체 입양 의뢰 미혼모 중 69%가 시설 밖에서 아동을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허남순 외, 2005). 입양기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설 밖에서의 출산이 시설내의 2배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또 입양을 의뢰하지 않고 양육하는 미혼모를 고려할 때, 시설 거주 미혼모가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자료: 위의 그림은 4대 해외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 봉사회)의 미혼모 상담부서의 내부통계에 근거한 자료이다(허남순 외, 2005:19).

〈그림 II-1〉 4대 해외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한 미혼모의 연령분포

위의 표와 그림에서 제시하는 2002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시기 4대 해외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한 미혼모의 연령분포를 보면 1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02년 20세 이하의 비중이 58.3%이지만 2003년 46.1%, 2004년 39.3%로 크게 감소한다. 반면 같은 기간 26세 이상은 같은 기간 8.9%, 17.3%, 26.7%로 크게 증가한다. 입양 보내는 경향이 10대 연령층에서 더 많은 것을 고려할 때, 해외입양기관 상담 자료에는 전체 미혼모 중 10대 연령층이 더 많이 포착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여타 자료에 비해 10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입양상담 자료에서도 1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1990년 보호시설 입소 미혼모 연령분포와 비교할 수 있는 2000년 중후반 자료를 살펴보자. 아래 표는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각년도별 총 인원수와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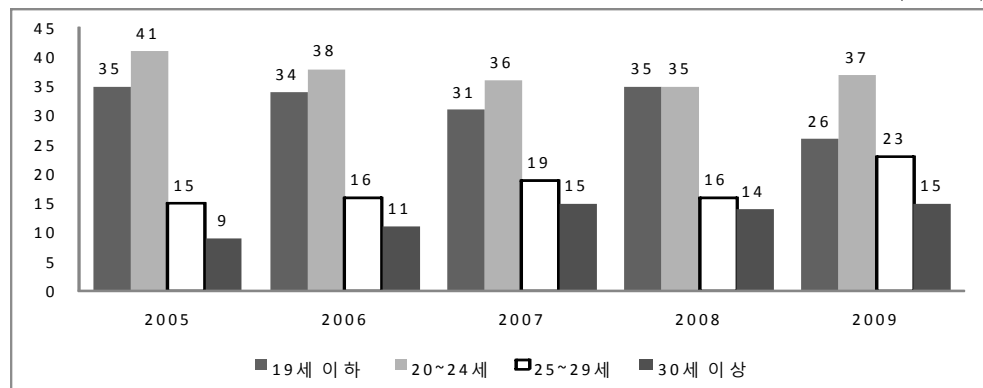
〈표 II-2〉 미혼모자시설의 미혼모 연령분포

(단위: %,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19세 이하	35% (688명)	34% (662명)	31% (660명)	35% (753명)	26% (633명)
20~24세	41 (800)	38 (745)	36 (771)	35 (756)	37 (905)
25~29세	15 (297)	16 (310)	19 (404)	16 (340)	23 (556)
30세 이상	9 (183)	11 (220)	15 (326)	14 (304)	15 (363)
합계	100 (1,968)	100 (1,937)	100 (2,161)	100 (2,153)	100 (2,457)

자료: 2005-2009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단위: %)



자료: 2005-2009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그림 II-2〉 미혼모자시설의 미혼모 연령분포

2005년 19세 이하의 비중은 35%로 1997년 47.9%와 비교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04년 해외입양기관 상담 통계에 나타난 20세 이하 비율 39.3%보다도 낮다. 2006년 시설 입소 미혼모의 19세 이하의 연령분포는 34%이고, 2007년 31%, 2008년 35%, 2009년 26%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설 입소 자료를 요약하면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

10대의 비중 감소는 미혼모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는 3개 미혼모 시설, 전국 10개 부녀아동상담소, 주요 입양기관의 전국 30개소 지부를 통해서 미혼모 조사를 실시하였고(안순덕 외, 1984),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는 미혼모시설과 양육모 그룹홈에

거주하는 미혼모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김유경 외, 2006).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는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미혼모 522명과 재가에 있는 미혼모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김혜영 외, 2009). 1984년 10대의 비중은 24.9%인데, 2002년 53%로 크게 증가하다가 2005년 41.8%, 2006년 39.5%, 2009년 30.8%로 감소한다. 요약하면, 최근 미혼모 중 10대의 비중이 증가하며 미혼모가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는 자료로 뒷받침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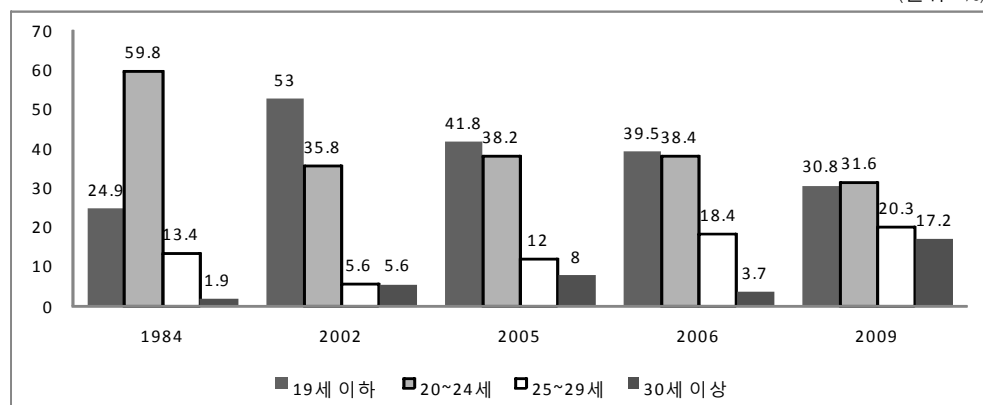
〈표 II-3〉 주요 연구에서 파악된 미혼모 연령 분포

(단위: %, 명)

	1984 ¹⁾	2002 ²⁾	2005 ³⁾	2006 ⁴⁾	2009 ⁵⁾
19세 이하	24.9(350)	53(124)	41.8(469)	39.5(75)	30.8(159)
20~24세	59.8(841)	35.8(82)	38.2(428)	38.4(73)	31.6(163)
25~29세	13.4(188)	5.6(13)	12(134)	18.4(35)	20.3(105)
30세 이상	1.9(27)	5.6(13)	8(89)	3.7(7)	17.2(89)
합계	100(1406)	100(232)	100(1120)	100(190)	99.9(516)

- 주: 1) 안순덕 외(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발생요인 설명과 복지대책 모색을 중심으로』.
 2) 이시백 외(2002),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미혼모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3) 허남순 외(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허남순 외(2005) 연구에서는 미혼모 연령을 20세 이하, 21~25세 이하, 26~30세 이하, 31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4) 김유경 외(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5) 김혜영 외(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

(단위: %)



〈그림 II-3〉 주요 연구에서 파악된 미혼모 연령 분포

오히려 시설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나 조사연구 자료는 미혼모 저연령화 주장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0대의 비중은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00년 중후반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미혼모 중 10대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10대 미혼모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10대는 장래 학업과 커리어 준비를 위해 집중적 훈련이 요구되는 시기이기에, 10대의 임신은 장래 성취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회를 차단한다. 전체 미혼모 중 10대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0대의 임신이 초래하는 교육 기회 제한 등을 고려할 때 10대 미혼모 발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입양미혼모와 양육미혼모 차이

최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양육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를 분석하여 입양미혼모와 양육미혼모의 차이를 검토해보려고 한다.²⁷⁾ 양 집단의 차이와 특성을 밝히는 것은 두 집단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입양미혼모와 양육미혼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9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 조사 자료를 사용하는데, 본 자료에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 출산직후 미혼모,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포함되어 조사대상자들이 임신, 출산, 양육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모들은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입양과 양육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며, 입양을 최종 결심하는 순간까지도 양육과 입양을 고민한다. 입양과 양육 미혼모를 구분하는 적절한 시점이 출산 이후일 것으로 생각하여 본 절에서는 출산이후 미혼모만을 선택하여 입양과 양육 결정의 연령별 차이를 보려고 한다.²⁸⁾

2009년 자료의 조사대상은 미혼모 관련 시설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들

27) 2009년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의 『미혼부모의 사회통합 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집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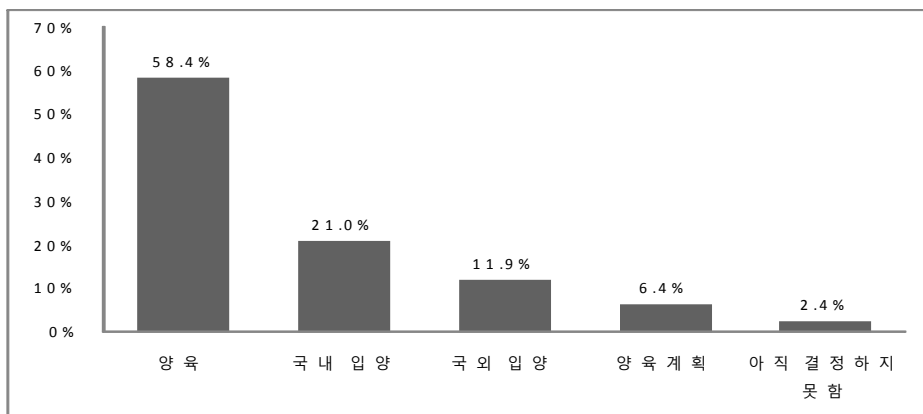
28) 2009년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의 『미혼부모의 사회통합 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집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인데 이들은 임신부, 출산후 입양 보낸 미혼모, 출산후 양육하는 미혼모 등 출산을 전후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미혼모들이 포함되어 있다.²⁹⁾ 2009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서 임신부를 제외한 출산 이후의 미혼모는 모두 329명이다(김혜영 외, 2009).³⁰⁾ 출산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관련된 향후 계획을 물어본 결과 32.9%가 입양을 64.8%는 양육을 결정하였다. 출산한 미혼모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분포를 보면 미혼모자시설이 59.4%로 가장 높고,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은 26.8%, 입양 미혼모를 위한 시설인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5.8%, 그리고 자택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8%이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서 수집된 조사대상 전체를 보면 임신부를 포함한 집단, 출산이후의 집단, 양육단계의 미혼모 집단별 연령분포에 차이가 있다. <표 II-4>는 2009년 자료 조사대상자 전체 미혼모, 출산한 미혼모 그리고 양육하는 미혼모 집단의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29) 출산후 입양과 양육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의 미혼모도 포함되어 있다.

30)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김혜영 외, 2009)에서 전체 미혼모 중 임신부를 제외한 출산 이후의 미혼모는 329명인데, 향후 자녀와 관련된 이들 생각은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58.4%인 192명이 양육을 하고 있고 21명인 6.4%가 양육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입양은 69명 21%, 국외입양은 39명 11.9%이다. 입양이나 양육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여성은 8명 2.4%이다.



<그림 II-4> 출산후 자녀와 관련된 미혼모의 향후 계획(2009)

〈표 II -4〉 2009년 임신부, 출산이후, 양육미혼모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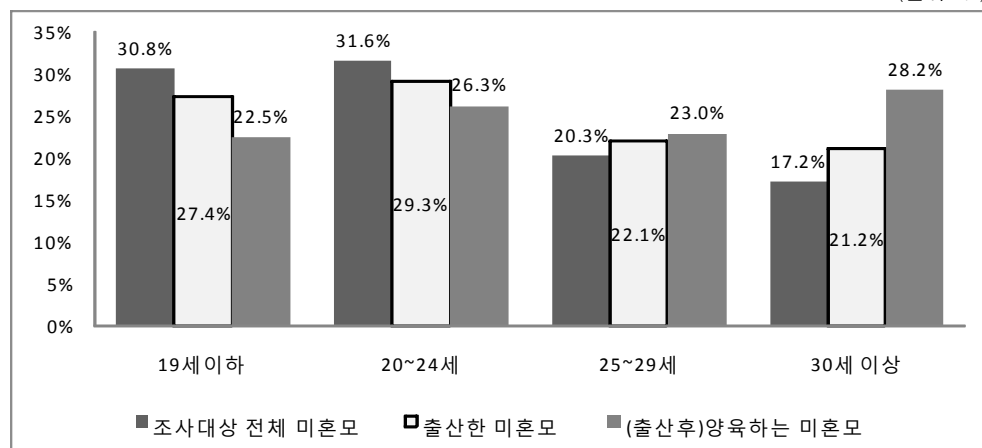
(단위: 명, %)

	조사대상 전체 미혼모		출산 미혼모		출산 후 양육 미혼모	
	(명)	(%)	(명)	(%)	(명)	(%)
19세이하	159	30.8	88	27.4	48	22.5
20~24세	163	31.6	94	29.3	56	26.3
25~29세	105	20.3	71	22.1	49	23.0
30세 이상	89	17.2	68	21.2	60	28.2
전체	516명	99.9	321명	100.0	213명	100.0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주: 조사대상 전체 미혼모에는 임신부가 포함되어 있고, 출산 미혼모는 전체 중 출산한 사람만을 포함한 것이고, 양육미혼모는 출산이후 양육을 결정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단위: %)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그림 II -5〉 미혼모의 연령 분포(2009)

임산부를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 미혼모 중 19세 이하의 비중이 30.8%인데, 이것은 출산후 미혼모 집단 27.4%와 양육미혼모 집단 22.5%에 비해 높다. 10대 집단에서 입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0-24세 연령 집단에서도 전체의 비율 31.6%와 비교하여 양육미혼모는 26.4%로 10대 보다는 덜하지만 이들 연령층에서의 입양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5-29세 전체는 20.3% 양육미혼모 중에서는 23%이고, 30세 이상은 전체 17.2% 양육미혼모는

28.2%이다. 고연령층에서 입양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고 양육 결정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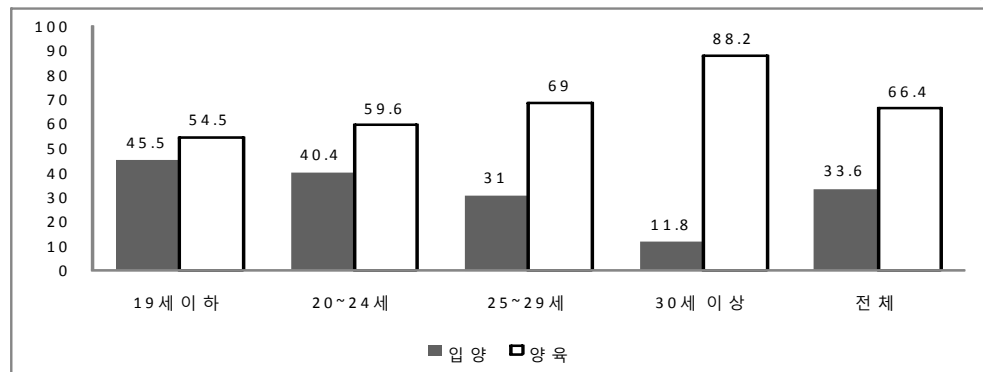
아래의 <표 II-5>와 <그림 II-6>은 출산을 완료한 미혼모 321명에 대한 것으로, 33.6%가 입양을 결정했고 나머지 66.4%는 양육을 계획하거나 현재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들이다.

<표 II-5> 출산후 미혼모의 연령별 입양미혼모 및 양육미혼모의 분포

(단위: %, 명)

	19세이하	20~24세	25~29세	30세 이상	전체
입양	45.5%	40.4%	31.0%	11.8%	33.6% (108명)
양육	54.5	59.6	69.0	88.2	66.4 (213명)
전체	100.0 (88명)	100.0 (94명)	100.0 (71명)	100.0 (68명)	100.0 (321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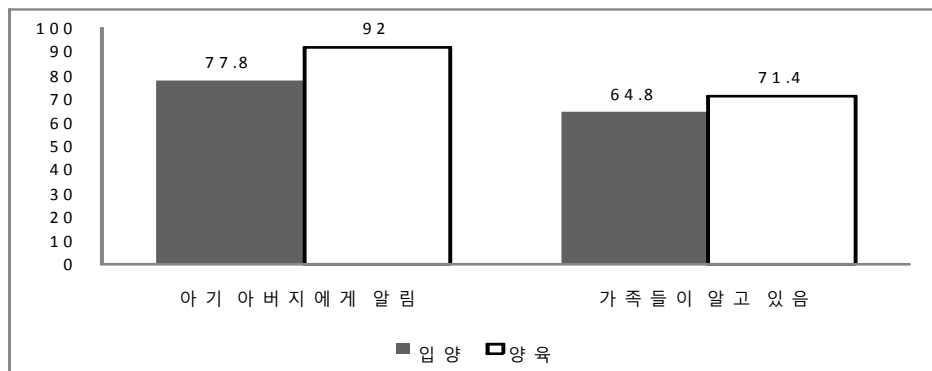
<그림 II-6> 출산후 미혼모의 연령별 입양미혼모 및 양육미혼모의 분포

입양과 양육별로 이들의 연령분포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층이 낮은 집단에서는 입양 미혼모의 비율이 높고 연령층이 높은 집단에서는 양육 미혼모의 비율이 높다. 19세 이하 중 입양 미혼모는 45.5%이지만 이 비율은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20-24세 40.4%, 25-29세 31.0%, 30세 이상은 11.8%에 불과하다. 반면 양육미혼모의 비율은 19세 이하에서 54.5%이지만, 20-24세 59.6%, 25-29세 69.0%, 30세 이상은 88.2%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양육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321명 중 입양이 33.6%, 양육이 66.4%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2배에 달하였다.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양육 미혼모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19세 이하에서는 양육 비율이 54.5%, 20-24세 59.6%, 25-29세 69%, 30세 이상에서는 88.2%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0대 미혼모가 양육미혼모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³¹⁾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서 양육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정부는 참고해야 한다.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현재 2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미혼모의 연령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에 근거해야 하며, 영유아를 키우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은 이들 가족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1) 입양미혼모와 양육미혼모는 연령분포에서만 아니라 미혼부나 가족들이 아기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는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양미혼모의 경우 아이 아버지가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77.8%이지만 양육미혼모의 경우 92%에 달하였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아기 아버지 인지도에 비해서 낮는데 입양미혼모 64.8% 양육미혼모 71.4%로 양육미혼모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 아기아빠와 가족들의 아기 존재 인지 여부(2009)

III

양육미혼모 지원 관련 정부 서비스

1.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 서비스	41
2.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54
3. 아동보육 지원 서비스	56
4. 보건과 영양 서비스	59

1.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 서비스

가. 양육미혼모 관련 시설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있는데, 양육미혼모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시설은 모자보호시설(미혼모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중간의집),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이다.

〈표 Ⅲ-1〉 미혼모 시설 유형별 제공 서비스

번호	시설별	제공 서비스
1	미혼모자시설	- 숙식 무료 제공 - 분만의료 혜택(의료급여대상자,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 제공,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급, 미숙아 분만시 의료비 지원,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장제급여 등 지급가능) - 자립지원: 직업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2	미혼모자·미혼모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및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한함) - 숙식무료제공 - 만4세이하 자녀를 법정 저소득층 아동으로 포함시켜 보육료 100% 지원(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한함) - 자립프로그램 실시: 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3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에 한함)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복지자금융자 지원 - 영구임대주택입주 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132-146.

출산을 지원하는 미혼모 시설은 2000년 중반 이후 시설 수와 정원이 증가하였고, 미혼모 양육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서비스가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한다. ‘미혼모시설’로 불리는 미혼모자시설에서 양육하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시설 자체의 자원과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진다.

〈표 Ⅲ-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요

(2009. 12. 31 현재)

번호	시 설 별	시설수	대 상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정원
1	모자 보호시설	4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 (2년)	1,062세대
2	부자 보호시설	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 (2년)	20세대
3	모자 자립시설	3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 (2년)	41세대
4	모자일시 보호시설	16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 (6월)	528명
5	미혼모자 시설	32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 (6월)	768명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23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2년 (1년)	174세대
7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	1	출산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2년 (6월)	10명
8	모·부자공 동생활가정	1(모자)		2년 (1년)	9세대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10.

앞의 <표 Ⅲ-1>을 통해서 각각의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알 수 있다. 표에 제시된 각 시설에서는 무료숙식 혹은 무료로 주거공간이 제공되는데, 시설에 거주하면서 기초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계의 경우 시설에서 제공되는 주거비와 식비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여 시설자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게 된다. <표 Ⅲ-2>에는 각 시설의 수혜 대상과 거주기간, 입소정원이 제시되어 있다. <표 Ⅲ-3>을 통해서 미혼모 관련 시설이 2004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시기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기간 한부모를 위한 시설의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미혼모자시설은 2004년 12개소에서 2009년 32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기간 9개소에서 23개소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 중후반 관련 시설의 확대는 미혼모의 산전후 지원과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표 Ⅲ-3〉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소수

(단위: 개소)

시 설 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79	85	95	100	107	118
모자보호시설	40	40	41	41	41	41
부자보호시설	—	—	—	1	1	1
모자자립시설	4	4	4	4	3	3
모자일시보호시설	14	14	14	14	14	16
미혼모자시설	12	18	20	25	27	32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9	9	16	15	19	23
미혼모공동생활가정	-	-	-	-	2	1
모·부자공동생활가정						1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10.

미혼모 시설의 자립지원이 강조되면서 미혼모를 위한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외에도 시설 내부나 외부의 직업교육 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출산직후의 미혼모에게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미혼모 시설은 입양 보내는 미혼모와 양육 미혼모가 함께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두 집단 모두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다. 시설 내에는 자녀에 대한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³²⁾ 또 원칙적으로는 시설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생활 규칙에 따라서 입소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설에 거주하면서 출산전후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체 생활 규칙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직장생활을 허용하지 않은 시설이 많기에 시설 입소 미혼모들은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한다.³³⁾ 미혼모 시설의 이러한 규정으로 미혼모의 재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어렵게 되고

32) 여기서 기술하는 시설 내부 생활에 관한 내용은 미혼모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미혼모 대상 인터뷰에서 수집한 것이다.

33) 한 양육미혼모는 임신6개월에 집에서 나와 시설에 입소하려고 문의했는데, 입소를 할 경우 직장을 다닐 수 없다고 하여 아기를 낳기 직전까지 아는 사람 집에서 기거하였고 출산 직전에 입소하여 시설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이 미혼모는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하여도 직업이나 학업의 지속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프로그램 참여를 시키기 위해 입소한 사람들에게 학교와 직장을 쉬게 한다고 주장했다(38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이로 인해 일반여성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임산부나 미혼모가 처한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설의 열악함이다. 미혼모들은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비스가 다양하지만, 시설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 시설 내 10대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를 구분하여 상이한 규칙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미혼모시설 퇴소 후 거주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곳인데, 교육훈련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에 거주하는 곳으로 기능한다. 가족이나 친구의 집에서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던 양육미혼모들에게 안정된 거주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희망하는 사람 중 소수만 입소할 수 있다. 또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야 하기에 사적 영역의 확보가 제한적이다. 부엌을 공유하며 식사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불편함으로 지적된다.

흔히 모자원으로 불리는 모자보호시설은 저소득 모자가족이 3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미혼모자시설이나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과 비교하여 개별 가족이 독립된 부엌을 사용하는 등 독립성이 보장되는 주거 공간이다. 2010년 전국 41개소에서 1,062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주거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원에 비해 입소하려는 세대가 많다. 전국적으로 미혼가족의 입주 비율이 높지 않고, 입주하려는 양육미혼모들은 기다리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양육미혼모를 위해 더 많은 모자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³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로, 2인가족 기준으로 2010년 월 수입이 111만6천여원 이하이면 해당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10).³⁵⁾ 한부모가족

34) 자녀가 학업 계속하고 있는 때는 22세 미만까지 포함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35) 어린자녀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의 연령층이 20-30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일을 할 경우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를 넘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는 가족이나 직장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에 양육이나 생계와 관련하여 현물이나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저소득 한부모가

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자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아, 양육미혼모 원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복지급여 중 어린자녀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양육수당 5만원이다. 점차적으로 수혜대상 아동의 연령층이 확대되어 2010년에는 만 12세 미만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혜대상 아동 연령층은 확대되었지만, 수당 5만원은 증가하지 않았다.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서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다수에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동양육비인데, 수혜대상 아동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표 Ⅲ-4〉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기준일: 2010.1.1 • 지원내용 : 1인당 월 50,000원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61.

〈표 Ⅲ-5〉 자녀 학비·양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입학금		고등학생 수업료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42,257	13,618	10,646	197	30,963	26,831	83,866	40,646

자료: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표 Ⅲ-5〉 아동양육비 지원현황에 의하면 2009년 42,257명의 아동에게 136억 원의 양육비가 지급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수혜아동 규모는 모든 한부모가족 아동을 통합한 것으로, 이중 양육미혼모 가정의 자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해외입양과 관련된 우리사회 미혼모의 독특한 역사를 고려할 때, 양육미혼모 가정의 양육수당은 더 높아져야 한다. 미혼모 양육지원과 관련된 복

족 자격을 정하는 소득 수준을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인 150%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까지 확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한부모지원활동가 자문에 기초한 내용이다).

지체계가 부족하여 이들 아동 대다수가 해외로 입양되었고 한국은 세계 최대 입양송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하는 미혼모 자녀에게 입양된 아동 못지않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입양가정의 경우는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양된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다.³⁶⁾ 국가 간 아동입양에 대한 1993년 헤이그협약에서도 입양에 앞서서 친부모가 아동을 키우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어머니가 직접 키우면 저소득 가정에 한하여 5만원 양육수당을 제공하지만, 어머니와 헤어져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키워지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복리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의 양육수당은 입양가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있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직업과 소득의 기회를 포기하는데 양육미혼모의 경우도 그러하다.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이들이 향후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 주거지원

기존 연구에 의하면 양육미혼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이다. 정부는 대한토지주택공사와 연결하여 저소득 한부모를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제공되는 물량에 비해 입주하려는 사람의 수가 항상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임대주택을 기다리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있어서도 동일순위에 있는 경우 양육미혼모 가족은 여타 한부모가족에 비해 불리하다. 입주 자격에 부여되는 점수에 자활기간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에 있어서 양육미혼모 가족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³⁷⁾ 여타 한부모 가족에 비해서 부양가족수가 적고,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이 짧으며, 미혼모가 되기 전에는 수급자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짧고, 출산이라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청약저축납입 횟수도 적다.

36) 입양된 아동은 18세까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고 있다.

37) 자활사업은 20-30대의 양육미혼모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다.

〈표 Ⅲ-6〉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 동일순위내 경쟁시
 - 자활사업 참여기간(3점~7점), 당해지역 연속거주기간(1점-3점), 부양가족수(1점-3점), 청약저축납입횟 수(1점~3점), 최저주거기준미달(3점-4점)
-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우선 공급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116.

요약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의 물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양육미혼모는 여타 한부모가족 입주자격을 취득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은 낮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1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라. 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무보증인 경우 1,200만원 이하, 보증 및 담보대출의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이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복지자금은 창업비용 지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1,200만원이나 2,000만원 이하의 자금이 창업에 충분하지 않고,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창출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이유로 기본 생계가 보장되어야 하는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복지자금을 창업 용도에만 제한하는 것을 변경해야 한다.

〈표 Ⅲ-7〉 복지자금 대여 : 창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 ※ 타 행정기관과의 중복 용자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여는 불가. 주택자금 용자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영세민 전세자금을 이용하도록 안내
 - ※ 대여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대여기관: 농협(대여 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전국 농협 영업점)
- 대여재원: 공공자금 관리기금('10년도 40억원)

마.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

미혼부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한 강제인지 청구절차와 양육비 청구와 지급절차를 밟을 수 있다(전국여성법무사회, 2010).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와도 미혼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국여성법무사회, 2010). 이혼절차에서 양육비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2009년 11월 9일 이후 개정되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사를 작성하게 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을 통한 이행명령이 가능하게 하였다(전국여성법무사회, 2010). 그러나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이혼의사 확인절차에 포함되어 있어 미혼모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표 Ⅲ-9〉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하되, 승소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지원기간: 2010.1~12 ▪ 지원대상사건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 청구소송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 지원한도: 1인당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지원(한도액 없음, 단, 2010년도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실시) ▪ 사업비: 총 325백만원(100% 국비보조) ▪ 사업수행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68-69.

〈표 Ⅲ-10〉 여성가족부 지원 자녀양육비이행청구소송 현황

(단위: 건, %)

	연도	자녀양육비청구			자녀 인지청구			자녀양육비이행확보		
		종료	승소	승소율	종료	승소	승소율	종료	승소	승소율
대한법률 구조공단	2007	63	44	74.6	4	3	75.2	114	109	96.5
	2008	193	134	99.4	10	9	100	190	162	97.7
	2009	191	111	98.8	15	6	100	207	182	97.5

	연도	자녀양육비청구			자녀 인지청구			자녀양육비이행확보		
		종료	승소	승소율	종료	승소	승소율	종료	승소	승소율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2007	42	27	96	4	2	100	2	2	100
	2008	23	9	91	1	0	100	0	0	-
	2009	55	28	95	3	2	100	3	3	100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강지원, 2010 재인용).

주: 자녀양육비이행청구소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사업임.

승소율: (승소+화해)/(승소+화해+패소+각하)*100

2007년부터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전국여성법무사회, 2010). 정부가 2008년에는 기초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만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했는데, 2010년부터는 수혜 가족의 소득 제한이 없어졌다. 정부가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비를 지원하지 않음, 소송을 하고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정부의 양육비 청구 소송 비용 지원 제도를 크게 반기지 않는 양육미혼모들도 많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양육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미혼모가 되기까지 아기 아빠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였기에 소송이라는 과정에서 상대와 접촉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아이아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양육비 청구 때문에 아이아빠와 대면하고 싶지 않은 양육미혼모를 위해 양육비 청구와 집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기관에서 비동거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독일과 한국에서는 양육비 징수가 개인이 처리하는 일로 규정되었다(강지원, 2010).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상대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 비동거부모의 무능력, 연락두절, 비협조적 태도로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국에는 아동양육비이행 강제기관(OCSE)이 법원 명령에 따라 양육비 징수와 전달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동거 부모의 소득과 재산 파악을 위해 국세청이 협조하고 주소불명, 연락두절과 관련하여 연방부모위치확인서비스나 연방부모소재탐지서비스가 아동양육비 이행강제기관(OCSE)과 협조하고 있다(강지원, 2010). 미국과 독일에서는 비동거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비동거부모가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급이 어려울 때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비동거 부모의 소득이 발생하면 후에 이를 징수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강지원, 2010; 박영미, 2010).³⁸⁾

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2010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자의 출산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혼모부자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것도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거점기관은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양육미혼부모를 위해 병원비나 생필품을 지원하고, 시설이나 지역에 있는 미혼부모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정서적 결속 강화 지원을 도모하려고 한다.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출산비나 아이병원비를 지원하고, 분유 및 기저귀와 같이 어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제공한다. 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서 양육미혼모의 정서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거점기관의 주요기능이다.

양육미혼모 당사자들은 거점기관이 지역사회 미혼모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평가한다.³⁹⁾ 지역사회 양육미혼모 인터뷰에 의하면 거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3세 미만 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서대여 및 도서제공과 같이 만4세 이후 아동에게도 적용이 되는 서비스가 추가되기를 바란다.

38)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6월 ‘양육비대지급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이다(전국여성법무사회, 2010).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동거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양육부모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육비대지급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대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권자인 양육부모에게 통지하고, 비동거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대지급을 중지한다. 정부는 양육비를 대지급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9) 미혼모부자를 위한 거점기관 사업이 미혼모들에게 잘 홍보되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표 Ⅲ-11〉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 사업목적: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
- 사업예산: 총 84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2010년도)
- 사업기간: 2010.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수행기관: 16개 시도 내 건강가정지원센터(17개소)
- 지원대상
 - 경제적 지원(병원비 및 생필품 등) : 국가(지자체 포함)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발생 가구(단, 병원비의 경우 기초수급권자를 제외한 가구는 가능)
 - 자조모임 및 문화활동, 교육 등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시설 또는 재가 미혼모 등
 - ※ 재가 미혼모·부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에 지원 신청시 지원토록 함
- 지원예산액: 개소당 평균 약 50,000천원 내외
- 주요지원내용
 -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 연계 지원
 - 미혼모시설, 법률·의료기관 유관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연계 등
 - 정부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수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 위기지원기능 수행: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 미혼모·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되, 부양의무자 및 주변의 도움 가능성 등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청소년 미혼모·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 병원진료비: 출산비, 아이 입원 등 병원비
 - 생필품: 분유, 기저귀 구입비 등
 - 1인당 1회 최고 30만원 이내, 1인당 60만원 이하로 지원(생필품의 경우 1회당 10만원 미만)
 - 병원비의 경우 수행기관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 생필품은 수행기관에서 직접 구입지원 또는 구입대상처에 입금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문화체험, 교육 프로그램, 자원연계 및 제공
 - 자조모임 운영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 ※ 자조모임 운영비 신청시 예산 범위 내에서 1회당 신청금액의 50%이하로 지원할 수 있음. 단 7만원 미만일때는 100% 지원할 수 있음. 1회당 지원 상한액은 참가인원당 2만원 이하, 예산형편상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경비, 주류구입 경비 및 단순 식사비 등은 지원 제외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78-84.

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2010년에 신설되었는데, 명칭은 청소년한부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다. 청소년 연령층에 이혼이나 사별로 한부모가 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주요 특징은 수혜 대상을 최저생계비 150%로 확대하였고 아동 양육비수당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수당의 두 배인 1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의료비와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청소년 임신과 출산을 비행과

사회문제로 보던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자격을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정책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청소년기 혼외임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원치 않는데 자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과 양육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양육미혼모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의 한계는 24세 이하에게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나 통계 자료 분석을 보면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의 비율은 10대보다 20대 후반이나 30대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이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면 모든 양육미혼모에게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양육미혼모는 정서적인 면에서 성인미혼모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녀 양육수당이나 의료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자녀양육수당이나 의료비 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양육미혼모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저출산에 대응하여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의지가 높은 20대 후반이나 30대 미혼모를 정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표 Ⅲ-1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2010 신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저연령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14,700여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최저생계비 100%이하와 150%이하로 구분) ※ 가구의 역량에 따라 자율참여 방식의 지원 적용(검정고시 및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 - 지원연령 및 기간: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내용					
지원구분	아동		청소년한부모	가구단위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지원	친자검사
지원액	월10만원	월24천 원	'10년 :1,155천원	5-20만원	4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지원자 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 5만원 이하: 기초수급권자 - 20만원이하: 최저생계비150% 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 제외)	전체

지원구분	아동		청소년한부모	가구단위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지원	친자검사
지원계획	계좌입금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 신설 후 행입금	검사기관 입금

▪ 지원예산액: 아동양육비·의료비, 자산형성, 검정고시 지원 등 국비 121억원

구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지원	가구자산지원	기타(친자 및 연구비)	총계
계	2,477,616	594,623	7,258,638	5,681,512	393,200	16,405,589
국고	1,808,130	433,951	5,298,063	4,146,656	393,200	12,080,000
지방비	669,486	160,672	1,960,575	1,534,856	0	4,325,589

▪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한하여 2010년 4월부터 지원(예정)

자료: 『2010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세부운영 안내』, 여성가족부(2010), pp. 7-9.

2.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

저소득 양육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생계급여인데, 수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제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양육미혼모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의 부양능력을 고려한다. 많은 양육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은 혼외임신으로 가족과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다. 많은 미혼모가 자녀양육을 결심하면서 원가족과 정서적, 경제적으로 단절하게 된다. 부모와의 단절로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양육미혼모가 적지 않아 이들에 의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Ⅲ-13〉 기초생활보장 개요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①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09(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2,172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판정 (부양능력없음:수급자선정/ 부양능력미약:부양비 부과/ 부양능력있음: 수급자 선정제외)						
- 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내용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자료: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5, pp. 65-66.

기초생계를 위한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해산급여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 임신부는 기초생계수급자로 선정되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하는 미혼모들은 해산급여를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 미혼모가 출산을 앞두고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역사회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수급자,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받는 경우는 보장시설수급자이다. 미혼모자시설이나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은 보장시설 수급자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시설에 입소했다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양육미혼모 인터뷰에 의하면 일반수급자와 비교해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되고 있고 미혼모로서 시설에 입소한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다고 한다.⁴⁰⁾

40) 지역사회 미혼모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지원과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과 어린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특례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

3. 아동보육 지원 서비스

2000년 이후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아동보육과 관련된 정부 지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 2000년 초반 양육미혼모 연구에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이 꼽혔다. 저소득 양육미혼모의 소득수준에 비해 양육비 부담이 높아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지원은 양육미혼모가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 방법이다.

〈표 Ⅲ-14〉 영유아보육법: 아동보육료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
 - 차등보육료: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만5세아보육료: 월 172천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 383천원(정부 미지원시설은 수납한도액)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40%-70% 지원
 - 방과후 보육료: 만5세아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은 '6.장애아무상보육료'에서 정한 단가)
 - 시간연장형 보육료
 -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 3,400원
 - 야간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24시간 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50%
 - 휴일보육 : 일보육료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보육가능일수)×150%]
 -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시간제 보육 : 법정저소득층아동 시간당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 지원방식:
 -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자료: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49.

정부는 아동보육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 0세에서 4세까지는 가구의 소득수준별 자녀연령별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정규근로 시간과 관련된 보육뿐만 아니라 야간과 24시간 보육 관련하여서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보육사업안내). 이외에도 취학전 만5세 아동의 보육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서 양육미혼모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2000년 초반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어,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기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우유비용과 견학비용을, 유치원은 교육비, 급식비, 교재비, 견학비를 별도로 받고 있어 양육미혼모에게 부담이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특히, 영어, 음악, 체육과 관련된 특활 프로그램이 선택사항으로 제공되고 있어 추가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양육미혼모들은 자신의 아이만 빠지게 할 수 없는 고충에 직면하고 있다.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외에도 부모가 직접 만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양육 미혼모 가구소득이 차상위 이하일 때 어린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표 Ⅲ-15〉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월령 23개월이 도래한 날이 속 하는 달 까지 지급하되, 일할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 - 보육료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 아동 - 지원연령: 수당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인 아동 - 지원대상 기준소득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 이하 가구	133만원	163만원	193만원	224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지원금액: 월 10만원				

자료: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269-271.

자료: 『'1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16.

〈표 Ⅲ-16〉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0세(3개월 이상)~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파견, 월 80시간(연 480시간 이내) - 서비스 수요유형에 따라 아동양육중심의 양육돌봄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돌봄 서비스 제공 - 기관 돌보미 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 제공(2010 신규) ▪ 서비스 연계원칙 - 예약 가정 비 경합시 신청순으로 서비스 연계 - 예약가정이 동시에 서비스 신청하거나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저소득 한부모가정) ② 그 외 한부모 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③ 맞벌이 가정 ④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 예산: 총 30,849백만원(국비 19,705백만원, 지방비 11,144백만원) ▪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 기본가격: 시간당 5,000원(주말·심야 6,000원)						
아동수		기본가격		심야(주말)가격		
1명		5,000원		6,000원		
2명		7,500원		9,000원		
* 심야: PM 9:00~AM 8:00, 주말: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 이용료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이용요금(1시간당)				
유형	소득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이용요금 80%지원)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100%(이용요금 20%지원)	5,000원	1,000원	4,000원		

자료: 『201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10), pp. 4-5, pp. 18-19, p. 22, pp. 25-27.

정부는 가구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금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그 외 한부모 가정에게 서비스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근로 및 학업으로 양육지원이 필요한 양육미혼모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관련 예산 감축으로 관련 이용시간이 감소하고 추가요금도 증가하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었다.

보육지원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과 회식문화가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양육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란 쉽지 않다. 유치원에서 종일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전일제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가 종일반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렵다. 야근과 회식을 피하기 어려운 우리의 직장문화를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같은 유연한 아동보육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양육지원 제도는 미혼모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에 관련 예산을 감축하기보다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

4. 보건과 영양 서비스

출산 전후의 보건서비스 지원은 미혼모자시설 뿐만 아니라 미혼부모 거점기관, 기초생활보장의 출산급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보건소에서는 산전후 관련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전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 촬영, 초음파 검사와 임신 중 초음파검사, 풍진검사, 기형아 검사뿐만 아니라 영유아 대상의 결핵,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장티푸스, 수두 등 예방접종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⁴¹⁾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1인당 30만원까지의 진료비를 고운맘카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⁴²⁾ 고운맘 카드의 1일 사용 한도액은 4만원인데, 진료비가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일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 보건소는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신청은 출산예정 2개월 전에서 출산후 20일 사이에 주거지 보건소에 하며, 해당 서비스는 2주간 받을 수 있으며,⁴³⁾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⁴⁴⁾

산전후 보건서비스 지원 외에도 전국 16개 시도 250개 보건소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⁴⁵⁾ 수혜대상은 최저생계비 200%미만 가구에 영양교육

41) <http://health.sdm.go.kr/main/index.jsp> 서대문구 보건소 홈페이지.

42) http://www.gounmom.co.kr/voucher_voucher_system/voucher_system02.asp

43) 해산급여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44) <http://health.sdm.go.kr/main/index.jsp> 서대문구 보건소 홈페이지.

45) 서대문보건소의 경우 수혜자격이 있는 가정에서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아동의 키, 몸무게, 빈혈상태, 영양섭취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과 영양상담을 제공하고 수혜대상의 영양상태에 따라 처방된 식품 패키지가 제공 되는데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굴, 오렌지 주스 등의 식품이 가정으로 배달된다. 확보된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은데 영양이나 의학적인 면에서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영유아나 임신부, 수유부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영양이나 의학적 측면 외에 추가로 고려되는 사항은 소득수준, 1-2세 아동, 조손·한부모·미혼모 가정 여부이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산전후 진료나 아동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 서비스 외에도 발육이 부진하거나, 건강상태 및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면접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보건소의 보건 및 영양서비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나 영양 관련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양육미혼모에게 이러한 보건소의 서비스가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표 Ⅲ-17〉 보건소 영양프로그램: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개요 -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 사업수행 보건소 : 전국 16개 시도 250개 보건소 ▪ 지원대상 - 만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유산 및 사산한 여성도 포함), 수유부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적용	
구분	설명
우선순위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2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우선순위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6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7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자료: 『2010년도 사업안내 영양플러스+』,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4-6, pp. 10-11, p. 35.

IV

양육미혼모의 생활현황

1. 조사 자료의 특성	65
2. 출산 전후 양육미혼모 거주 여건	73
3. 양육미혼모의 소득수준	78
4. 출산전후 경제활동 변화	95
5.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	103

1. 조사 자료의 특성

본 보고서의 IV장과 V장에서는 양육미혼모의 생활현황과 정부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경험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활용된 자료는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2010년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이다.⁴⁶⁾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인터뷰(FGI) 자료가 이 두 가지 조사 자료에 추가하여 사용되고 있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 데이터는 양육미혼모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2010년 양육미혼모 조사자료는 공동생활가정, 모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총 117명의 양육미혼모 사례가 수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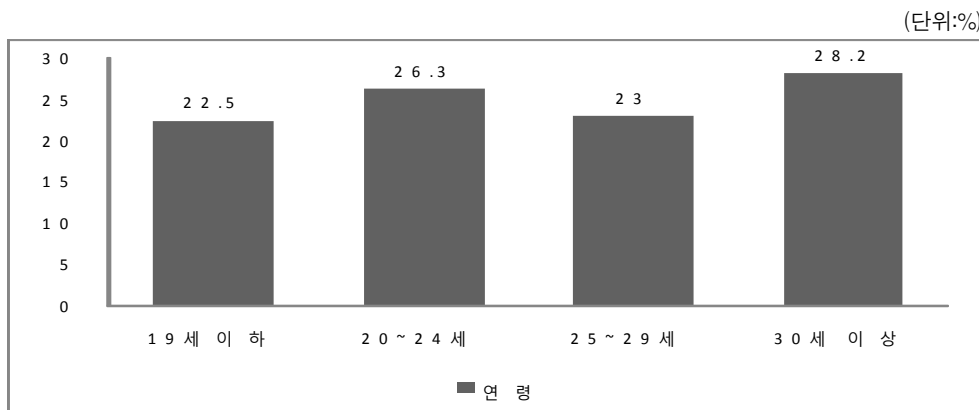
2010년 조사 자료에서는 양육미혼모가 어떻게 양육과 생계를 꾸려나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배경 외에 임신과 출산의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였고, 현재의 경제상황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많은 여성들은 양육의 부담으로 경제활동 반경을 제한한다. 홀로 아기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에게 경제활동의 제한은 생계의 위협을 의미하며 이는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혼모로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양육미혼모들은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을 결정하면서 빈곤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양육 때문에 소득활동이 제한되면서 수입이 감소한다. 본 2010년 조사자료에서는 출산을 전후로 경험하는 직업지위나 소득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한다. 미혼모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다가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빈곤에 처하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위해 복지급여의 역할이 중요하다. 복지급여 수급과 관련된 양육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양육미혼모의 생활현황과 복지서비스 경험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9년과 2010년 양육미혼모 조사연구 자료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46)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는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이 공동으로 작업한 것이다.

가. 2009년도 양육미혼모 자료의 특성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데이터에서 양육미혼모는 모두 213명인데 이들은 시설과 지역사회에 거주한다.⁴⁷⁾ 거주유형별로 보면 시설 거주자가 89.1%로 이고 시설 밖 거주자는 10.9%이다. 2009년 자료 양육미혼모의 연령분포는 19세 이하가 22.5%, 20~24세 26.3%, 25~29세 23.0%, 30세 이상 28.2%로 각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하는 시설 입소 미혼모 연령분포에 비해서 20대와 30대 이상의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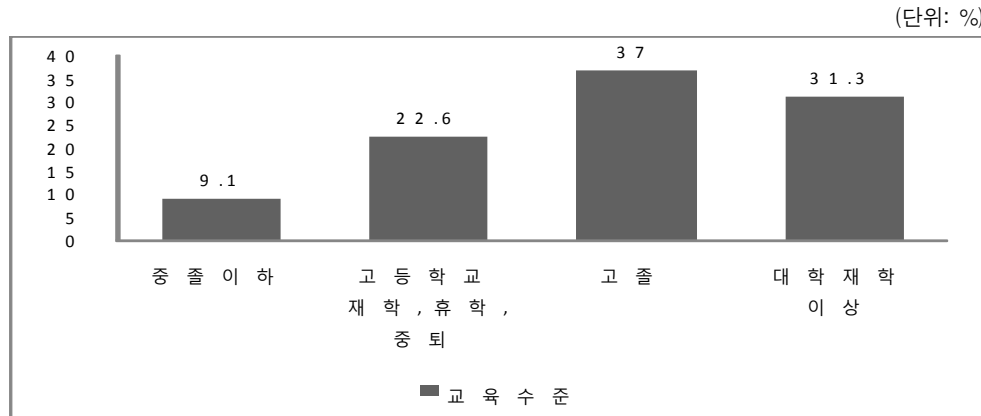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그림 IV-1〉 양육미혼모 연령별 분포

양육미혼모의 교육수준 분포는 고졸 미만이 31.7%, 고졸 37%, 대학교 재학 이상 31.3%로 조사대상 3분의 2가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소지하고 있다.

47) 이들은 2009년 조사에서 임신부를 제외한 출산 후 미혼모 중 입양을 보내거나 결정한 미혼모와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입양이나 양육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제외한 양육미혼모이다. 양육미혼모는 출산을 하고 양육을 계획하는 미혼모와 양육중인 미혼모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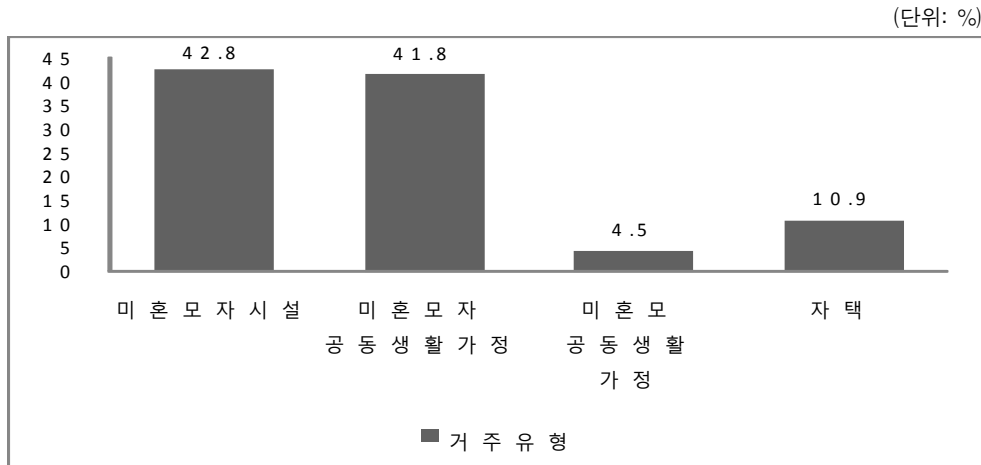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그림 IV-2〉 양육미혼모 교육수준별 분포

거주유형별 분포를 보면 미혼모자시설 42.8%, 그룹홈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41.8%, 미혼모공동생활가정 4.5%로 출산전후로 분만을 지원하는 미혼모자시설(미혼모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의 비중이 높다.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 본 조사 자료의 자녀 나이가 2세 이하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조사된 양육미혼모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유형을 종합하면, 25세 이상의 양육미혼모 비중이 절반을 넘고, 3분의 2가 고졸이상의 교육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수준이나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소유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설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양육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관계 단절로 지역사회에서 자력으로 살아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그림 IV-3〉 양육미혼모 거주유형별 분포

나. 2010년 양육미혼모 자료의 특성

기존의 미혼모 연구 거의 대부분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유는 지역사회 거주자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 조사대상자 발굴이 어렵기 때문이다. 표집의 틀이 되는 모집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2010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양육미혼모를 찾기 위해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설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를 조사하고 조사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양육미혼모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표집하였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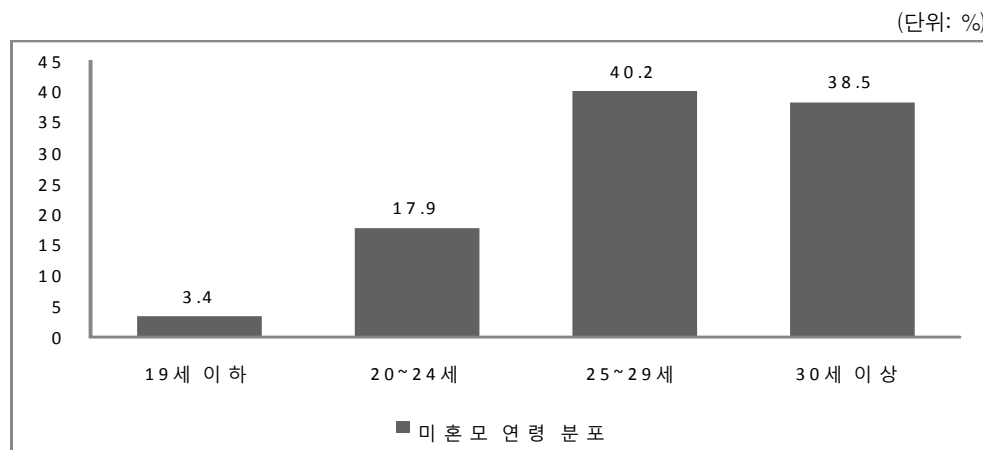
2010년 본 연구조사에서 수집한 양육미혼모 사례의 대다수인 86.2%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데, 기존의 시설중심으로 수집된 양육미혼모 자료와 차이를 보인다. 2010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육미혼모 자료의 연령분포를 보면 19세 이하가 3.4%에 불과하여 2009년 정부 관련부처가 보유한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자료의 26%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4세 이하가 21.3%에 불과하여, 2009년 정부의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자료의 63%와 비교하여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25-29세 40.2%, 30세 이상 38.5%로 25세 이상의 비율이 78.7%로 조사대상 대부분이

48) 비확률표집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양육미혼모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 미혼모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양육미혼모 표집 과정은 서론의 연구방법 부분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0대 중후반과 30세에 분포하고 있다.

2010년 본 연구 자료의 양육미혼모 연령분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9년 자료와도 차이가 있는데, 2009년 자료에서 24세 이하는 48.8%이고 25세 이상은 51.2%이다. 이들 자료를 종합하면 나이가 어린 10대나 20대 초반 이하 미혼모가 시설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을 중심으로 표집된 2009년 양육미혼모 자료가 정부의 미혼모자시설 자료에 비해 25세 이상 연령층 비중이 높은 것은 24세 이하 연령층에서 양육보다는 입양 보내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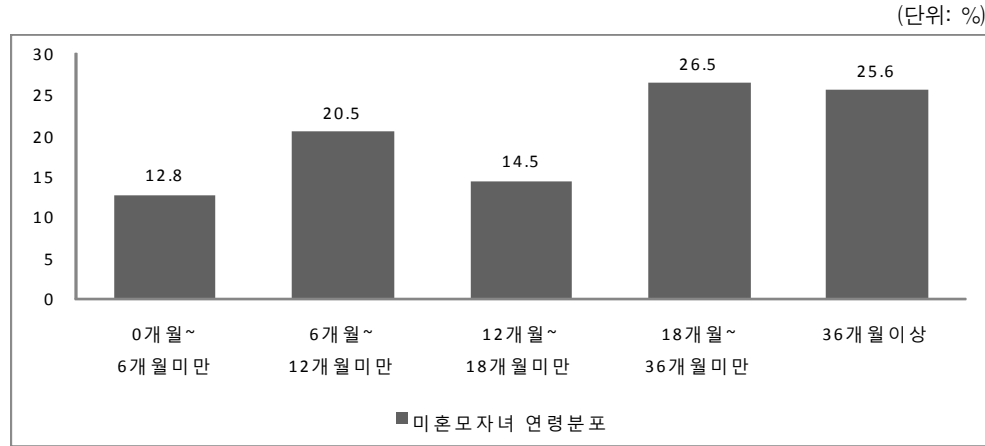
2010년 양육미혼모 자료의 연령분포가 2009년 자료에 비해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시설거주 양육미혼모에 비해 지역사회 양육미혼모의 연령층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표집장소나 방법에 따라 미혼모의 연령분포는 차이를 보이는데, 다양한 조사 자료의 표집장소와 연령분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미혼모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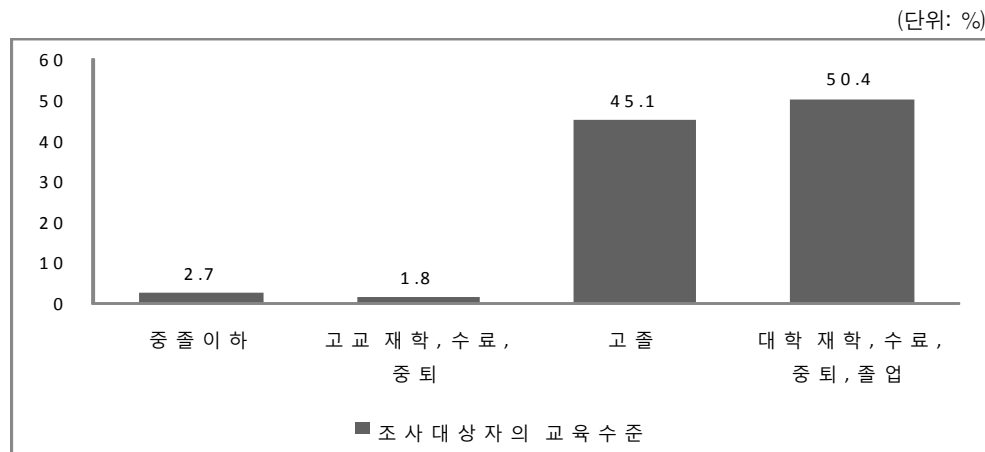
〈그림 IV-4〉 2010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연령 분포

2010년 양육미혼모 조사 자료의 자녀 연령 분포를 보면, 12개월 미만인 비율이 33.3%, 18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자녀의 비율은 26.5%, 36개월 이상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5〉 미혼모 자녀의 연령 분포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6〉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5%이고 고졸 45.1%, 대학재학 이상의 50.4%로 고졸 이상의 비율이 95.5%로 2009년 양육미혼모의 68.3%에 비해 고졸 이상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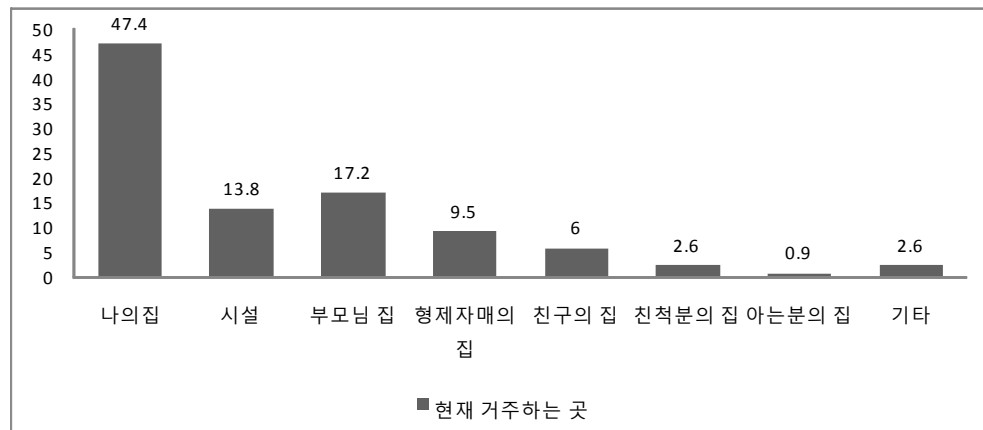
〈표 Ⅳ-1〉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지

(단위: %, 명)

구분	나의집	시설	부모님 집	형제자매의 집	친구의 집	친척분의 집	아는분의 집	기타	합계
비율	47.4(55)	13.8(16)	17.2(20)	9.5(11)	6.0(7)	2.6(3)	0.9(1)	2.6(3)	100(116)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Ⅳ-7〉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지

2010년 양육미혼모 자료에서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도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가 있는데, 시설 거주자는 13.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47.4%, 부모님집 17.2%, 형제자매 9.5%, 친구집 6.0%로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40% 정도는 부모님 집 등 다른 사람에게 주거를 의지하고 있다. 이처럼 2010년 조사 자료에서는 시설 밖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양육미혼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 집단인터뷰(FGI) 자료의 특성

〈표 IV-2〉 집단인터뷰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	연령 (세)	자녀 연령	자녀 성별	거주 지역	거주유형	현재 주로 하는 일
1	39	6세	남	서대문구	재가	아르바이트
2	38	6세	남	구로구	재가	직장
3	35	27개월	여	구로구	모자원	사무직
4	37	25개월	여	동작구	재가	전문직
5	37	19개월	여	마포구	중간의집	무직
6	29	19개월	여	성북구	재가	무직
7	21	5세	남	성북구	재가	무직
		22개월	여			
8	32	19개월	여	성북구	재가	무직
9	33	17개월	여	김포시	재가	강사
10	31	5세	남	광진구	재가	무직
		3세	여			
11	26	12개월	여	마포구	시설	무직
12	28	12개월	남	성북구	재가	개인사업
13	26	4세	여	성북구	모자원	무직
14	23	25개월	남	성북구	모자원	아르바이트
15	29	3세	여	영등포구	재가	무직
16	32	30개월	남	고양시	재가	교육중
17	30	48개월	남	화성시	재가	직업훈련
18 ⁴⁹⁾	34	8세	여	동대문구	재가	학생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집단인터뷰는 한 회에 3~5명이 참여하여 총 6회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총 17명이었고, 이 중 일부 참여자는 인터뷰 주제에 따라 반복하여 참여하였다. 집단인터뷰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49) 사례 18의 경우, 집단토론회에서의 발언이 아닌 개인의 발표문 내용을 사용하였다. 사례 18은 FGI 참여자 수에서 제외하여 참여자 수는 총 17명이다.

2. 출산 전후 양육미혼모 거주 여건

임신과 출산 과정에는 가족이나 친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대다수 미혼모는 반대로 편견, 비난, 갈등을 경험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양육미혼모가 임신과 출산에 이르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조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시기에 가족과 친지의 사회적 관계망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미혼모들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다. 예기치 못한 혼외임신으로 많은 미혼모들을 1차적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미혼모들이 시설에 도움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양육미혼모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양육미혼모들이 어떠한 곳에서 기거했는지 살펴보자.

〈표 IV-3〉 연령별 출산당시 미혼모 시설 거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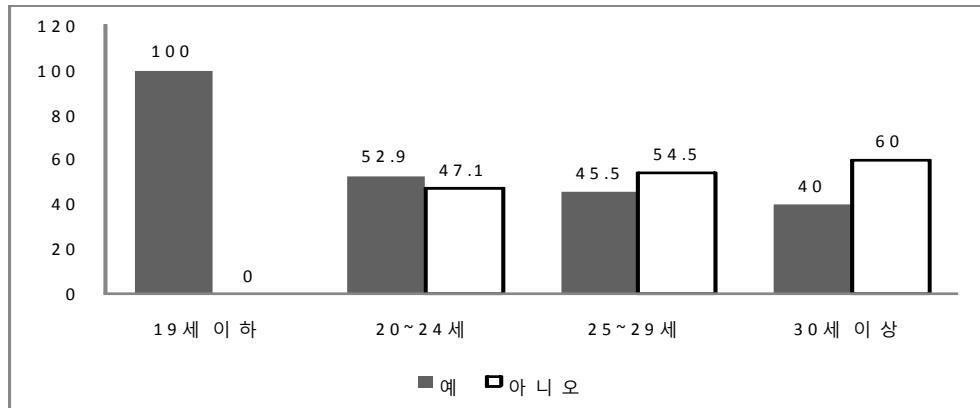
(단위: %, 명)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세 이상
예	100.0(4)	52.9(9)	45.5(20)	40.0(16)
아니오	0.0(0)	47.1(8)	54.5(24)	60.0(24)
전체	100.0(4)	100.0(17)	100.0(44)	100.0(40)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2010년 양육미혼모 연구에서는 출산당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한 비율은 46.7%이고 53.3%는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출산을 했다. 출산 당시 시설 의존 비율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19세 이하는 100%, 20~24세 52.9%로 24세 이하 집단에서는 시설 입소 경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25~29세 45.5%로 30세 이상 40%로 연령층이 높은 집단에서는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시설 입소자 중 24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시설관련 정부통계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시설을 경험하지 않는 지역사회 미혼모들의 연령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8〉 연령별 출산당시 미혼모 시설거주 여부

임신 이후 가족 및 친지와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양육미혼모들이 많은데, 임신당시의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역을 비교하면서 미혼모가 혼외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을 이동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국의 지역이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권역 내에서의 세밀한 이동은 포착하지 못하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양육미혼모들의 지역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아래 표에 의하면 양육미혼모대 부분이 자신이 임신했던 지역, 다시 말하면 자신이 생활했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향을 보여 임신당시 거주지역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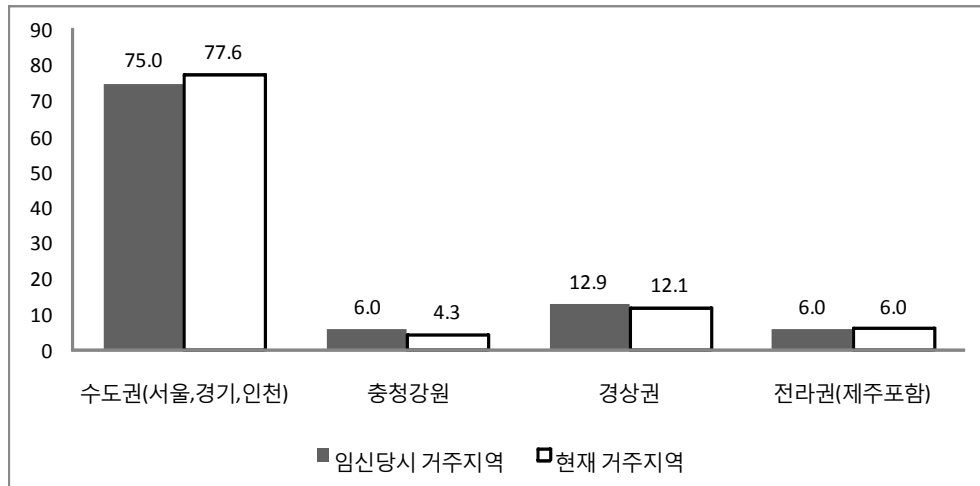
〈표 IV-4〉 조사대상 미혼모의 임신당시 거주지역과 현재의 거주지역

(단위: %, 명)

		임신당시 거주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강원	경상권	전라권 (제주포함)	전체
현재 거주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93.3(83)	2.2(2)	3.4(3)	1.1(1)	100.0(89)
	충청·강원	0.0(0)	100.0(5)	0.0(0)	0.0(0)	100.0(5)
	경상권	21.4(3)	0.0(0)	78.6(11)	0.0(0)	100.0(14)
	전라권(제주포함)	14.3(1)	0.0(0)	0.0(0)	85.7(6)	100.0(7)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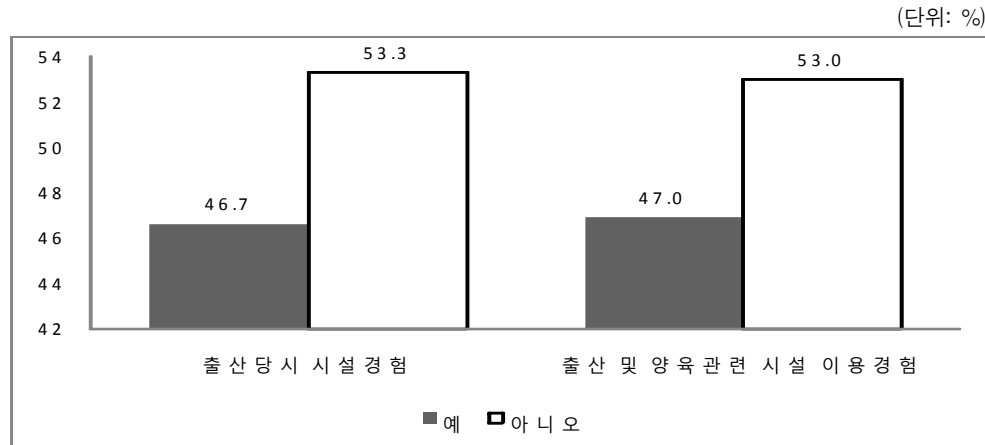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9〉 조사대상 미혼모의 임신당시 거주지역과 현재의 거주지역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혼모 중 임신당시 거주 지역을 벗어난 경우는 6.7%에 불과한데, 경상권에서 3.4%, 충청·강원권에서 2.2%, 전라권에서 1% 이동하여 수도권으로 이주했다. 경상권 거주자 중에서는 수도권에서 21.4%가 유입되었고 나머지는 임신당시에도 경상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다. 전라권 거주자 중에서는 수도권에서 14.3% 유입되었다. 권역별 이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임신당시 거주하던 권역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신당시 거주지역과 현재 거주지역을 비교하는 자료는 미혼모 시설 분포의 적합성을 검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자신의 생활활동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혼모자시설의 이용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인구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의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1. 출산당시 시설경험 응답자 사례수 1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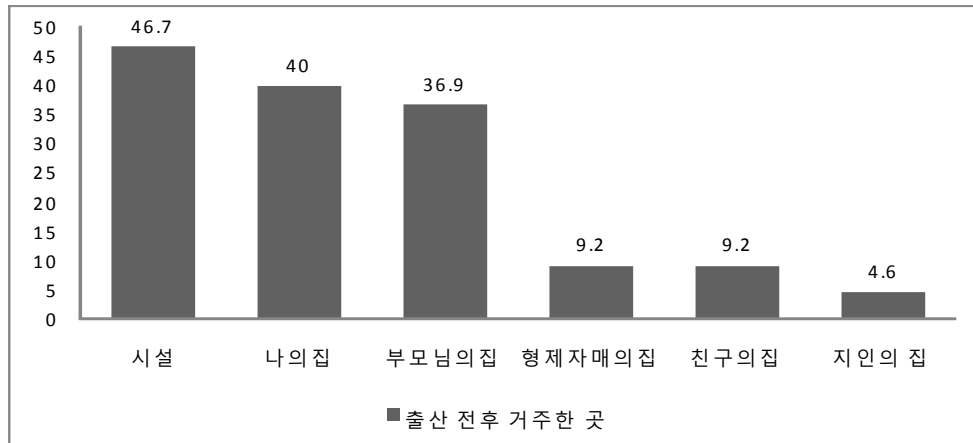
2. 출산 및 양육관련 시설이용 경험 응답자 사례수 115명.

〈그림 IV-10〉 출산 및 양육시설 이용경험의 유무

출산을 전후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혼모자시설 외에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나 모자보호시설(모자원) 같이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 이용 여부도 조사하였다. 출산당시 미혼모자시설 이용자 비율이나 양육관련 시설을 포함한 시설 이용 경험자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출산에 임박하여 미혼모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46.7%이고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47.0%로 큰 차이가 없다. 출산 당시 시설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모가 양육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나 모자보호시설(모자원) 입소나 이용과 관련된 정보가 미혼모시설 이용자에게 많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조사에서 시설 거주 양육미혼모 비율은 13.8%인데(그림 IV-12> 참조), 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로 나온 양육미혼모 사례가 전체 조사대상 중 3분의 1이 된다.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절반 이상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시설에 전혀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맨 왼쪽 막대는 출산전후 시설에 거주한 비율이 46.7%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조사대상자 53.3%는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출산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른쪽 5개의 막대그래프는 출산전후 시설 밖에서 출산한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의 분포를 보여준다. 오른쪽 5개 막대 그래프 퍼센트의 합이 100%이다.

〈그림 IV-11〉 출산 전후 거주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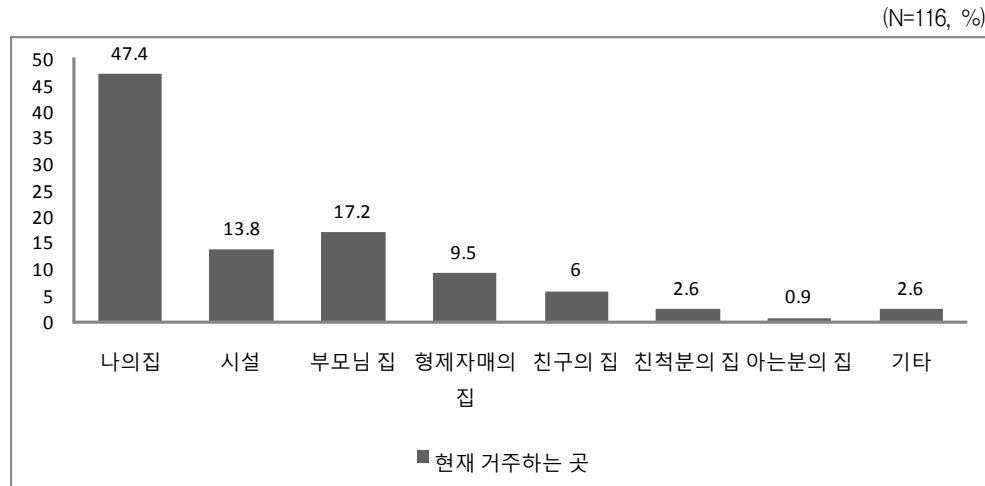
출산을 전후로 미혼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미혼모들이 어디에 기거하면서 출산을 하였는지 살펴보자. <그림 IV-11>은 양육미혼모들의 출산 전후 거주지 분포를 보여준다. 시설에 입소했던 미혼모는 응답자 105명 중 49명으로 46.7%에 해당한다. 한편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양육미혼모 65명을 100%로 했을 때, 이중 40%가 자신의 집, 36.9%가 부모님 집, 9.2%가 형제자매의 집에서 거주했다.

〈표 IV-5〉 현재 거주하는 곳

(단위: %, 명)

구분	나의집	시설	부모님 집	형제자매의 집	친구의 집	친척분의 집	아는분의 집	기타	합계
비율	47.4(55)	13.8(16)	17.2(20)	9.5(11)	6.0(7)	2.6(3)	0.9(1)	2.6(3)	100(116)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12〉 현재 거주하는 곳

출산당시 거주지에 추가하여 현재 아기를 키우면서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림 IV-12>에서 보면, 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은 13.8%로 출산전후 46.7%와 비교해 크게 감소하고 나의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47.4%로 나타난다. 부모님 집과 형제자매 집이 각각 17.2%, 9.5%로 양육미혼모의 26.7%인 4분의 1 정도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12.1%는 친구, 친지, 아는 사람의 집에 기거하고 있어 불편한 상황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양육미혼모의 소득수준

가. 소득수준

본 절에서는 2009년과 2010년 데이터를 통해서 양육미혼모 소득수준을 검토하려고 한다. 2010년 조사 대상 양육미혼모의 52.1%가 직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지만 나머지 47.9%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 양육미혼모들이 어떠한 종류의 소득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지 살펴보자. 수입원별로 소득 유무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개인별로 한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있을 수 있다. 기초생계비 소득이 있는 경우는 54.7%, 한부모가족지원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22.2%, 부모님/형제자매 도움 18.8%, 아가씨/아기아빠 가족 도움이 8.6%로 다양한 형태의 수입원을 갖고 있다.⁵⁰⁾ 직업활동, 기초생계비, 가족의 도움이 주요한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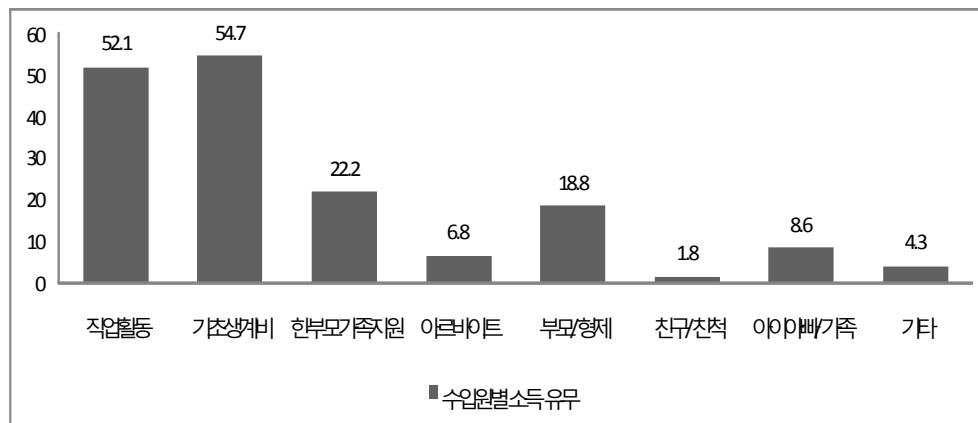
〈표 Ⅳ-6〉 수입원별 소득 유무

(단위: %, 명)

수입원	소득 유무
직업활동	52.1% (61명)
기초생계비	54.7 (64)
한부모가족지원	22.2 (26)
아르바이트	6.8 (8)
부모님/형제자매 도움	18.8 (22)
친구/친척 도움	1.8 (2)
아기아빠/아기아빠 가족의 도움	8.6 (10)
기타	4.3 (5)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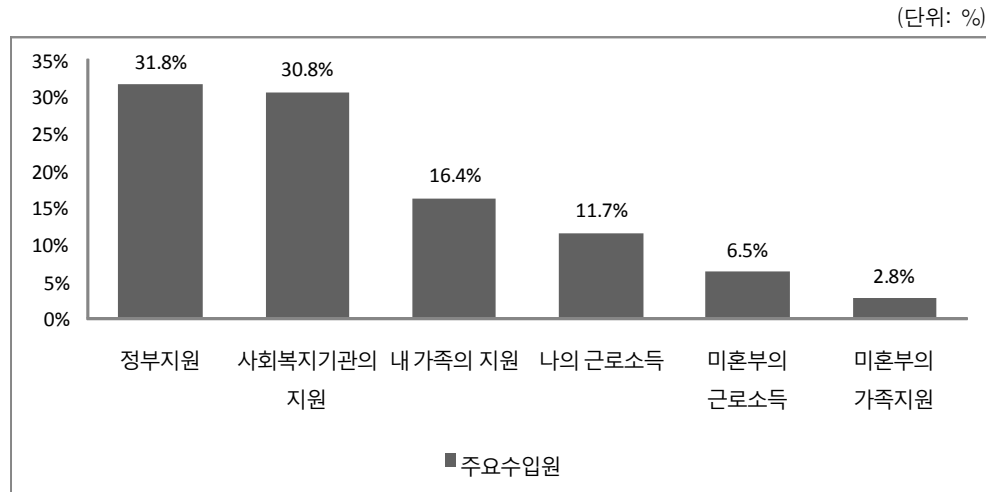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소득원이 여러 가지인 사람은 중복 응답함.

〈그림 Ⅳ-13〉 수입원별 소득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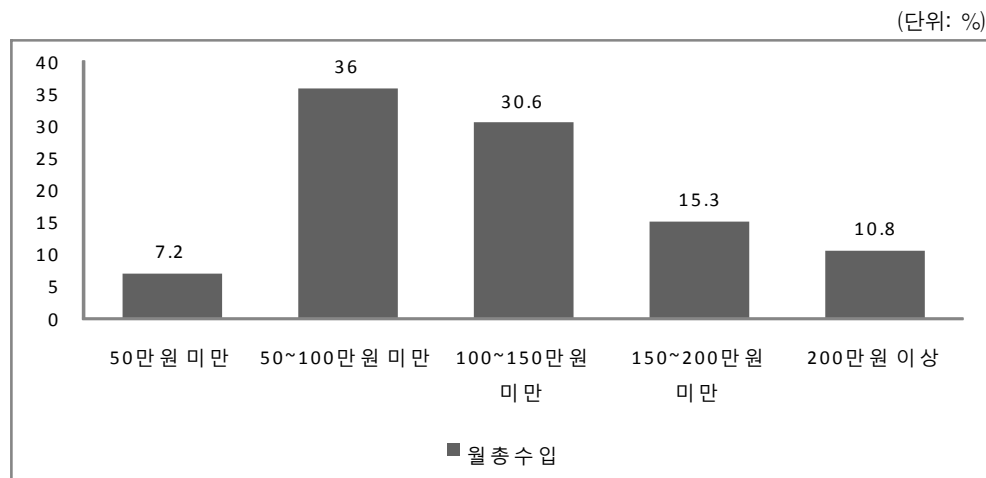
50) 직업활동과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 아르바이트와 비교하여 직업활동은 지속적이며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80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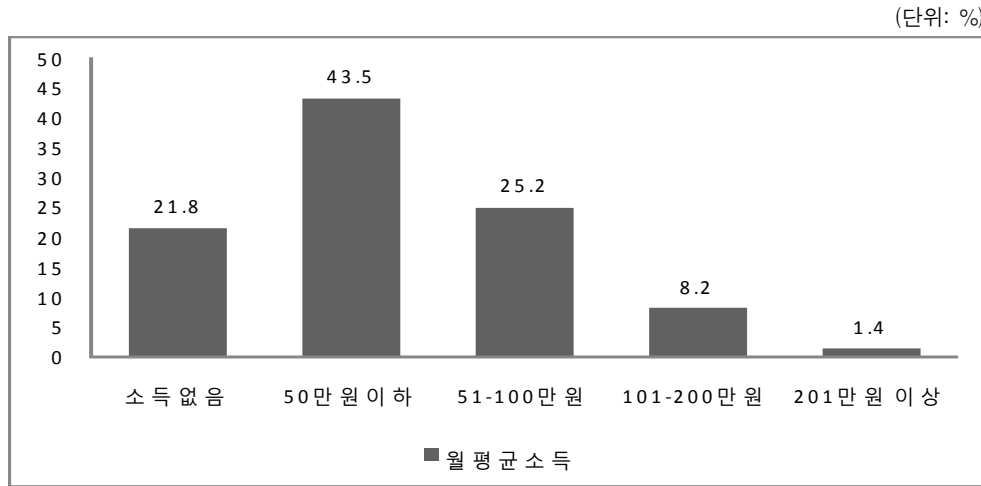
〈그림 IV-14〉 양육미혼모의 주요 수입원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응답자 사례수 111명.

〈그림 IV-15〉 2010년 양육미혼모 월평균 소득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그림 IV-16〉 2009년 양육미혼모의 월평균 소득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서 나타난 소득원 분포는 2010년 자료와 차이를 보이는데, 2010년 조사는 복수의 수입원을 고려하였지만 2009년 자료는 주요 수입원 한 가지를 조사하고 있다. 2009년 자료에서는 주요 수입원으로 정부의 지원이 31.8%, 사회복지기관 지원이 30.8%라고 응답하고 있다. 2009년 조사대상자 상당 비율이 미혼모자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기관 지원이라 함은 미혼모시설을 통한 정부의 기초생계비 등 여타 정부의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의 지원은 16.4%로 2010년의 18.8%와 유사한 수준이다. 두 데이터에서 수입원의 주요 차이는 근로소득에서 나타나는데, 2009년 자료에서는 근로소득이 11.7%이지만 2010년 자료에서는 직업활동 52.1%와 아르바이트 6.8%를 합한 58.9%로, 2010년 조사대상 양육미혼모들의 직업활동이 훨씬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차이는 자녀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0년 자료에 비해 2009년 자료의 자녀연령이 더 어리기 때문에 양육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림 IV-15>와 <그림 IV-16>에 나타난 2009년과 2010년 자료의 양육미혼모 소득분포를 살펴보자. 2009자료에 의하면 소득 없음이 21.8%, 50만원 이하가 43.5%로 50만원이하가 65.3%로 전체 3분의 2가 해당된다. 지역사회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2세 이하의 어린 자녀와 이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의 62.6%가 정부지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고, 84.6%가 미혼모 관련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2009년 조사대상 다수가 시설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50만원 이하의 적은 소득으로도 아기 양육이 가능한 것이다.

2010년 양육미혼모는 2009년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아, 50만원 미만이 7.2%로 2009년 65.3%에 비해 9분의 1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2009년 자료에서 51만원~100만원은 25.2%, 101만원 이상은 9.6%에 불과하지만, 2010년 자료에서는 50~100만원 미만은 36%, 100~150만원 30.6%, 150만원 이상 26.1%로 100만원 이상이 56.7%나 되어 2009년의 9.6%의 6배에 달한다. 2009년과 2010년 자료의 소득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두 데이터 양육미혼모의 거주유형, 직업활동 정도, 미혼모의 연령, 자녀 연령 분포 상의 차이가 소득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자료의 비교를 통해서 소득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2010년 자료 분석을 통해서 양육미혼모의 특성별로 소득 차이가 어떠한지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시설 이용 여부별로 소득분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아래 제시된 <표 IV-7>은 미혼모시설 이용 경험별 총수입 분포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가 경험이 없는 미혼모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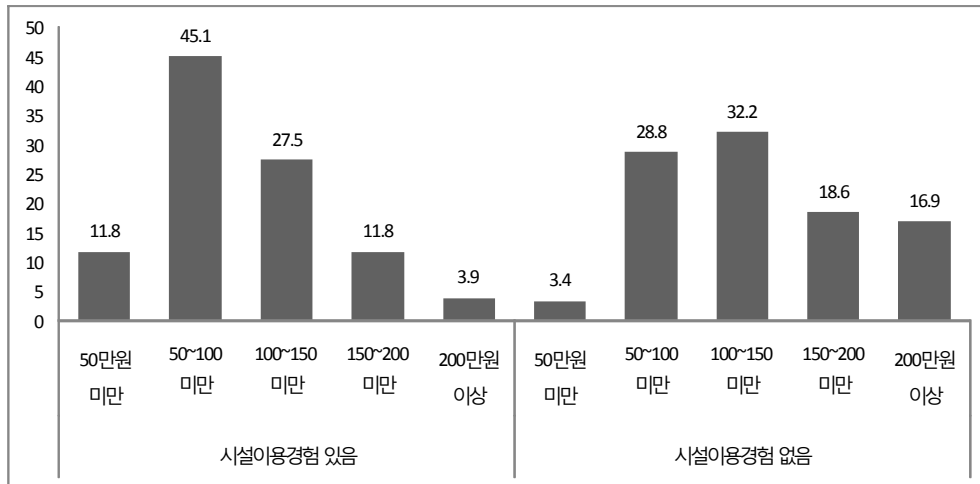
〈표 IV-7〉 시설이용경험별 총수입 분포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체
시설이용경험 유	11.8(6)	45.1(23)	27.5(14)	11.8(6)	3.90(2)	100(51)
시설이용경험 무	3.4(2)	28.8(17)	32.0(19)	18.6(11)	16.9(10)	100(59)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17〉 시설이용경험별 총수입 분포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시설 이용 경험자의 경우 56.9%이지만 시설 이용 경험 이 없는 경우는 32.2%에 불과하다. 반면 150만원 이상 소득자는 시설 이용 경험 자의 경우 15.7%이지만 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35.5%로 2배 이상에 달한 다. 이 같은 소득 분포 차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자료를 근거로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현재의 소득수준을 낮춘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시 설이용자와 시설 미이용자 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이 더 적합하다.

<표 IV-8>의 거주유형별로 소득분포를 보면, 시설이나 부모님 집에 의존하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다. 50만원 이하 소득자 비율이 시설, 부모님집, 나의집, 기 타를 보면 각각 56.3%, 25%, 5.5%, 4%로 시설과 부모님집의 비율이 높게 타나난 다. 100만원 미만 소득자 비율은 시설, 부모님집, 나의집, 기타가 각각 87.6%, 70%, 32.8%, 48%로 부모님집이나 시설에 있는 비율이 더 높다. 150만원 이상 소 득자는 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29.1%이지만, 부모님집 5%, 기타 12%이지만 시설에는 아무도 없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도 거주유형이 현재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양육미혼모의 사회경제적 역량에 따라 거주유형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표 IV-8〉 현재 거주유형별 총수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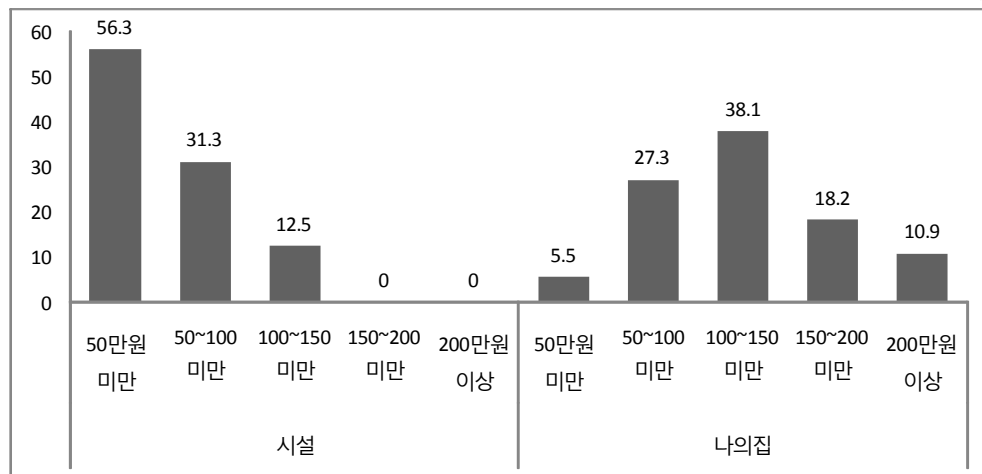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체
시설	56.3(9)	31.3(5)	12.5(2)	0(0)	0(0)	100(16)
나의집	5.5(3)	27.3(15)	38.1(21)	18.2(10)	10.9(6)	100(55)
부모님의 집	25(5)	45(9)	25(5)	5(1)	0(0)	100(20)
기타*	4(1)	44(11)	40(10)	8(2)	4(1)	100(25)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기타에는 '형제자매의 집', '친구의 집', '친척의 집', '아는 분의 집', '기타'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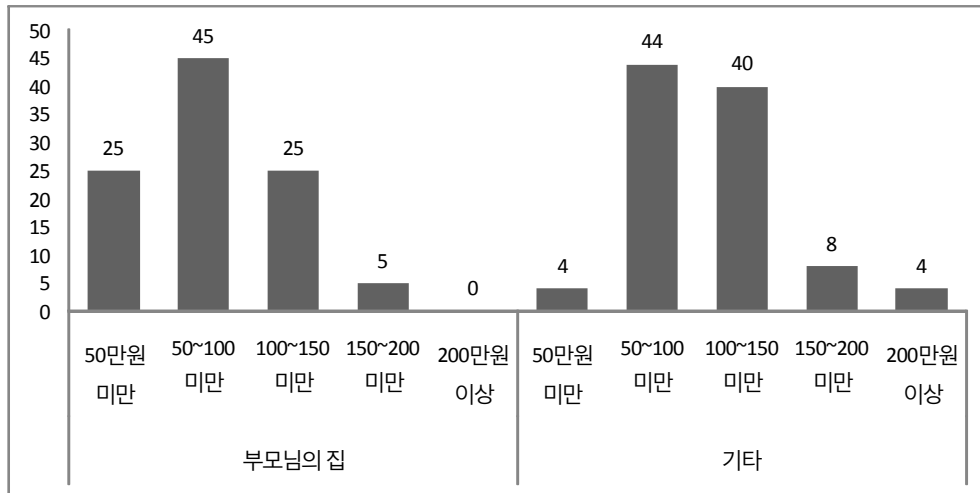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18〉 현재 거주유형별 총수입 분포 I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기타에는 '형제자매의 집', '친구의 집', '친척의 집', '아는 분의 집', '기타'가 포함됨.

〈그림 IV-19〉 현재 거주유형별 총수입 분포 II

어린자녀의 존재유무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변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녀연령별 소득 분포를 보기 위해 자녀연령을 0-18개월, 18-36개월, 36개월 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소득분포를 제시하였다.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낮는데, 0-18개월과 18-36개월 집단의 소득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36개월 이상 집단과의 차이는 상당하다.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36개월 이상은 13.3%에 불과하지만 0-18개월, 18-36개월은 각각 56%, 51.6%로 높게 나타났다. 만3세미만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의 경제활동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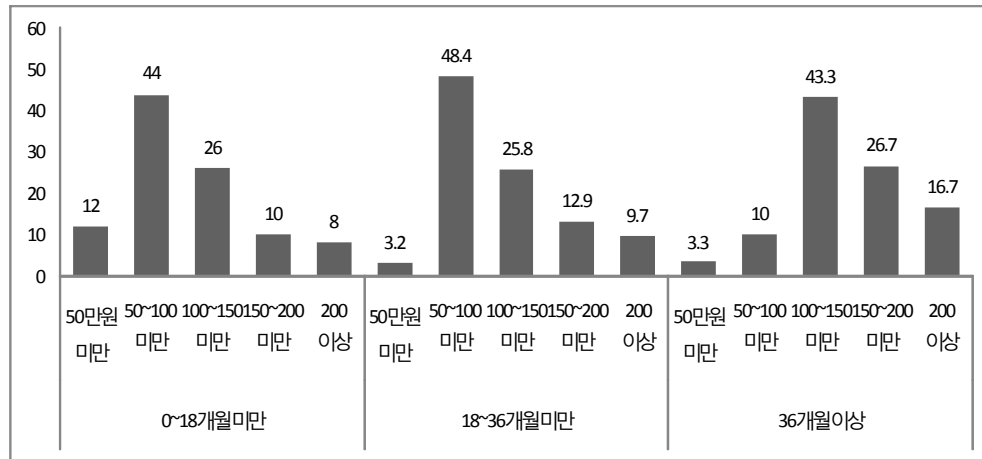
〈표 IV-9〉 자녀연령별 총수입 분포 그림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체
0~18개월 미만	12(6)	44(22)	26(13)	10(5)	8(4)	100(50)
18~36개월 미만	3.2(1)	48.4(15)	25.8(8)	12.9(4)	9.7(3)	100(31)
36개월 이상	3.3(1)	10(3)	43.3(13)	26.7(8)	16.7(5)	100(30)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20〉 자녀연령별 총수입 분포

나. 생활비 및 아기관련 비용 지출

본 연구에서는 양육미혼모 가족의 지출자료를 상세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응답자로 하여금 월세와 식비 등 일반생활비에 해당되는 구체적 항목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항목도 제시하면서 지난 1개월간 지출금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항목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항목에 지출이 있는 경우만을 선정하여 중간값(median)을 계산하였다.⁵¹⁾ 지출항목에 대한 중간값은 월세는 20만원, 식비는 10만원, 공과금 7.5만원 지출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비가 각각 6만원이고, 보험료 지출은 9.3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자녀양육관련

51) 지출에 있어서 중간값을 해석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일반생활비에는 월세, 식비, 교통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이 제시되고 있고 아기와 관련된 지출은 보육비, 교육비, 의료비, 의류, 장난감 등 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IV-10>에 제시된 것 같이, 각 항목별로 지출이 발생한 사례가 일부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 지출항목은 월세는 49명, 식비 90명이고 아기관련 비용의 경우도 보육료 45명, 의료비 43명의 경우에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아기와 함께 생활하며 지출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정부의 서비스, 가족이나 친지의 현물서비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간값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조사대상자 중 지출이 발생한 사람들에 근거한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일반화는 자제해야 한다. 개별 항목의 지출 발생이 선별적인 것에 비해서, 전체 총지출은 조사대상자 모두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지출은 보육료 20만원, 교육비 4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지출이 1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기 장난감, 아기옷, 자녀 의료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출 중간값의 산출과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아래의 주와 각주 51)에서 설명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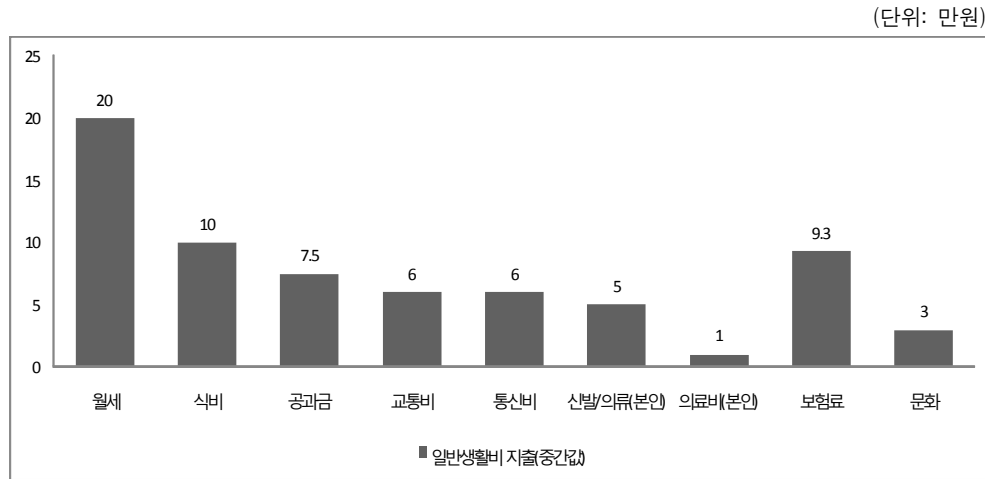
〈표 IV-10〉 일반생활비와 자녀관련 비용의 항목별 지출금액

(단위: 만원, 명)

일반생활비 지출			자녀관련비용 지출		
구분	지출액 중간값(만원)	빈도(명)	구분	지출액 중간값(만원)	빈도(명)
월세	20	49	보육료	20	45
식비	10	90	교육비	4	32
공과금	7.5	84	기저귀/분유	10	72
교통비	6	111	아기장난감	3	81
통신비	6	108	아기옷/신발	5	88
신발/의류(본인)	5	68	의료비(자녀)	2	43
의료비(본인)	1	26			
보험료	9.3	104			
문화	3	65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중간값을 계산할 때 해당 지출항목에 지출이 있는 경우만 고려하였다. 해당항목 지출이 없는 경우는 값이 0이거나 비해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출항목으로 제시된 것들은 홀로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해당이 되는 항목들로 선정되었는데도 비해당이 발생하는 것은 관련 항목이 정부서비스나 가족·친지의 현물지원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항목에 비용지출이 없는 경우 정부서비스나 가족·친지의 현물지원 때문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는 중간값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21〉 일반생활비 지출 항목별 지출비용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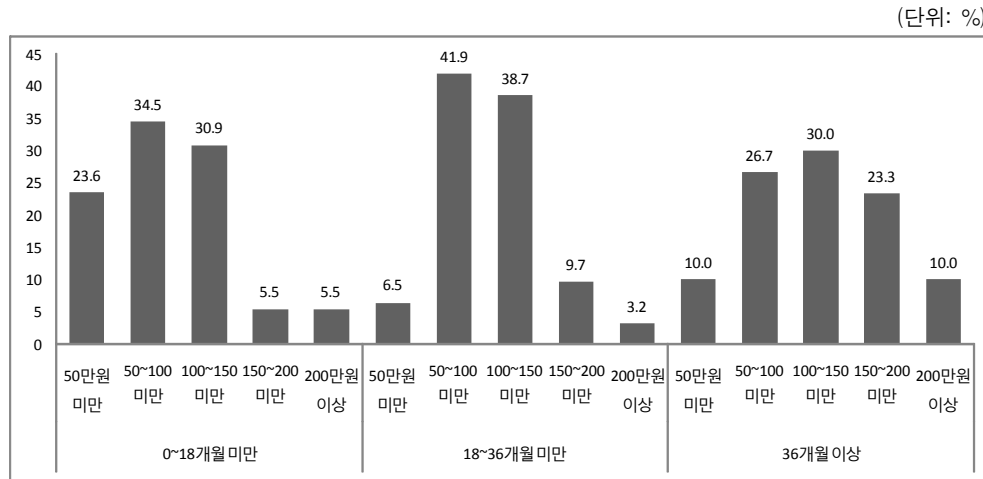
양육미혼모 가구의 지출은 자녀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녀연령을 0-18개월 미만, 18-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지난 1개월간의 총지출을 분석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규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0-18개월, 18-36개월, 36개월 이상 집단 각각 58.1%, 48.4%, 36.7%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반면, 150만원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0-18개월, 18-36개월, 36개월 이상 집단 각각에서 11%, 12.9%, 33.3%로 자녀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지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자녀 연령별 총지출 분포

(단위: %, 명)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합계
0~18개월 미만	23.6(13)	34.5(19)	30.9(17)	5.5(3)	5.5(3)	100(55)
18~36개월 미만	6.5(2)	41.9(13)	38.7(12)	9.7(3)	3.2(1)	100(31)
36개월 이상	10.0(3)	26.7(8)	30.0(9)	23.3(7)	10.0(3)	100(30)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응답자 사례수 116명.

〈그림 Ⅳ-22〉 자녀 연령별 총지출 분포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0-18개월 미만보다 36개월을 키우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8개월 미만보다 36개월 이상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의 소득이 더 높으며 이것이 지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표 Ⅳ-12〉 자녀 연령에 따른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

(단위: %, 명)

구분	기초생계비 수급여부		전체
	받음	받지 않음	
0-18개월 미만	58.9(33)	41.1(23)	100(56)
18-36개월 미만	58.1(18)	41.9(13)	100(31)
36개월 이상	43.3(13)	56.7(17)	100(30)
전체	54.7(64)	45.3(53)	100(117)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2010년 조사대상자의 54.7%가 기초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자녀연령별 기초생계비 수급여부를 보면, 자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급비율이 감소한다. 18개월 미만 집단의 수급비율이 58.9%인 반면 36개월 이상은 43.3%이다. 수급여부 뿐만 아니라

수급액도 자녀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18개월 미만의 수급액 중간값은 63만원, 18-36개월은 50만원, 36개월 이상은 32만원으로 자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자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기초생계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의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18개월 미만 집단의 소득수준이 36개월 이상보다 낮으며 소득수준은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기초생계수급자는 의료보호 1·2종, 보육료 등에서도 정부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다. 기초생계수급자라는 점은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보육 등 여타 부분에 있어서 정부서비스를 지원받아 지출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해도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3〉 자녀 연령에 따른 기초생계비 수급액 중간값

(단위: 만원)

구분	기초생계비 수급액 중간값
0-18개월 미만	63
18-36개월 미만	50
36개월 이상	32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표 IV-14〉 자녀 연령별 거주 유형

(단위: %, 명)

구분	나의 집	시설	부모님의 집	기타	전체
0-18개월 미만	30.9(17)	12.7(7)	30.9(17)	25.5(14)	100(55)
18-36개월 미만	51.6(16)	16.1(5)	6.5(2)	25.8(8)	100(31)
36개월 이상	73.3(22)	13.3(4)	3.3(1)	10(3)	100(30)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응답자 사례수 116명.

정부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움도 관련 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위의 <표 IV-14>는 자녀연령별 거주유형 분포를 보여주는데, 나의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36개월 이상 집단에서는 73.3%이지만 18개월 미만은 30.9%에 불과하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36개월 이상 집단은 3.3%에 불과하지만 18개월 미만은 30.9%에 달한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님과 함께 사는 비

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월세, 식비, 공과금, 아기관련 지출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18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집단의 총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근로소득과 정부 및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영아를 키우는 미혼모의 직업활동은 제한적이고,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자 비율이 높고,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소득이 낮지만 정부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현물 및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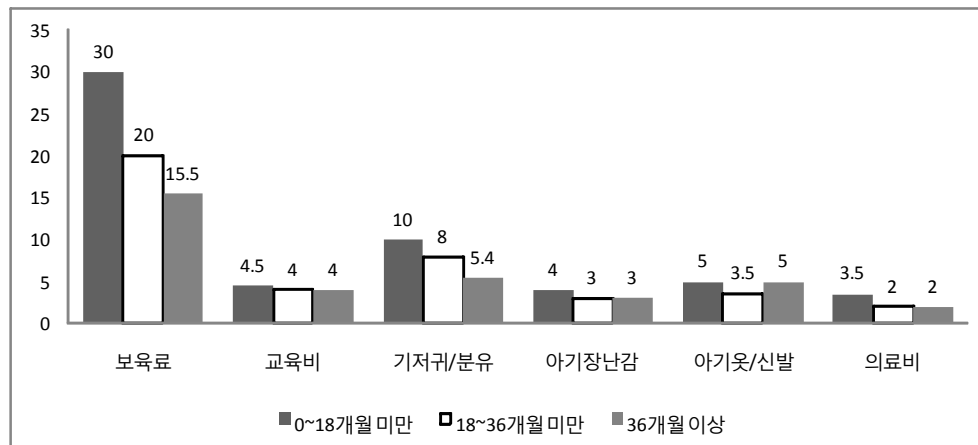
〈표 Ⅳ-15〉 자녀 연령별 자녀 관련 비용 지출액 중간값

(단위: 만원, 명)

아기연령		보육료	교육비 (학원/학습 지 등)	기저귀/ 분유	아기장난감	아기옷/ 신발	의료비 (병원진료/ 약값)
0~18개월 미만	사례수(명)	12	2	47	38	39	14
	중위값(만원)	30	4.5	10	4	5	3.5
18~36개 월 미만	사례수(명)	11	11	24	23	24	16
	중위값(만원)	20	4	8	3	3.5	2
36개월 이상	사례수(명)	22	19	1	20	25	13
	중위값(만원)	15.5	4	5.4	3	5	2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단위: 만원)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Ⅳ-23〉 자녀 연령별 양육관련 비용 지출액 중간값

정부서비스나 가족 등으로부터 현물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녀 연령별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는데, 18개월 미만 집단의 비용 지출이 많았다.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보육료와 기저귀/분유값이다. 보육료의 경우 0~18개월, 18~36개월, 36개월 이상 집단을 보면 각각 30만원, 20만원, 15.5만원으로 나타나 연령층이 높을수록 보육료가 감소하고 있다. 기저귀/분유 비용도 각 연령층별로 10만원, 8만원, 5.4만원으로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부담을 하는 경우 18개월 미만의 보육료 지출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아기용품, 의료비에 있어서도 18개월 미만의 지출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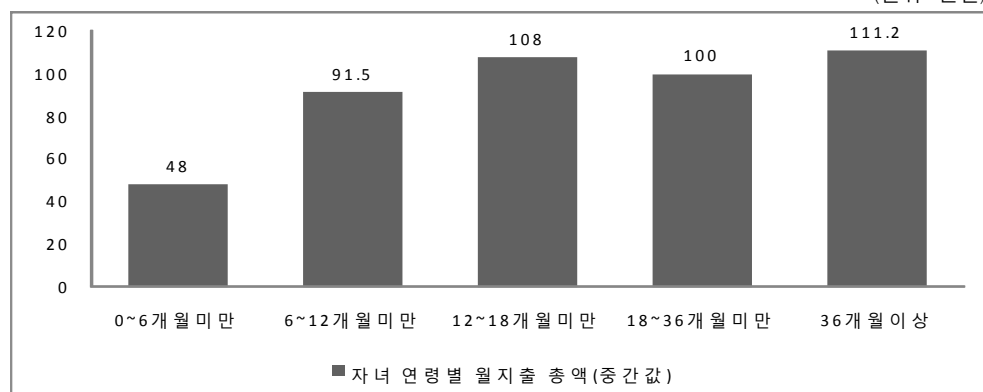
〈표 IV-16〉 자녀 연령별 월지출액 중간값

(단위: 만원, 명)

구분	월지출 총액(중간값)
0~6개월미만	48만원 (15명)
6~12개월미만	91.5 (24)
12~18개월미만	108 (16)
18~36개월미만	100 (31)
36개월이상	111.2 (30)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단위: 만원)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24〉 자녀 연령별 월지출액 중간값

자녀연령별로 지난달의 총지출 중간값 분포가 <표 IV-16>에 제시되었는데, 자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6개월미만 집단의 총지출 중간값이 48만원으로 여타 집단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6-12개월 미만의 지출수준은 91.5만원으로 12개월 이상 집단과 비교해 10-20여만원 낮은 수준이다. 12개월 이상 집단은 100만원 이상인데, 12-18개월 미만 108만원, 18-36개월 100만원, 36개월 이상 111만원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의 총지출이 낮은 것은 직업활동 제한, 시설 거주, 부모님 집 거주, 기초생계수급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있다.

자녀연령별 지출의 차이가 정부서비스나 가족의 현물지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출 중간값이 <표 IV-17>에 제시되었는데, 거주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설거주자 지출은 33.5만원이고 부모님집 거주자는 62.9만원이다. 자신의 집 거주자의 지출은 118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친구, 아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지출이 101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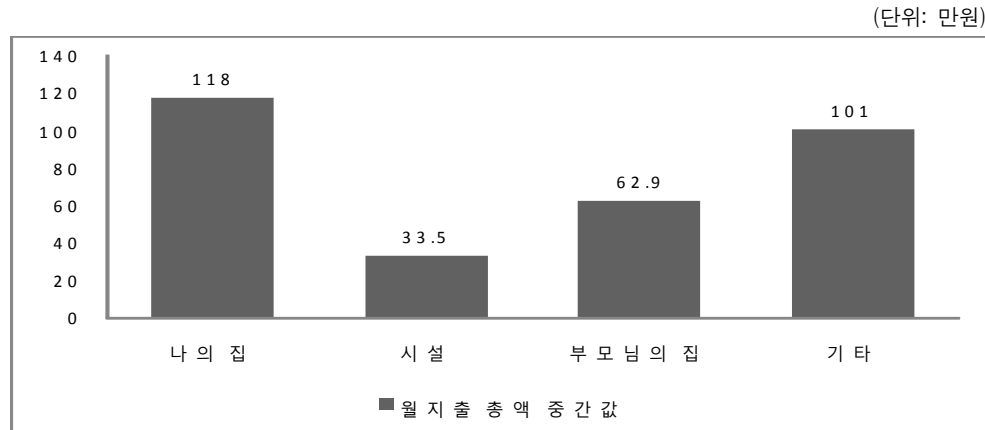
<표 IV-17> 현재 거주유형별 월지출액 중간값

(단위: 만원, 명)

구분	월지출 총액 중간값
나의 집	118(55)
시설	33.5(16)
부모님의 집	62.9(20)
기타	101(25)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기타에는 형제자매의 집, 친구의 집, 친척의 집, 아는 분의 집, 기타가 포함됨.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기타에는 형제자매의 집, 친구의 집, 친척의 집, 아는 분의 집, 기타가 포함됨.

〈그림 IV-25〉 현재 거주 유형별 월지출 총액 중간값

<표 IV-18>에는 기초생계수급 여부별 월 지출이 제시되어 있는데, 수급자의 경우 월 지출 중간값은 83만원이지만 비수급자는 114.5만원으로 나타나, 기초수급자의 월지출액이 낮다.

〈표 IV-18〉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별 월지출액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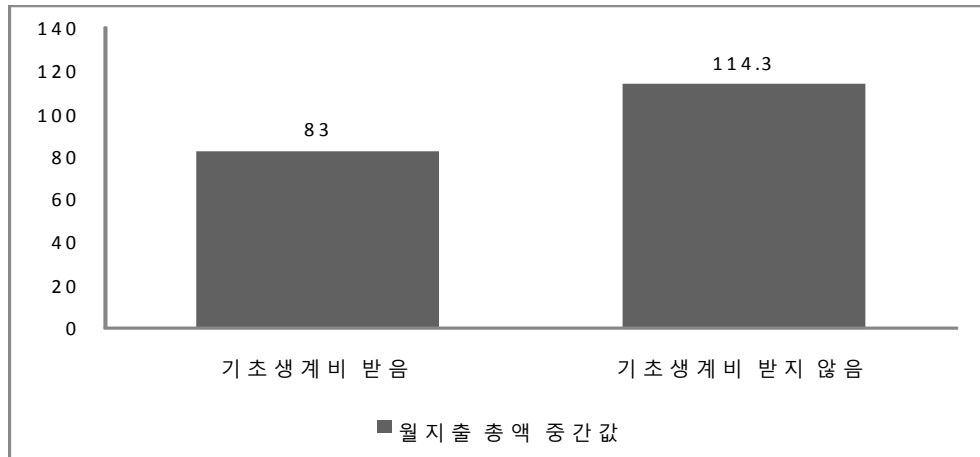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구분	월지출 총액 중간값
기초생계비 받음	83(64)
기초생계비 받지 않음	114.3(52)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응답자 사례수 116명.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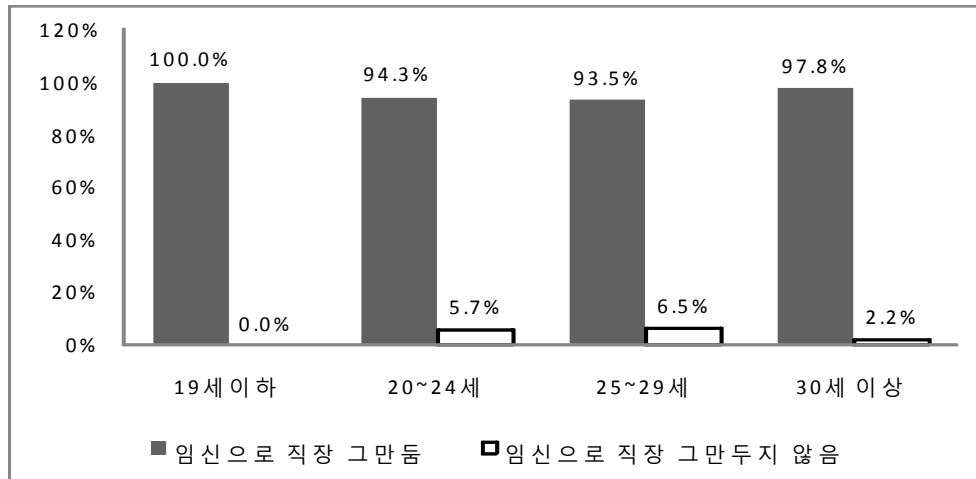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V-26〉 기초생계비 수급여부별 월지출액 중간값

4. 출산전후 경제활동 변화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임신, 출산, 양육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 자녀 양육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 여성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업무상 몰입정도가 낮은 직업으로 바꾸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양육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을 전후로 이들의 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본 조사대상 양육미혼모 대다수가 고졸과 대학교 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혼외임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 <그림 IV-27>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연령층에서 거의 대부분 양육미혼모가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법적으로 출산휴가 사용이 보장되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사퇴하거나 회사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둔다.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경우는 20-24세 5.7%, 25-29세 6.5%, 30세 이상 2.2%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양육미혼모의 자립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혼외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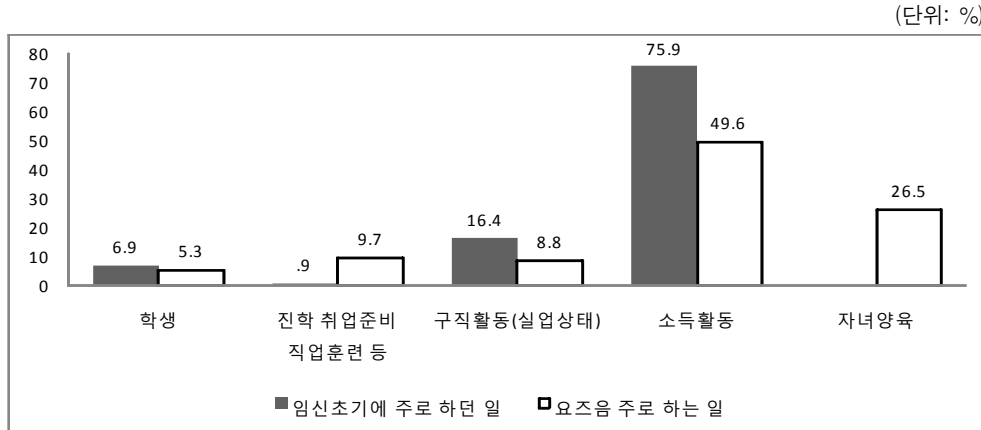
〈그림 IV-27〉 임신으로 인한 퇴사 여부

〈표 IV-19〉 임신초기 주로 하던 일 및 현재 주로 하는 일

(단위: %, 명)

	임신초기 주로 하던 일	요즈음 주로 하는 일
학생	6.9(8)	5.3(6)
진학 취업준비 직업훈련 등	0.9(1)	9.7(11)
구직활동(실업상태)	16.4(19)	8.8(10)
소득활동	75.9(88)	49.6(56)
자녀양육	-	26.5(30)
합계	100.0(116)	100.0(113)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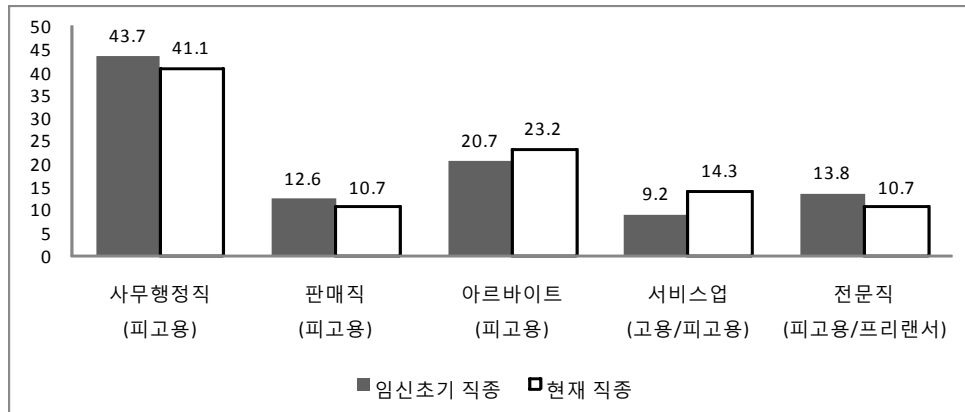
주: 임신 초기에 주로 하던일 응답자 사례수 116명. 요즈음 주로 하는 일 응답자 사례수 113명.

〈그림 IV-28〉 임신초기 주로 하던 일 및 현재 주로 하는 일

<표 IV-19>를 보면 양육미혼모 대다수가 임신초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득활동에 종사자는 비율이 75.9%이고, 구직자는 16.4%로 총 9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크게 감소한다. 양육미혼모 조사시점에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49.6%로 출산전 75.9%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조사대상자의 4분의 1 이상이 소득활동에서 퇴장한 것이다. 출산후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비율이 26.5%인데 이것은 소득활동에서 빠져 나온 비율 26.3%와 유사한데,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 IV-29>에 제시된 것 같이 소득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임신초기와 최근의 직업분포 변화를 조사했는데, 사무행정직과 전문직이 소폭 감소하고 아르바이트와 서비스업 종사자가 소폭 증가한 것 외에 출산을 전후로 한 직업적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임신 초기 직종 응답자 사례수 87명, 현재 직종 응답자 사례수 56명.

〈그림 IV-29〉 임신초기 직업분포 및 현재 직업분포

아래의 <표 IV-20>은 출산을 전후로 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출산 이후 근로소득 분포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직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는 경우가 출산 전에는 13.9%에 불과하였지만 출산 후에는 47.9%로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 소득자는 13.9%에서 6.8%로 감소한다. 자녀출산과 양육을 계기로 이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의 저하는 혼외임신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직장 내부의 부정적 시선과 강요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커리어가 단절되고 소득이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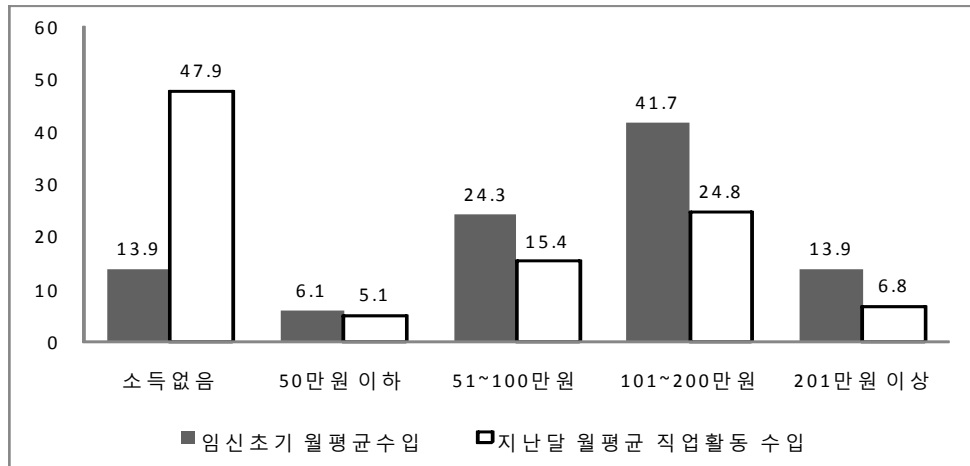
〈표 IV-20〉 임신초기 월평균 수입 및 지난달 직업활동 수입

(단위: %, 명)

	임신초기 월평균수입	지난달 월평균 직업활동 수입
소득없음	13.9(16)	47.9(56)
50만원 이하	6.1(7)	5.1(6)
51~100만원	24.3(28)	15.4(18)
101~200만원	41.7(48)	24.8(29)
201만원 이상	13.9(16)	6.8(8)
합계	100(115)	100(117)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1. 임신초기 월평균 수입 응답자 사례수 115명.

2. 임신초기 월평균 수입은 월급(세금공제 전), 용돈, 아르바이트 비용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함.

3. 지난달 월평균 직업활동 응답자 사례수 117명.

〈그림 IV-30〉 임신초기 수입 및 지난달 직업활동 수입

가. 혼외임신을 수용하지 않는 직장문화

집단인터뷰를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던 양육미혼모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법적으로는 혼외 임신부에게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들에게 배타적인 직장 분위기에 압도되어 많은 미혼 임신부들이 사직서를 낸다. 혼외임신이 알려질 경우 직장 내에서 일으킬 파장을 두려워하면서 고민한다. 직장을 다니는 것은 유일한 생계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에 맞설 자신이 없는 임신부는 출산휴가 요구도 해보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 혼외임신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법으로 보장된 근속이나 출산휴가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들은 기쁨은 잠시, 나는 결혼하지 않은 나의 임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생각해야 했다. 그것은 앞으로 맞닥뜨릴 수많은 난관에서 나와 아기를 지켜줄 힘이 될 것이다. 태교는 꿈도 못 꾸었다. 내 머릿속은 계산으로 바빴다. 사직서는 언제 내야 적당할까,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오래도록 생활에 도움이 될까.... 만약 결혼하지 않은 내가 만삭이 되도록 회사에 출퇴근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한다

면 어떻게 될까. 산전휴가 조항엔 결혼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임신 중의 여자조합원에게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모성은 결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일까, 미혼에 출산휴가를 쓴 선례는 없을까. 그러나 내겐 그럴 만한[출산휴가를 쓸] 용기가 없었다. 특별히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남다른 기술도 갖지 못한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밥줄’을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출산 후엔 혼자가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나는 남이 알아채기 전에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서러움을 주체할 수 없어 집으로 오는 좌석버스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민들레 2002, pp. 622-648).

직장에서 사람들의 온갖 눈초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전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을 나와 미혼모의 집에 입소하였습니다.... 회사 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중절을 했던 여직원이 일하는 도중 하열로 쓰러졌고, 그 소문으로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던 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34세 미혼모, 9세 딸 양육).

혼외임신에 대한 직장 구성원의 반응은 차가운 눈길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이며 공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부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날 제 싸이가 테러를 당한 거예요 애 아빠가 누군지. 직원들이 1층은 다 들어와 본 거예요.... 남자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저를 불러다놓고 ‘어디 뻔뻔하게 이렇게 하냐’이려고 저도 부른 배 안고 ‘나 임신했다, 임신부한테 지금 이러는 거 할 짓이 아니라는 거 모르냐’그렇게 응대하고.... 임신 4개월. 입덧도 하고. 제 [밑에] 직속 직원도 임신했는데, 그 사람은 축하받고, 임신부라고 과일도 챙겨주고. 쉬라고 하고. 저도 과일 먹고 싶은데, 저는 팀장이니까 열외가 없죠. 쉬 수도 없고. 이 여직원은 매일 빠졌는데. 제 스타일이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직원들 확인하고,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랬거든요(35세 미혼모, 27개월 딸 양육).

혼외임신에 부정적인 직장분위기는 임신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있거나 상사가 허용하여도 계속 직장 다니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법으로는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휴가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직장 분위기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4~5주때 임신사실을 알았고... 애 아빠도 ‘결혼하자’ 했는데, 10주째 자신의 상황이 공부도 하고 있고, 먼저 약혼식을 하고 아이는 나중에 낳자고 해서. 애 아빠가 결국 애를 원치 않는 거잖아요.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저희 집에서 입양, 사실 이런걸 전혀 모르고 낙태 권유했죠. ‘여자가 혼자 여자 키우는 거 어렵다’ 그런 말씀 엄마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사회경력도 있고, 30[살이] 넘었고. 저는 혼자 키우는 거 자신 있었어요....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초음파 검진비, 영양제, 저는 매뉴

얼대로 제가 다 했어요....가족들은 저한테 도와주지 않았고, 출산 막바지까지, 출산전 3~4일까지 회사 다녔어요. 회사에서 도마에 올랐죠.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결혼도 안한 사람이 팀장으로 이렇게 있어도 되나. 2007년도의 일[이쥬]. 회사가 나를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알았고, 회사 전무님께 가서 말했죠. ‘임신했다, 회사에 누가 된다면 그만 두겠다’ 그랬죠. 회사 전무님께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전무님이 ‘아니다, 나도 혼전임신 했다, 애기 아빠는 어딴냐?’ 그래서 ‘결혼나중에 하기로 했다’, ‘그럼 잘됐다’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는 이해를 해줬지만, 나중에 가서는 제가 산전후 휴가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결혼 안한 사람한테 이런 걸 줘도 되냐’는 뒷말을 들었죠. [법적으로 어떠한가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노동법까지 다 알아봤거든요. 결혼여부 상관없이 아이 낳으면 받을 수 있어요. 못받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다 알고 있었지만...참았죠.[논란이 됐던 것은 제가] 팀장자리에 계속 있는 게 문제가 됐던거죠(35세 미혼모, 27개월 딸 양육).

혼외임신에 대한 직장분위기는 중요한데,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회사의 경우 주위의 시선이 불편하기는 해도 출산휴가를 쓰고 계속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그니까 제가 영국계 금융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저희 지점에 있는 분들이 다 남자분들이нде, 제가 이제 미혼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긴가 민가는 했는데, 그니까 외국계 회사라서 프라이버시를 되게 존중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기가 개월 수 지나면 배가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막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고 이제 그럴 때라서 거의 티가 안 난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신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또 미스인데 임신했냐고 물어보면 되게 자기들도 민망하니까...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해주고, 제가 발설하지 않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슨 상황, 상황, 사연이 있나보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예. 제가 애기 낳기 하루 전까지 계속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럼 좀 배가 좀 나온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걸 목인을 해준 거네요?] 아니, 그니까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제가 막 실내인데도 코트 껴입고 막 이랬으니까, ‘재가 옷을 그냥 막 껴입고 다니나보다’ ‘살이 찼나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거죠(33세 미혼모, 17개월 딸 양육).

혼외임신에 대해 부정적인 직장의 분위기를 알기에 직장을 계속 다니려고 하는 미혼모는 차별을 피하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 혼외임신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대하기에, 결혼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직장문화가 형성된 경우에 임신한 상태에서도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출산휴가를 쓰기도 한다.

[그럼 그 회사에서는 애기 낳고 출산휴가도 쓸 수 있고 그랬었나요?] 출산휴가, 아, 그래서

제가 지점장님한테 사실은, 그니까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몸이 좀 추슬러진 다음에 결혼식은 할 거다. 그랬더니 지점장님이 총무팀에 다 얘기를 해가지구, 출산휴가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거의 못쓰고, 지점장님이 ‘집에서 놀면 뭐해, 놀지 말고 빨리 나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출산휴가 얼마나 쓰셨어요?] 그 때 한, 한 달 반 쓰고서 제가 다시 복직을... 아, 이제 거짓말을 했죠. 다녀야 되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할건데, 남편이 외국으로 출장 가있다’ 라고 말하고. ‘거기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결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혼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보통은 다른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임신과 관련해서 뭐, 쑥쑥쑥하거나 뭐 그래서 직장을 그냥 그만 두거나, 남들이 알아차릴 때쯤 해서 사표내고 나오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그러는데, 회사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니까 외국계 회사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됐죠(33세 미혼모, 17개월 딸 양육).

나. 구직과정에서의 차별

혼외임신으로 다니던 직장을 중단했던 경험도 미혼모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 미혼모라는 사실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력서나 가족관련 서류를 통해서 미혼모 가장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직업적 자질과 상관없이 채용이 기피된다.

이력서 호주란에 본인이라 기재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떨칠 수 없다. 내 이력서를 받아보는 쪽에서 미혼모인 여성호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품행이 방정치 않다거나 결격사유로 여기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나의 이력서는 널 이유가 없는 휴직조각일 뿐이다. 취직도 못하면서 내가 미혼모임을 광고하는 효과 밖에 없으니까(민들레 2002, pp. 622-648).

열심히 노력하여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미혼이라는 사실을 밝혀지면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한다. 미혼모라는 상황과 작업수행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과정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구직하는 미혼모를 혼인지위나 출산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이를 출산하고 직업학교를 다녔고, 바로 졸업 뒤에 전문대에 지원을 해서 1등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밤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온갖 부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니다.... 자격증도 다른 사람보다 두어 개를 더 취득했고, 취업에 운전면허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에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벌기위해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운전면허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고,

한편으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의 마지막을 앞두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성적도 내 자격증도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혼모라고 밝히는 순간의 표정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 시간만 아깝게 됐잖아’ 등 여러 가지 반응들이더군요. 결국 미혼모라고 밝히고선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34세 미혼모, 8세 딸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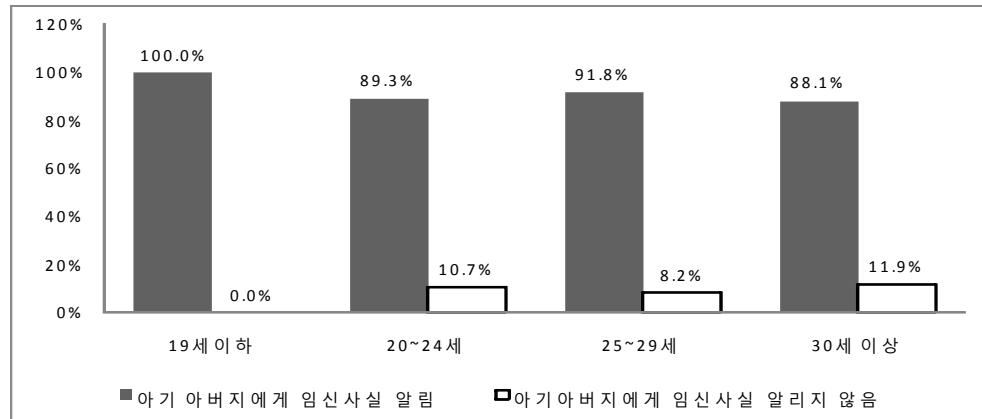
미혼모라는 이유 때문에 채용이 거절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미혼모들은 미혼모라는 사실을 감추는 방식으로 차별을 피하고 있다. 서류상 미혼모가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미혼 대신 사별이라고 말하며 면접에 응하기도 한다. 도덕적 판단에 근거하여 미혼으로 홀로 아기를 키우는 여성은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 회사의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근데 면접을 다 보는데, 근데 다 물어 보는 게, 서류를 다 내잖아요. 큰 회사들은 서류를 다 그걸 내야 되잖아요. 왜 얘기랑만 둘이 있냐. [무슨 서류를 내는 거죠? 가족관계에 대해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관계...큰 회사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뭐 가족관계까지 다 내니까...[지원할 때 그 서류를 내는 건가요?] 아니요. 다 합격하고 나서죠. 예. 이제 면접 갈 때, 면접에서 거기서 다 물어보는 게 제가 이제 그 질문이 하도 귀찮아서 이제는, 애 아빠 죽었다 그냥, 애 아빠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면접관들이 마치 아픈 데를 건드려서 자기들이 미안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33세 미혼모, 17개월 딸 양육).

5. 미혼부의 자녀양육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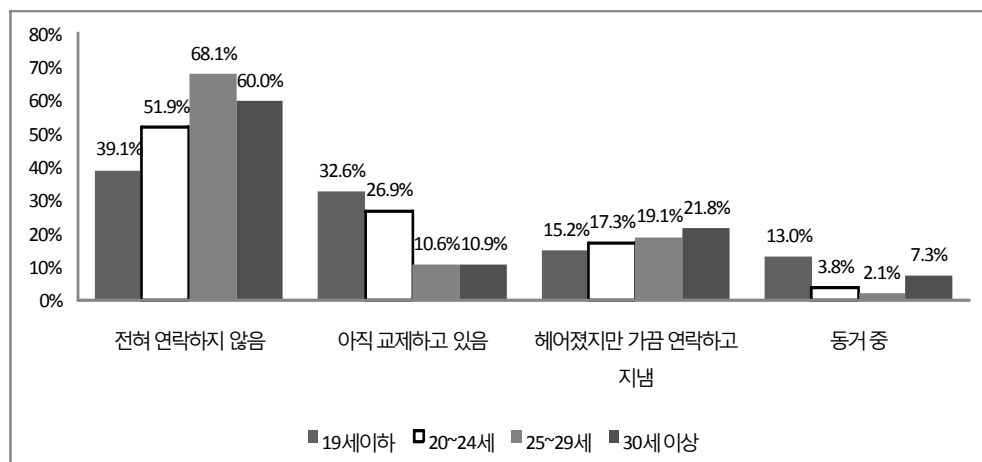
혼인상태이건 미혼상태이건 임신과 출산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임신과 출산을 전후로 임산부와 출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집중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을 주위의 냉담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추가하여 정서적·경제적 지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아기 아버지와 미혼모 원가족의 도움이 없는 것도 많은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이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부도 법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음 <그림 IV-31>에 의하면 미혼부 대다수는 임신사실을 알고 있다. 10대의 경우 미혼부가 모두 임신 사실을 알고 있고 20대 이상에서는 90% 정도의 미혼부가 알고 있다.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그림 IV-31〉 미혼부의 임신 인지 여부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그림 IV-32〉 미혼부와와의 관계

위의 <그림 IV-32>는 연령별로 미혼부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다. 전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은 10대 39.1%, 20-24세 51.9%, 25-29세 68.1%, 30세 이상 60%로 대체로 연령층이 높은 집단에서 비율이 높다. 아직 교제하고 있는 비율은 10대와 20대 초반에서 높게 나타나 각각 32.6%와 26.9%이고, 헤어졌지만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비율은 10대 15.2%, 20-24세 17.3%, 25-29세 19.1%, 30세

이상 21.8%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소폭 증가하고 있다. 동거중인 비율도 10대에서 높게 나타나 13%이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낮게 나타난다. 교제, 연락, 동거 등을 통해 미혼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혼모 자녀에 대해 동거하지 않는 아이의 아버지도 법적으로 양육책임이 있다. 자발적으로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미혼부에게 책임을 강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양육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연락을 단절하고 주소지를 옮겨 다녀 양육비 소송청구가 어렵다.

양육비소송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있다. 왜냐? 이 남자한테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송장을 보내야하는데, 이 남자들이, 내 자식이라고 안하고, 내 자식이라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주소지를 옮겨 다녀요. 집안이 아무리 부자임에도 본적 주소지를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법원은] 현주소를 저희 보고 알아보고 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숨어 다니는 걸 어떻게 찾아내요?(38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양육비 청구 소송은 개별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청구소송이나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절차가 일반인에게는 간단하지 않아서 준비과정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대면하면서 감정이 악화되기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친권, 양육비 합의보려고 알아보더니. 법무사도 수임료가 안 돼서 미혼모를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족법이나 이혼은 돈이 되니까 다 하려고 한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 가기도 어렵고, 법무사 연락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되고, 계속 통화중이고... 여성부 위민넷에 1:1로 며칠 동안 밤새 채팅을 해서 알아보았는데, ‘난 양육비 받아야겠다 소송준비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것도 절차가 개인이 하기 어려워서 다음 카페에 가봤더니, 어떤 엄마가 이걸 혼자 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애 아빠가 없고[사라지고], 엄마들은 이 과정을 준비하다가 본인이 스트레스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소송이 걸린 상황에서 법과 법이 해결해야 하는데 당사자 둘이 불도록 하도록 해 놓은 거죠. 감정의 골만 더 깊어져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35세 미혼모, 27개월 딸 양육).

양육비 청구는 비동거 미혼부에게 양육 책임을 요구하는 것인데, 양육비 문제를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미혼부의 부모로서의 권리도 부각이 된다. 양육비 논의 과정에서 미혼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혼모는 친권이나 양육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또 아빠로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애 아빠 쪽[부모님]에서는 애 존재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안되는 [양육비]돈이라도 받고 있으니까, 애 아빠가 또 ‘면접교섭권 요청하겠다’ 그래요. 나중에 내가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아예 [양육비]이걸 끊어버릴까 고민되는 거예요. [월1회 면접교섭권 요청하는건 해 줘야 해요] 남자[아이가빠] 어머니가 알게 되면 무슨 댓가를 치루고서라도 애를 데려가려고 할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기초수급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상황을 아빠가 알고 있잖아요(35세 미혼모, 27개월 딸 양육).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미혼모 입장에서는 아이 아빠의 양육비가 필요하지만, 양육비 제공으로 아이 양육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미혼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양육비 지급이라는 단순한 행위가 편견과 맞서서 싸우며 아이를 지키고 키워낸 자신의 고단한 역경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양육비를 주면서 애를 만나는 건 아빠로서 당연하고 저는 그걸 해줬어요. 아이를 위해서도.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양육권과 관련되니까, 4년 넘도록 저는 사회의 온갖 편견에 맞서 아이를 키워오고 있는데, 아빠는 대단한 아빠이고 양육비를 이만큼 줬고, 저는 늦게까지 일하지만 아빠가 키우면 애를 잘 돌볼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난 양육비를 줬다 그게 다고. 그게 참 치졸하다(37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임신 5~6개월에 애기 이름 짓고, 차근차근히 다 준비했거든요. 아이 아빠한테 ‘어떻게 할 꺼냐, 난 나올텐데’...아이 아빠는 그래요. 본인 의사표명은 분명히 했는데, ‘니가 선택한거 아니냐, 니가 행복하려고 선택한거다’. [엄마들이 양육비 받은 것에 부정적인데 왜 그러한가?].... 그걸로 그 사람[아이가빠] 행동에 면죄부를 준다. 그 사람이 양육비를 주면 자기는 할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쏟아지는 노력, 시간, 정성, 이게 양육비가 다가 아니니까. 엄마들이 처음엔 양육비로 소송 걸고 싸우는 사람들 많은데 키우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다. 그 하나[양육비]로 인해 이 사람을 홀가분하게 하지 않겠다(35세 미혼모, 27개월 딸 양육).

V

정부 복지서비스에 대한 양육미혼모의 경험

1. 정부의 복지급여	109
2. 사회복지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115
3.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117
4. 주거관련 서비스	122
5. 미혼모시설의 입양 연계 서비스	123
6. 미혼모관련 시설 서비스 전반	125

1. 정부의 복지급여

앞 장에서 양육미혼모의 출산전후 거주지, 출산전후 경제활동 변화, 소득과 지출 면에서 본 생활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혜정도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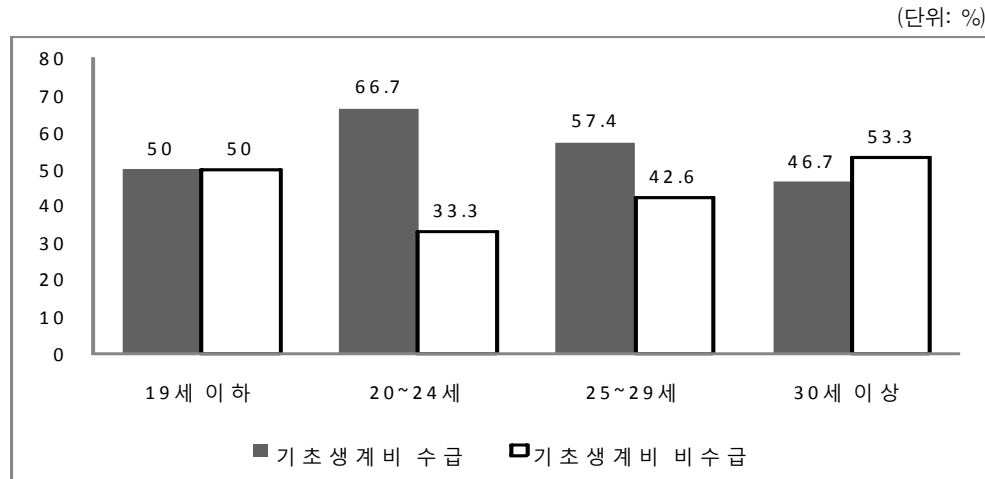
〈표 V-1〉 미혼모 연령별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

(단위: %, 명)

구분	기초생계비 수급	기초생계비 비수급	합 계
19세 이하	50(2)	50(2)	100(4)
20~24세	66.7(14)	33.3(7)	100(21)
25~29세	57.4(27)	42.6(20)	100(47)
30세 이상	46.7(21)	53.3(24)	100(45)
전체	54.7(64)	45.3(53)	100(117)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영유아기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에게 정부의 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녀 출산이후 경제활동 참여는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든다. 저소득 양육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중 하나가 기초생계비이다. <표 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0년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54.7%가 기초생계비를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24세의 수급비율이 가장 높아 66.7%이고, 25~29세 57.4%로 나타났다. 30대는 수급자 비율이 조금 더 낮아 46.7%로 나타났다. 기초생계비가 지역사회 미혼모의 양육지원에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V-1〉 미혼모 연령별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

자녀의 연령별로 기초생계수급 여부를 살펴보자. <표 V-2>는 자녀 연령별 기초생계수급 여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녀의 연령과 수급여부 간에 관련이 있다. 36개월 미만에서는 수급 비율이 58% 정도이지만 36개월 이상에서는 43.3%이다.

〈표 V-2〉 자녀 연령에 따른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

(단위: %, 명)

구분	기초생계비 수급여부		전체
	받음	받지 않음	
0-18개월 미만	58.9(33)	41.1(23)	100(56)
18-36개월 미만	58.1(18)	41.9(13)	100(31)
36개월 이상	43.3(13)	56.7(17)	100(30)
전체	54.7(64)	45.3(53)	100(117)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급여액별 분포를 보면 21-40만원에 31.3%, 61-80만원에 46.9%가 분포하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40.7%가 4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어, 기초생계 수급이 외의 근로 등 다른 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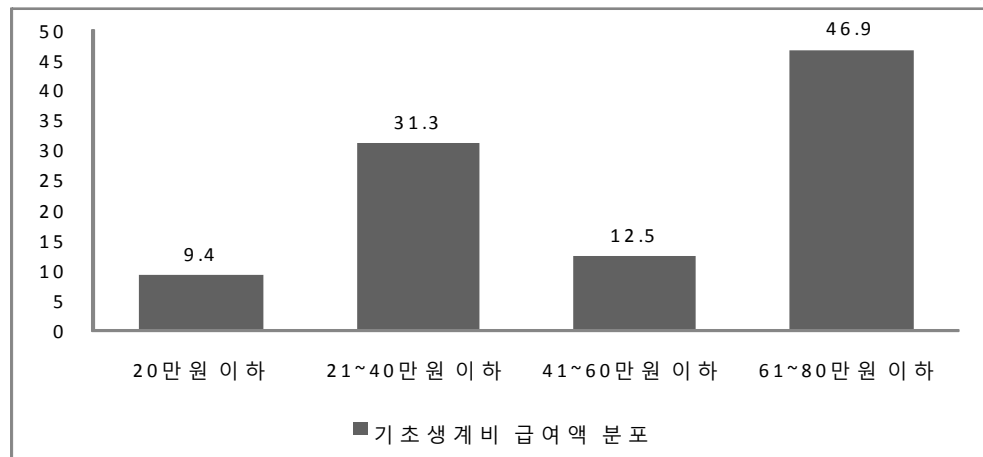
〈표 V-3〉 기초생계비 급여액 분포

(단위: %, 명)

구분	분포
20만원 이하	9.4(6)
21~40만원 이하	31.3(20)
41~60만원 이하	12.5(8)
61~80만원 이하	46.9(30)
합계	10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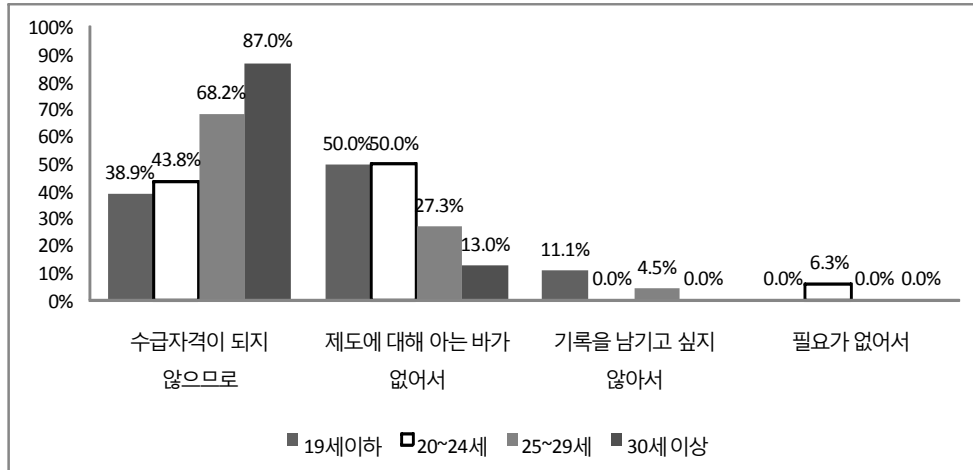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단위: %)



자료: 2010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V-2〉 기초생계비 급여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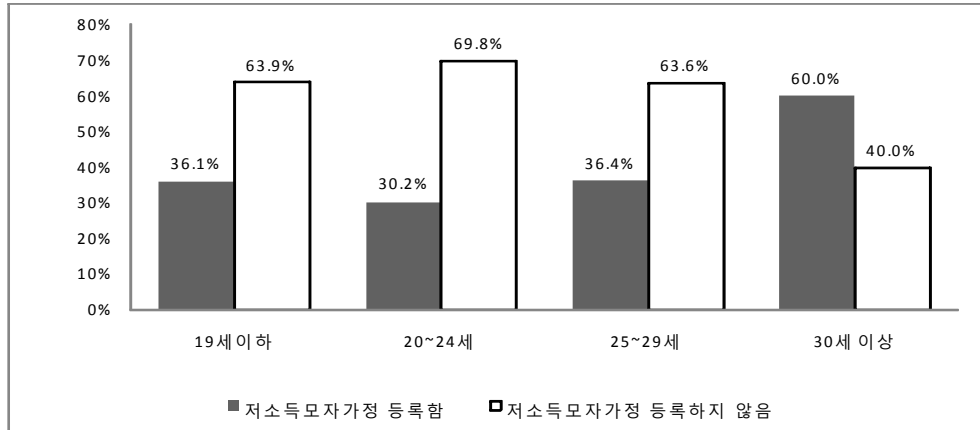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V-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등록 사유

기초생계수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미혼모도 있는데, 2009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기초생계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유 중 62%가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서, 32.9%는 제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김혜영 외, 2009).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는 미혼모의 부양자인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계급여 수혜 자격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미혼모의 3분의 1 정도는 기초생계 수급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2009년도 같은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비율은 미혼모의 41.1%인데, 연령별 등록비율은 3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60%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지 않는 이유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서가 42.4%,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가 50.8%로 나타났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정부의 관련 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V-4〉 저소득모자가정 등록 여부

양육미혼모가 기초생계비 등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주요통로는 동사무소이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관련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는 일은 드물다. 기초생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혹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하여 복지급여가 절실한데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기초적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지 못하면 미혼모는 극도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아기를 양육하게 된다.

노력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현재가지고 있는 수급제도는 미혼 엄마에게는 참 적용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원가족과의 단절에 있지만 재산상이나 법적으로 가족과 분리되지 않아 원가족의 재산상황이 현재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받으며, ‘젊은 나이에 뭘 못하냐’라고 하지만 취업할 때의 미혼모라는 이유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엄마에게는 말 못할 속병이 되어가기도 합니다(34세 미혼모, 8세 딸 양육).

[기초생계수급 받으셨나요?] 울산 [미혼모자시설]에서는 못받았고. 부모님 재산을 보는데, 제가 그 전부터 [부모님과] 연락을 안했거든요. 연락은 안해도 재산은 같이 봐야하니까 [제가 부모님 재산조회] 안된다고 울산에서는.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많이 나온 거죠. ‘우리가 빚도 있고 돈이 없다’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을 안한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알아보려면 집에다 연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연락하기 싫으니까 ‘제가 안받겠다’고 했어요. [서울에서는 받고 있나요?] 지금 모자원에서 받았어요. 시설이니까. 시설에서. [시설에 있으면, 부모님 조회는 안한다 이거죠?] 네.(23세 미혼모, 25개월 아들 양육).

[어떻게 서울에서는 가능하죠?] 시설에 들어가면 수급권은 자동으로 [주어져요]. 시설에 있어도 조회는 하는데, ‘부모님 도움을 못받으니까 시설에 있는 거다’라고 사회복지사가 판단하는 거죠. 수급권 신청하면, 부모님 모르고 있으니까, 복지사한테 얘기해요 ‘난 알리고 싶지 않다’ 했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간대요. 사회복지사는 연락 안하겠다고 하는데, 연락이 가요. 나중에 서류상으로 [부모님집에] 뭐가 갔다고. 동사무소에 내가 동의서만 쓰면 내 [부모님] 주소를 볼 수 있거든요(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기초수급 신청한 적 없나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가 힘드셨죠.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엄마도 몸이 안좋은 상태였는데 바로 일하셔야 하고. 그런데 제가 혼자 키워야 하니까. 애기는 지금 19개월. 산후조리도 해야하는데, 산후조리도 보건소에서 지원되더라구요. 출산전에 출산예정일 얘기하고 신청하면 2~3주간 해줘요. 아침부터 5시까지. 성북구. 지원자격이 있을거 아녜요. 신청해서 통과되면 해줘요. [직접 신청하셨나요?] 네. 임신했을때 받을 수 있는 거,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신청인 소득을 보나요?] 없어야 돼요. 직계[의 소득도]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29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중간의 집[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자리 없어서 못 갔어요. 2개월 때 [미혼모 시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애기가 태어나고 많이 옮겨 다녔어요. 아는 언니 집에 몇 개월,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네. 제가 둘째 출산하기 위해서 시설에 가고 싶었는데, 첫 애를 맡길 데도 없고 [해서] 못들어갔어요. 중간의 집에도 못가요. 지역에서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자력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2개월에 미혼모시설에서 나왔으면 둘째까지 몇 번을 옮겨졌네요?] 5번. 저도 불편하고, 애기가 많이 불안하게 [지냈어요]. 기초수급을 그때 몰랐어요.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인 집에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니고. [어린이집 비용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기초수급은 안되고, 저소득층 모자가정이라고해서 어린이집은 지원이 된다 하더라구요. 어린이 집은 100%지원 [받았어요]. [몇 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맡기셨나요?] 3개월 지나서. 엄마가 언니들 몰래 얼마씩 주시고. 기저귀나 [그런 것 도와주시고]. [지인들 집에 살면서 아이는 맡기고 돈 벌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애가 돌 된 다음에 취직을 했어요. [거처를 마련했나요?] 거처는 [아는 분이] 빌라가 하나 비어 있으니 살라고 해서. [인맥이 넓으시네요. 보육료를 지원해주니까 엄마가 움직일 수가 있네요. 거처는 없어도. 보육료지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꼭 미혼모만 받는 게 아니고. [보육료 지원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네 (31세 미혼모, 5세 아들, 3세 딸 양육).

기초생계수급과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은 수급자격이 있는 미혼모들이 관련 정보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제가 막 출생신고하고, 당황하고 막 이러니까, 뭐, 동사무소 직원이 이런 경우 많다고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기초생계수급에 대해서는] 애기 엄마들이 알려주더라구요. 수급 신청 하라고, 둘 지나서 전 신청했거든요. 이번 1월 달, 1월 달에. 근데 저는 한부모 될 줄 알고... 수급자 안된대요, 저는요. 안될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왜요?] 부모님 집 있다고,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직원한테 말했거든요. 한부모 신청할 거라고 하니까, 오히려 막 수급자[신청]하라고...저는 또 부모님 집에 산다고, 부모님 도움을 받는다 해가지고, 35만원 받고 있어요. [35만원... 의료보호는 어떻게 되요?] 그거 원래 1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 다닌다고, 조건부 됐다고, 기초에서 조건부 됐다고 2종으로 바뀌었어요. 2종. 그러면서 2종으로 바뀌었어요. 조건부라고. 학원 다닌다고...제가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용하는데, 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거요. 네. 그게 계좌로 학원 등록하고... 기초 수급자는 안되고, 조건부 수급자여야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조건부로 바뀌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들으세요?] 지금 미용 쪽 배우고 있어요. 네일아트니까. [계좌제... 그럼 학원은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어요?] 9개월 정도. 1년 안에 취업해야하기 때문에. 그전에 까지는 다닐 수 있어요. 1년까지 다닐 수 있어요. [교육비는 무료인가요?] 아뇨. 000[미혼모시설]에서 상담해서, 교육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000에서 취업상담패키지라고 있으니깐... 노동부 쪽에서 하는 건데, 20%를, 20%는 본인 부담이잖아요. 그 자부담을 000에서 해주는 거예요(32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2. 사회복지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우리사회에도 저소득 양육미혼모를 지원하는 기초적인 복지체계는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양육미혼모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다. 일선에서 사회복지 전달 업무를 맡고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수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들은 기초적인 정부의 복지급여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사무소 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제가 000[미혼모시설] 중간의 집[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있었어요. 거기서 4개월쯤 있다가 흥제동 옆 흥은동으로 왔는데, 시설에 있으면 수급자유지를 해주는데, 독립해서 동사무소 갔어요. ‘수급자격 유지해달라’고 하려고 동사무소 갔는데. 제가 000 시설에 있다가...쪽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000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 다 설명해서 수급자 유지는 해줬는데, 사회복지사[사회복지 담당공무원]가 또 바뀌었는데, 모자원을 모른다...흥은동이면 00모자원을 신청했더니 모자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날 신청을 못했어요. 신청을 3월에 했는데 6월에 성북구청으로 넘어갔어요. 요즘은 모른다니까 말이 안되는데, 모자원 신청을 갔더니 두꺼운 책을 뒤지면서 이사람 저사람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모자원 입소하려면 동사무소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동사무소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하는지를

모른다. ... ‘나는 양식을 가지러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자원이라는 곳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서류를 줘야 하는지를 알아보래요. 그래서 ‘여기는 미혼모 안 사느냐’ 물어보면, ‘한부모 가정은 사는데 이렇게 와서 물어본 사람[미혼모는] 없다’ 그래요(38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법적으로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기가 싫어서 준비를 했어요 출생신고양식을 미리 써보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아기 이름이 정해지고, 출생신고서 작성하고 바로 양수 터졌어요. 제가 기초수급을 신청한 날이 상담 받은 날이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대부분 그 다음날 구청에 접수를 하는데, 그 하루 사이로 제가 기초수급자가 받는 출산비 지원을 못받게 됐다. 기초수급자가 출산하면 50만원 출산급여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받은거지... 사회복지과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 거죠. 출산예정보다 3주 일찍 출산한 경우라(28세 미혼모, 12개월 아들 양육).

정부서비스 전달에 문제가 많은 것에 추가하여 양육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초하여 이들을 모욕적으로 대하기도 한다. 미혼모의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존중하는 태도는 없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도 있다.

자신감 있게 아이 키웠는데, 동사무소에서 미혼모라 재수없다는 말도 들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는 아니었고, 제가 우리 집에 엄마[미혼모]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사회복지사[사회복지 담당공무원]는 좀 세게 나가면 눈치를 뵈.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서류 떼 주는 사람[공무원]이 ‘미혼모보호시설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동사무소가면 수급자는 서류 떼는 비용이 무료인데, 미리 수급자는 말을 해야 해요...근데 제가 그날 많이 떼서 1600원 나왔어요..전 미리 말했어야 되는 걸 몰라서 다 떼고 나서 수급자라고 했더니 ‘수급자면 미리 말을 하셨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줬어요. 근데 뒤돌아서 가는데, ‘아니 수급자인게 무슨 자랑이야? 아침부터 재수없이.’ 아, 그 엄마가 모욕을 당하고 애를 입양보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저 같은 경우는 미혼모가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을 원해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은 시설로 가란 식으로 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은 미혼모를 위한 것이 아니란 식으로 말하더군요. 누구마음대로 기초생활수급은 미혼모를 위한 것이 아니니 시설로 가라는것인지. 결국 아주 적은 돈이 나오더군요 [얼마요?]. 왜 그런 금액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하였더니 전화로 더 이상 묻기 어렵게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인터넷으로 민원으로 문의하였더니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사람[저를]을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며, 바쁘니 금액 조정되는데 두달 정도 걸릴거라 하였어요. 결국 제가 기분이 나쁘다며 사과를 요구하였죠(26세 미혼모, 12개월 딸 양육).⁵²⁾

52) 이 26세 미혼모는 해당 구청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올려 복지급여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이후 구청 직원이 민원을 올린 것에 대해 항의조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다음의 내용은 민원을 올린 과

[동사무소에 수급신청 하러 갔어요?] 예. 한부모 신청하러 갔는데, 기초 수급자 신청하라고. 네 그 담당자는 좀 착한거 같아요. 다른 엄마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미혼모냐고]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서류만 주고, 아는 어머니 중에... 그 동네 수급자가 많은 거예요. 수급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길인가? 그쪽인데 신길동인가? 되게 막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당연히 수급 신청하러 왔으려니 하고 불친절하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32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성북동 동사무소가 친절하다는 거죠?] 그게 다 수급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동사무소 직원을 잘 만나야 해 정말이야. 그것도 자기 복이지 그럼(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3.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가. 아동양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

2000년 초반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양육비 부담으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2000년 초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한 미혼모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2000

정과 이후의 이야기인데, 해당 미혼모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내용이다.

2009년 11월 19일부터 제가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도와주고자 하였고, 구청직원이 가정방문을 합니다. 00구청입니다. 2009년 11월2일에 신청하였고 그 주간에 심사차 가정방문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돈은 기초생활 수급비였고요, 있지도 않은 소득액을 측정해서[있다고 추정하여] 금액을 줄여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이었습니다. 2009년11월30일 주거급여 88,720 생계급여 230,890. 2009년12월18일 주거급여 88,720 생계급여 340,890. 12월 수급비 확인하고 전화문의 하였더니 주민센터 직원이 그 금액으로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바쁜 것 같아서 더 궁금했는데 물어 보지도 못하고 끊고 나서 다시 인터넷으로 민원 올렸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명시된 수급급여액과 다른 것 같아서 문의 드려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11월 19일에서 11월30일까지의 금액이 11월30일에 지급된 것이었고 12월 18일 지급된 금액은 12월 한달[동안]의 금액[수급비]이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 후 민원에 대해서 구청답변을 받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청답변: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수별 현금급여 기준액에서 가구별 소득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귀하께서는 2009.11.19자로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었습니다. 조사당시 귀하의 소득인정액이 265,009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계주거급여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귀하의 소득을 공제하고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생계급여 조정 및 변경이 있을 계획입니다. 유선으로 문의 시 충분한 안내를 전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구청으로부터 답변이 도착하고] 며칠 후에 구청직원 000씨가 전화를 제게 걸어서 ‘그런 글 올리면 어쩌냐’는 식으로 자기네도 ‘자꾸 이러면 곤란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바쁘니 금액 조정되는데 두 달 정도 걸릴 거라 하였어요. 결국 제가 기분이 나쁘다며 사과를 요구하였죠(26세 미혼모, 12개월 딸 양육).

년 초반 이후 저출산의 영향으로 정부의 양육서비스 지원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2000 초반과 비교해 정부의 양육비 지원과 서비스 내용은 크게 개선되었다.⁵³⁾

취업 후에 아이의 양육문제가 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언제나 야근을 원했고 번번이 아이 문제로 여기저기 사정해야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엄마께 울고 불고 매달려서 몇 달간 아이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셔서 아이문제에서 한시름 놓여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를 다른 곳으로 맡기는 것은 모자원의 규칙에 어긋난 것이라 모자원 퇴소감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34세 미혼모, 9세 딸 양육).

[19개월된 딸] 지금은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 돌 지나고부터 어린이집 [다녔어요]. [아기를 직접 볼 때는] 그 전에는 10만원씩 나와요, 양육수당으로, 100% 지원 받는 것이죠, 지원 등급이 달라요. 좀 잘 살면 50% 나와요, 그것도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야해요. 신청하면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어린이집 가면 30만 얼마를 전액 지원해주고 집에[서 엄마가 직접 애를 돌보고] 있으면 1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애기 개월 수에 따라 다 달라요(29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정부의 양육지원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아동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어린 자녀 양육은 일하는 어머니에게 직장선택과 관련된 고민을 제공한다. 장거리 출근이나 장시간 근로는 적절한 자녀양육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게 된다.

[아기 낳고] 직장이 끊긴 거는 이제 아닌데, 그, 애기 때문에 불시의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혼자 키우다 보니까. 아, 거기 사장님이, 저희 회사가 한 2년씩 계속 영국계라서, 사장님이 바뀌시거든요. 영국에서 파견된 사람이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홍콩에서 온 지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계 출신이라서 무조건 출근을 아침 7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포에서 아침 7시까지 강남까지 가려면 애기를 새벽 5시 반에, 아니 새벽 6시 반인데, 근데 그렇게 봐주는 데가 어딴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그 시간을 들어서 일이 능률이 오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제가 무리를 해서 직장생활 계속 해야

53) 학업지속이나 집중적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미혼모는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맡아 키울 위탁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 소개되는 내용은 양육미혼모가 위탁모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위탁모 같은 경우 지금 정부지원이 2.6% 올라갔거든요. 왜 우리한테 위탁모를 안해주냐구요. 똑같이 가야지. 이게 입양하는 아이한테만 위탁모를 해주는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위탁모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엄마들이 사회 발전을 이루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이걸 도와주지 않는 거는 미혼모는 아이를 키워서는 안된다는 국가의 방침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38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33세 미혼모, 17개월 딸 양육).

양육미혼모들은 시설여건과 보육서비스 질이 높은 구립어린이 집을 선호하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들어가기 쉽지는 않다고 한다.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서도 공공보육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립을 보내고 싶은데, 200명씩 줄서 있어요. 사립도 갈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면 다 지원 해줘요. [구립을 더 선호한다 는거죠?] [구립은] 7살까지 다닐 수 있으니까. 유치원을 안가고 바로 학교에 갈수 있으니까 돈이 안들죠. 시설도 훨씬 좋고. 우유값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요. [아기 맡기는 것 불안한가요?] 조금 그래요. 애기가 물려서 왔더라구요, 근데 [선생님은] 못봤대요. 애기한테 물어봐도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옷을 안 벗겨봐서 못봤다 하고 그게 끝이죠. 그래도 안보내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 딸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있으면 밥을 먹더라구요. [집에서는] 단체생활이 아니라서 어리광이 심하더라구요. 배워오니깐 좋고. 보내고 나니까 반반이에요. 보내고 싶은 맘 반, 아닌 거 반. 몸은 좀 편해요. 마음은 엄청 불안했어요 처음에. [구립에 이름 걸어 놔어요?] 대기자에 넣었는데, 이사 가거나 하지 않고서는 자리는 거의 안 난다고. 주변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기자로 걸어놔야 한다고(29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나. 교육비

보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부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사교육이 확산되어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교육비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기본적 교육에 추가되는 특별활동에 대한 비용은 개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 양육미혼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같이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싱글맘이 됐어요. 그런데 가진 게 어느 정도 있다 해도 아이 키우다보면 없어지거든 사회가 안받쳐주면. 일하러 나가려면. 시간도 문제되지, 가장 큰 건 안 받아 주니까 미혼모라고....대학 졸업하고 서른까지 바둥 바둥 벌었다고 해도 아이 키우면서 10년을 다녀서 여자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고 게다가 양육하면서 2년이면 바닥나요. 세 살짜리 한 달에 양육비 얼마나 들까. 최하 90에서 120만원 자가, 전세이거나 월세까지 포함하면 120 기본 들어. 애가 커 가면 더 들어. 왜냐. 학원을 남들 배우는 건 가르쳐야하니까(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학습지는 [지원]해주지 0-7세까지 1년. [지역에 따라] 연장되는 구도 있는데 그래봐야 1년 반. 학습지 지원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00이가 지금 3세인데 지금 해 봐야 1년밖에 못했는

데, 지금보다 5세 때 하는 게 훨씬 담는 게 많더라. 애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상황이 안돼서 못 가르치면 어떨까(32세 미혼모, 30개월 아들 양육).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미혼모들은 교육관련 의복, 준비물, 외부활동,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감당하고 있었다. 과외활동이나 특별활동이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이만 빠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근데 똑같아. 어린이집도 원비만 지원이고 그 외는 안 되는데, 유치원은 원비도 급식비가 [도] 별도인데, 어린이집은 급식비 포함 원비거든요. 어린이 집은 매달 특별활동 하느라 다달이 내는 돈이 있어요. 다달이 자치구에서 8-10만원을 상한선을 줘요. 원비+10만원. 구로구 같은 경우 8만원 선을 줬대요. 8만원을 이 어린이집이 다 받은 거예요. 과학, 수학, 영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8만원을 매달 별도로 내는데. 유치원은 학기별로 내요. 6개월 단위로 교재비, 견학비 다 해서, 저희 애의 경우 학기별로 32만원이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38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나같은 경우, 입학할 때 입학비 원복에 입학금 등에 거의 40만원 나갔어. 체육복 하복 2벌, 겨울옷 원복, 패딩잠바, 그렇게 해서 거의 40만원. 매달 추가비용이 차량운행비 따로 받지, 특별활동비, 00같은 경우 영어 수업이 기본 하는 거 말고 따로 그거랑 발레. 그것만 하면 16만원. 그게 매월 나가는 거야. 나중엔 영어 하나 끊었어...희한하게 남들은 두 세개 하는데 하나라도 시켜야지. 남들 다 발레하는 데 지 혼자 교실에 있어봐. 지가 하고 싶대 옷을 사달래. 친구들이 하니까 지도 하고 싶은거야. ‘어머님 하실 꺼예요?’ 그러는 거야. 발레, 태권도. 태권도 보낼 때, 원비가 9만원이면, 체육복, 도복 이건 기본이야 한 38만원. 매달 9만원씩 원비 나가야지. 6세 아이한테 더 들어가는거야 어린 애기들보다. 어린애기들은 분유값, 기저귀값이지만(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보육료 지원을 받지만 사립은] 특활비, 미술이나 음악, 최저가 3만원씩하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요](31세 미혼모, 5세 아들, 3세 딸 양육).

[제 딸이 19개월인데] 체육이랑 영어 저희는 5만원. 그리고 소풍비, 매달 뭔가가 [돈 내는 것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먹는 약 따로 사야하고. 애기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런 건 지원 안 되고. 장도 안좋아서 비오틀라, 메디락 베베 그런 것도 사서 먹어야 하고. 영양플러스 지원비도 나중에 알았어요. 받은지도 얼마 안되거든요. 우유값은 처음엔 제가 냈죠(29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유치원은 뭐 어떻게 되요? 다 커버가 되요?] 예. 저는 수급권자니까요. 전액지원 되는데, 이제 저희는 사설이다 보니까 사립이다 보니까..저희는 19만 천원을 지원받거든요.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게,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게 22만원. 들어가죠. 특별 활동비가 따로 들어가니까, 그건 뭐 안하려고 하면 ‘하실 거죠?’ 다른 애들은 다하는데 내 아들은 안하면 혼자 놀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22만원이에요(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다. 보건소 보건 · 영양프로그램

보건소는 양육미혼모의 산전후 검사와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건강이 취약한 아동을 위해 영양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데, 보건소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미혼모가 적지 않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산전검사] 보건소에서 공짜로 했는데. 다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애기 임신하면서부터 알아봤어요. 초반에 ‘임신입니다’ 해서 보건소 가서 검사 무료로 받고, 보건소에서 철분제도 줘요. [전국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해주나요? 자격 필요 없나요?] 네. 그 지역 보건소 가면 그냥 해주는 거 같아요(29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집에서 아기 키우는 가정이나 그렇게 검색하니까. 그런 식으로[출산지원]만 받았고, 나머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영양플러스 성북구에서 하는데 애기 우유, 잡곡이랑 그런 거 한달에 두 번씩 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애기를 데려가서 애기를 검사해야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달이거나 하면 애가 발육이 부진하면. 보건소에 [신청해요]. 그것도 입소문으로 듣고서 신청[했어요]. 쌀, 우유, 감자, 당근, 김 이런거 조금씩 줘요. 구마다 다 있어요(29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영양플러스는 어디서 알았어요?] 성북구보건소에서요. 한 달에 한번 씩 [보건소에서] 교육이 나와요. 그럼 영양교육 엄마가 받아야 해요. 그리고서 자격이 되는지 본 다음에 애기도 3개월에 한번 씩 검사하고, 2년까지 지원이 돼요. 엄마가 교육을 한번이라도 안 받으면 자격이 안돼요. 저희 지역도 20명 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50명까지 몰려서 지원금 싹 다 끌어서. 원래 한 지역에 20명 밖에 안된대요(29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영양플러스는] 서대문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게. 우유, 계란, 당근, 김 이런거. 엄마들이 놓치기 쉬운 음식이거든요 당근같은거. 오니까 먹이게 되는 거예요. 감자도. [음식재료를 줘요?] 배달이 와요. 저희는 홈플러스에서 계란은 한 달에 두 번, 김은 두 번에 나눠서 올 때 있고, 우유는 격일로 1000밀리.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얼마나 받았어요?] 6개월. 재검해서 ‘빈혈있다’ 그러면 다시 받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웬만하면 다시 받기는 어렵죠. [처음엔 어떻게 아셨나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급권자니까 [영양플러스] 신청하라고. 푸드마켓도 있어요. 복지카드처럼 나와서 쌀같은거 살 수 있게끔. 수급권자가 동사무소에 미리 신청하면 쌀 20킬로 2만원이면 사요(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저도 [보건소에 영양플러스] 신청을 했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31세 미혼모, 5세 아들, 3세 딸 양육).

4. 주거관련 서비스

양육미혼모를 위한 정부의 주거관련 서비스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근거한 시설제공과 임대주택 제공이 있다. 양육미혼모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양육미혼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이 2003년부터 시작되어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주택을 얻을 때 돈이 얼마 없어서, 그 돈으로 집을 얻을때 그 돈으로는 얻을 수 있는 집이 지하 아니면, 모퉁이 돌아서서 어디 음침한 지역[인 경우가 많아], 정말 주저 앉아서 운적 많아요. 1층에 별드는 집을 얻는 게 희망이지. [임대주택] 현재 6개월마다 한번씩 재신청하라고 연락와요. 저는 수급자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린이집 지원이나 의료보험 혜택은 받게 해달라, 지금 돈은 벌지만 나가야 할 돈이 너무 많다... 임대주택 남으면 연락을 해주는데, 아이가 하나라 [순위에서 밀려서] 안된다(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한 시설에 미혼모 모아놓는 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봐요. 2년 후에는 또 갈 곳을 결정해야 하고, 주거 안정되지 않으면 아기 키우는 엄마들 불안해요. 가능하면 지역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해요(37세 미혼모, 25개월 딸 양육).

모자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많아져야한다는 데 반대해요. 공동생활시설은 기껏 2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엔? 여기에 투자할 돈을 매매임대나 주택에 투자해서 많은 엄마가 지역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설에 자꾸 가둬두면, 한 집에 3가구 살고 그러면 그러는 데서 트러블이 생겨요. 엄마들이 독립하도록 해야 하지. 길어야 2년, 모자원에 못 들어가면 똑같이 월세방에 있어야 하는데(38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시설을 늘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입소기간만 늘리면 수용인원이 줄어들고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갑작스런 입소기간 2년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현 정책을 유지하려면 시설이 조금은 늘어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대안은 입소기간을 일부 축소하고, 시설의 확충은 제한적으로 하되, 재가에 있는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6세 미혼모, 12개월 딸 양육).

양육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취지는 좋지만 머물 수 있는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여러 가구가 함께 생활하기에 개별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 못한다. 양육미혼모들은 지역사회에서 개별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지원되기를 바란다. 임대주택은 물량이 제한되고 입주자 선정기준이 미혼모가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미혼모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부족하여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던 한국사회의 과거를 돌아볼 때 미혼모 주거서비스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 정책이 요구된다.

5. 미혼모시설의 입양 연계 서비스

미혼모시설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입양연계서비스 제공이다. 양육과 입양 선택과 관련하여 미혼모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혼모 시설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편중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혼모의 증언이 최근에도 수집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미혼모시설이 미혼모 의사에 반하여 입양에 편중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어디서[라도] 미혼모가 출산을 해야 해. 주위 사람들에게 배제가 되는 상황이라, 출산 상담을 받기 위해 [시설에] 꼭 전화를 해. ‘그럼 입양을 하실 겁니까, 양육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봐. ‘양육을 한다’ 그러면 그럼, ‘저희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다 그래...들어갈 때 어떻게 얘기했냐, 양육이예요? 입양이예요? 이렇게 물으면 난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러면, ‘8월 출산이면 양육방에 자리가 없어서 입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 입양보낼게요’ 하고 [시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야 하니까(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⁵⁴⁾

54) 이 39세 미혼모는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했다가 취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입양기관이 비상식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을 경험하였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해당 미혼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어쨌든 [출산을 앞두고] 싸인은 안하고 친권포기각서를 받아요. 입양동의서 받고, 친권포기각서를 같이 가져오잖아요. 지금생각하면 [이러한 서류의 중요성에 대해] 내가 생각이 없었던 거 같애... 나 이도 있고. 불안한 상태에서 애를 낳는데 친권의 중요성을 설명도 안 해줬고. 나이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정보가 부족한데 어린 엄마는 더할 거란 말이야... [친권포기서] 뒷장에 뭐라고 적냐면..., 나중에 아빠가 나타나서 입양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엄마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다시 써요. 그리고 지장 찍어야 돼요.

애가 예정일보다 열흘인가 빨리 태어났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출산하고 병원에 있는데 오빠는 무조건 [입양] 보내라고 했으니까. 저는 입양 보내려고 아이 선물도 사서 준비했었어요. 한복을 사서 보낼까, 돌반지를 보낼까, 십자수를 하나, 영문시를 십자수를 아이 발바닥 사진

저는 회사 근처 역삼동 쪽으로 알아봤는데, 기본적인 상담도 안하던데요? 상담전화해서 ‘저 미혼몬데요’ 하면 ‘몇 개월이냐?’ ‘몇 개월이다’, ‘양육을 하겠다’고 하면 ‘자리가 없다’고 해요. 그 이상도 상담하려고 안해요(35세 미혼모, 27개월 딸 양육).

저 같은 경우 집에서 출산했습니다. 집에서 지지해줬구요. 임신후 2주 만에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그 남자는 안되겠다고 판단했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내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많이 알아봤어요. 집이 너무 좁아서 시설에 입소할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양육의지가 강하니까 상담 자체를

이랑, 그게 아이 입양 보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 밖에 없단 생각에 뜨개질도 하고. 그때도 반반이었어요. 보낼까 말까. 그런데 애가 일찍 태어나니까 오빠는 애를 보내라고 병원에 와 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만 보고, 내 가족들은 이 아이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게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오빠를 불렀는데, 오빠가 애 가는걸 봐야겠다고. ‘나는 니 인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못 사실 우리 부모님 인생도 중요하다. 보내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빠가 미국이든 어디든 내가 경비 다 대 줄테니까 보내라.’ 그래서 입양기관에 전화했는데 담당 사회복지사가 바빠서 못 온대요. 그러면서 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새벽 3시 출산인데, 그 다음날 온 거야 애를 데릴러 12시 넘어서. 그래서 [입양]동의서 제가 써 놓은 거 있죠 그거 들고 왔더라구. 신생아실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기 앉아서 싸인한거예요. 싸인 딱 떨어지니까 애기 안고 가더라구요.

나는 그때 슬프다 이런 것도 아무 생각이 없이, 내가 애를 안고 있다 넘겨주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아가 이제 그만 가’ 이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애는 태어나서 바로 가는 거라는 생각을 내가 머릿속에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거야. 눈물도 나지 않았어. 애를 보내고 나서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더라구요. 그 다음날 퇴원해서 택시타고 000[미혼모시설]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구요. 자고, 바로 다음날 애를 데려오겠다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반복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린 절차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애가 무슨 위탁 모가정에 간 것도 아니야. [입양기관 사무실] 자체 내에 신생아실이 있잖아. 나중에 찾으러가니까 신생아실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신생아실을 해놔요.

내 애를 내가 데려오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큰소리를 막 쳤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휴가 중이래.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된대. 담당자는 [아기가 출산한 병원에 와서 우리] 애 데리러 올 때 오지도 않았는데, 상담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기다리겠다. 그 며칠이 얼마나 [길던지]. 나는 안달이 나 미치겠는데, 그 사람[담당자]은 그 마음을 모르겠지. [애기를 입양기관에] 데리러가기 전날, 꿀떡 세고 아침에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위치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인터넷 찾아서 오세요, 물어보고 오시던가요’. 그거 아직도 생각난다.

데릴러 갔는데, 저 같은 경우 크게 항의를 했어요. 왜 애를 안주냐, 아직 간 것도 아니잖냐. [입양 보내라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되찾아오겠다고 입양기관에] 데리러 가면 돈 달라고 하잖아. 근데 저한테 달라고 안하더라구요. 보통 엄마들 다 그랬어. 저 전에도 애기 보냈다가 데리러 올 때 비용 달라고 해서 못 데려온 엄마도 있어요... 양육방[미혼모 시설의 양육하는 엄마들이 기거하는 방]에 있다가 그 친구도 8만원인가 주고 데려 왔어요. 딸래미. 모자의집(뭔가? 공동생활, 시설)까지 갔다가 퇴소한 [엄마였어].

[미혼모시설] 양육방에 있으면 분분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돈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하는 걸로 알았지. 한 30만원 들라냐? 그때 내가 00에게 ‘[지금] 가진 현금이 별로 없어서, 야 너 현금 좀 있으면 빌려달라’ 해서. 근데 나한테 [입양 보내지 않겠다고 입양기관에서 애를 되찾아 찾아올 때] 돈 달라 소리 안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아마 내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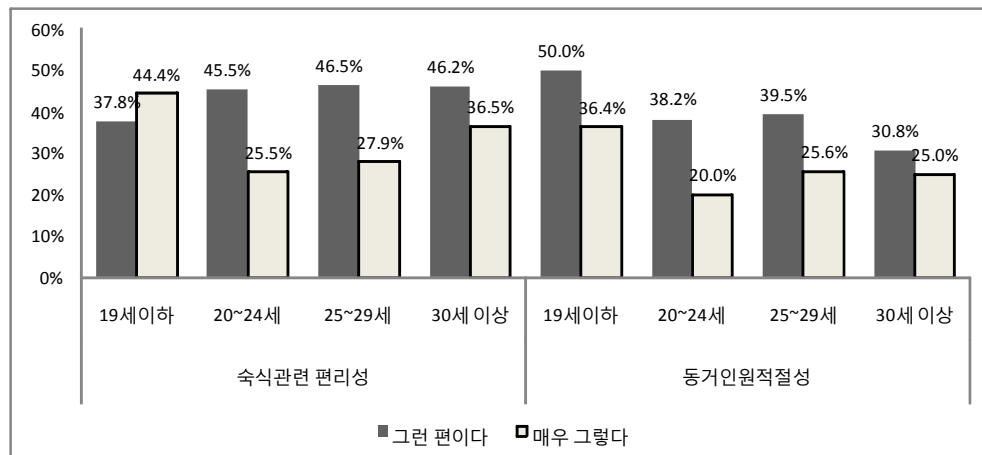
잘 안해 주고 [해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지 못했습니다] (28세 미혼모, 12개월 아들 양육).

상담을 받아보니까 홀트 먼저 받고, 대한 받고, 마지막으로 동방에서 받았어.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도 않고, 천천히 해야지 그 생각했는데, 일단 [상담을] 받았어? 그 사람들은 양육은 아예 말을 안 꺼내. 자기네는 입양기관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언제 출산이십니까’, ‘몇 개월이십니까’ 예정이 언제고 자기네들이 다 적어. 입양은 국내입양, 해외입양이 있고, 공개입양이 있고 비공개 입양이 있다. [기관들마다] 똑같이 하는 말이야. 그리고서 서류부터 내밀어 적으라고. 입양동의서 쓰잖아요(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6. 미혼모관련 시설 서비스 전반

본 절에서는 미혼모 관련 시설에 대한 양육미혼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시설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데이터 분석과 양육미혼모 집단 인터뷰를 통해 미혼모시설,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모자원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논의하려고 한다.

가. 미혼모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1. 숙식관련 편리성: 숙식관련 시설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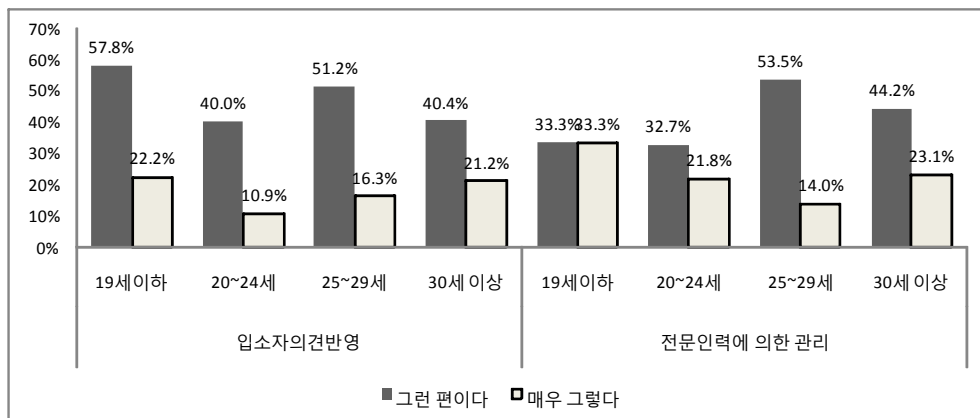
2. 동거인원 적절성: 한 방에 동거인원이 적절하다

〈그림 V-5〉 시설이용자의 숙식 편리성 및 동거 인원 적절성

미혼모시설 숙식과 관련 편리성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3.3%이고 그렇다가 44.1%로 다수가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산을 앞두고 사회관계의 단절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미혼모들에게 숙식과 산전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숙식관련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30대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20대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동거인원이 매우 적절하다는 비율은 26.3%, 적절한 편이라는 비율은 39.2%인데, 연령별로 보면 10대에서 적절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이 10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5.8%에 불과하였고, 20-24세는 58.2%, 25-29세는 65.1%다. 3분의 2에 해당되는 65.5%가 동거인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지만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되는 34.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설운영에 있어서 입소자 의견이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64.1%인데, 1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시설이 전문인력에 의해서 관리되는가에 대해 63.6%가 동의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20-24세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시설이 전문인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 34.5%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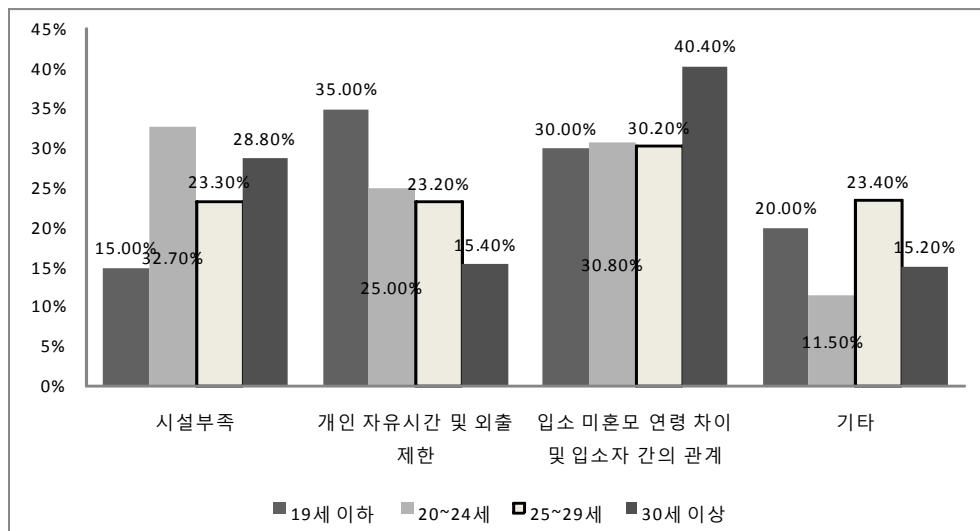
주: 1. 입소자 의견반영: 시설 운영에 있어 입소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이다

2.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 전문인력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V-6〉 입소자 의견반영 및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

나. 시설 이용시 어려운 점

미혼모자시설 이용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입소자의 연령차이 및 입소자 간의 관계라고 33.2%의 양육미혼모들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이 시설이 부족한 것이 25.7%, 개인의 자유시간이나 외출이 제한되는 것이 24.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어렵게 느끼는 점이 상이한데 10대의 경우는 개인의 자유시간과 외출 제한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다. 10대의 35%가 자유시간과 외출제한을 힘들어하였다. 20-24세는 시설의 부족, 30세 이상은 입소자 간 연령 차이와 관계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30세 이상 40.4%가 입소자 간 연령차이와 인간관계를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30세 이상 뿐만 아니라 10대와 20대 연령층에서도 30% 정도가 역시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료: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기타에는 '컴퓨터 사용 제한', '시설 담당자와의 관계', '엄격한 생활규칙', '교육프로그램 부족', '외부와의 단절'이 포함됨.

〈그림 V-7〉 미혼모시설 및 미혼모자시설 이용시 어려운 점

다. 미혼모시설 입소 공간의 부족

1) 미혼모시설 입소 동기

미혼모시설에서는 단체로 생활하기에 단체의 규칙이 적용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잘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혼모들은 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산과 관련하여 주위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가족과 대면하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갈 수 없는 경우 미혼모 시설은 동질적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한다.

시설에 들어갈 생각 전혀 없었다. 임신사실을 주위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한 명도 낳으라는 말을 안했다. 초기에 일찍 알았기 때문에 약간 낳지 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니까. 심지어는 룸메이트도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안했다. 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있기가 그랬다. 항상 마음이 불안할 때니까. 아무도 이 출산을 환영해주지 않았다. 비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로 들어갔다. 시설로 들어가면 일단 비난을 받지 않으니까. 000[미혼모시설]. [임신] 4개월째 상담을 받았는데 자리가 없어서 8개월 다 되어서 들어갔다 자리가 없어서 일을 계속했다...[혹시 다른 데를 알아봤나요?] 다른 데는 안 알아봤다. 제일 가까운 데였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출산후] 3개월 있다가 막연하게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막상 집에 돌아갈 생각하니 부모님께 죄송. [집] 나올 때 아빠가 저 임신한 사실도 몰랐어요. 남동생과 엄마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죄송한 거예요. 100일된 아이 데리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기(37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2) 미혼모시설 입소공간 부족

미혼모시설 입소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한 미혼모들이 있다. 양육미혼모들은 임신을 인지한 이후 출산을 위해 여러 시설의 입소 가능성을 알아보았는데, 출산에 즈음하여 입소가 가능한지를 미리 아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또 입소 이후에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을 하든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들어가야 하는데 입소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미혼모시설 입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양육의사를 밝히는 경우 입소를 거절당하여 입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입소 후에도 양육모를 위한 시설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시설에서 아이 낳았어요. 9개월 정도에 입소했는데.... 자리가 없었던 것도 있었고, 일찍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산전휴가 때문에 [출산 임박해서 입소한 거죠].. 시설에 들어가면 외부활동을 일체 할 수 없어요. 시설입소는 미리 신청하거나 예약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선착순이죠... 애기를 갖고, 애기아빠랑 진정성 없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강원도부터 부산까지 나한테 맞는 시설을 찾아봤어요. 1588이나 수신자부담 080으로 시작하는 시설 같은 경우 10대[미혼모]만 받아요....000은 산후조리 3개월까지 지원 되구요 모든 비용을 000이 부담해요. 출산이 11월 예정인데 10월말에 [000에] 입소가가능하지 물었더니,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6명 정도만 양육하는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수용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이 차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수시로 전화에서 입소가가능여부 확인하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 들어갈 곳을 △△△로 정했으니까 시설방문도 미리 해봤죠... △△△[시설]는 널찍하니 좋았는데 000은 딱 집 한 채. 그래도 나를 재워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마침 10월 초 000에 자리가 비었다고 오라는 거예요. 바로 산전휴가 쓰고, 짐 챙겨서 [출산을 앞두고 시설에] 갔어요(38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직장 다녔거든요, 월급으로 계속 병원 다녔어요. [굉장히 불안 했겠네요. 출산에 임박해서는?] 네. 집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니깐. 친구도 직장 아무한테도 말 안하고, 직장 동료니까 얘기하면 아무래도 [회사에 소문이 퍼지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혼모시설] 찾아보고 시설에 전화해서. 몇 군데 알아보고 서대문 쪽 000에 연락해서. [자리가 있다고 하나요?] 아뇨 와서 상담 받아봐야 한대요. [시설에 찾아가서] 와서 자리 있으면 입소가가능하다고 자리를 비워 놓을 수는 없으니까. 처음 임신 알고 얼마 안됐으니까 바로 들어가기가 그렇더라구요. 애기 키우는데 돈이 드니까 직장 계속 다니고 7개월 때 그만뒀어요. 그전까진 제 돈으로 [산전검사를 위해서] 병원 다녔어요. 그때까진 배가 별로 안 나와서 아무도 눈치 못했어요. [사표를 냈어요?] 네. [실업수당 못 받았겠네요?] 네. 000 미혼모 시설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표내고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출산 전까지 산전비용은 그냥 본인이 부담 안하고]. 네 거기서. [출산은 어느 병원에서 하셨나요?] 거기 [시설] 지정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시설에 다시 [돌아왔죠](31세 미혼모, 5세 아들, 3세 딸 양육).

시설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관리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관리하다 보면, 정말 들어와서 생활해야 할 친구들이 정원 꼭 차면 못 들어올 경우도 발생하죠. 입소자들이 많을 때는. 부족할 때는 괜찮은데요, 인제 한참 많을 때는 시설들마다 알아보면 다 꽉 차 있더라구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들어와야 할 친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해야 되고 애를 낳은 다음에 퇴소한 다음에 자리가 비워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서울 △△△ 미혼모시설 원장).⁵⁵⁾

55) 본 절에서 소개하는 미혼모시설장 인터뷰 내용은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3) 미혼모시설의 양육방 부족

오랫동안 미혼모 다수가 자녀를 입양 보냈기 때문에 현재 미혼모시설은 양육 미혼모를 지원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미혼모시설 입소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와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미혼모 시설 내 양육방의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6인 규모의 방에 10명이 거주한 경우도 있고, 양육미혼모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더 있고 싶어도 1달 만에 시설을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미혼모시설에는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도 있는데 이들은 양육미혼모가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내가 있을 땐 양육방[미혼모 시설에서 양육하려는 엄마를 위한 방] 정원이 6명이었다. 그런데 엄마들 이런 생각한다. 설마 애 데리고 오는데 갈 데 없는 데 쫓아내겠어? 그런 나는 문앞에서라도 자야지 이런 생각하고 오는 엄마들 있다. 양육방이 부족하니까. 입양을 보내겠다 하고 들어와도 마음 바뀌면 양육모로 전환[하죠]. 저희는 그때 6인수용인 방에 10명도 있었어요. 무조건 안고 들어가는 거야. 저 엄마 곧 퇴소하니까 좀만 버티자 이렇게(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시설에서 출산[했어요]. 임신 8개월쯤 입소[했어요]. 시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제가 천안 북부 쪽이 집인데 평택 00000이 집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입소 전부터 연락해서 8월쯤엔 자리 있을 거 같다 해서 들어갔죠....입소 전 아이 아빠 때문에 생긴 빚 때문에 신용회복지원 받다가. 수입 더 이상 없어서 파산면책 받으려고 서류 준비해서 접수하고, 바로 시설에 들어갔어요. 여름에 입소자들이 되게 많았고, 부모 학력, 혈액형 등 다 적고 시설 입소했죠. 저는 양육할 것이라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혔고, 만약 10대였으면 꼬치꼬치 했을 텐데, 나이도 있고, 저는 제가 다 미리 얘기를 풀어놔서 입양을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00000은 1방에 3~5명 있었고, 같이 지내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와 코드가 맞는 언니도 있었고. 저는 양육을 결정했는데, 3개월 정도 머물 생각을 했는데, 그때 00000에는 입소자가 많아서 그런지 출산 후 1달 밖에 보장 못한다고 [더 있지 못하고 나왔죠](37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저희가 여기서[미혼모시설에서] 아기와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양육방[입양보내지 않고 양육하는 엄마를 위한 방]을 만들려고 하긴 하지만 입양 아이들이 많은데 그걸 보게 하는 게 힘들다. 또 얘기해 보면 양육방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못 참을 것 같다고, 퇴소할 거라고. 서로 미혼모들 간에도 조금의 여유 없이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양육방 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아기와 엄마를] 데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대[들어오려고 대기하는 미혼모가 있기에 공간적 여유가 없다] (경기도 000 미혼모시설 원장).

라. 미혼모관련 시설 내 사생활 보장 미흡

미혼모 관련 시설은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를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미혼모 관련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자율성이나 사생활 보장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시설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다수의 입소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규칙을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설은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미혼모가 이용하는 시설 중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은 개별 가구가 독립적으로 부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모자원에서도 거주자의 외출과 외박 등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다. 미혼모 관련 시설이 입소자 및 거주자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이유는 미혼모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10대 미혼모는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지만, 성인 미혼모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성인 양육미혼모는 독립된 가정으로 자녀양육과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시설 밖에서 보호하지 못한 미혼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혼외출산을 도덕적 일탈행위로 보는 과거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양육미혼모를 여느 시민처럼 자율적 존재로 인정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다양한 미혼모 연구가 확인하듯이 미혼모 다수가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소지하고 있다. 이들도 여느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삶과 가족을 책임질 자질을 갖고 있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한다면, 정부의 정책과 시설 운영의 방식도 크게 변화하는데, 예를 들면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는 모자원에 이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근데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든 중간의 집[미혼모자공동생활의집]에 들어가든 모자원을 들어가든 이용할 수 있는건 그나마 다행이긴 해. 선택받았다고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시설들 자체가 내 사생활은 보호가 안돼요. 물론 케어를 해줘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어린 10대 어머니 케어를 해줘야하는 연령대가 있기는 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이

케어를 해줘야 하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약간의 제재도 들어가야 하고, 계속 복지사가 소위 잔소리도 해야 하지만, 시설 자체가. 저도 시설 이용했던 사람이지만 사생활 보호가 안돼요. 외출 외박 다 허락 받아야죠. 아이와 함께 있는 거는 이해해줄 수 있잖아. 제가 서른 다섯에 애를 낳았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 중간의 집은 그렇다쳐 기간이 짧으니까. 아이가 어릴땐 더 보호를 해줘야하고. 아이 엄마는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솔직히 모 자원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서 한 집당 한 가구를 주잖아 니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도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잖아요(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미혼모시설을 나온 양육미혼모를 위한 그룹홈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경제적 문제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거공간과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에 불과하고, 여러 가구의 공동생활에서 파생하는 생활의 불편은 양육미혼모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부엌을 공유하며 의무적으로 공동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점은 이들을 힘들게 한다. 양육미혼모 가족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시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중간의 집[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있는데, 어떻게 처신해야하고 이제 알겠는데. 마포 00000[시설명]. 같이 사는 거 정말 추천하지 않는다. 엄마들끼리 정말 친한 친구여도 아이로 인해서 서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중간의 집 건물은] 2,3층 있는데, 저는 3층에 30대 중반, 세 엄마 살다가 한 사람 나가고 이제 신생아 들어온다는데, ‘우린 이제 나죽었어’ 하고 살아야한다. 중간의 집, 방은 혼자서 써요... 방 크기는 큰데, 2층은 1사람이고, 3층은 세 가정이 있는데. 엄마들 나이도 맞고, 아이들 월령도 맞으면 좋은데, 울음소리 이런 거 때문에 정말 권하지는 않고. 정말 그래도 해야 한다면 두 가정 정도 [함께 사는 것은 괜찮죠]. 시설에서는 권리가 대등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 싸움이 많아요. 독립적으로 살아야해요(37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000[미혼모시설] 나오고, 구기동 중간에 집[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서 방 3개 [있는데서], 작은방은 혼자 쓰고.... 저는 [처음에 중간의 집] 자리가 없어서 순천, 의정부 가봤는데, 000[시설]은 솔직히 사이비 종교집단 같았어요. 문도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상담 받으러 갔는데, 누군가가 감시하는 느낌. 전라도 순천으로 상담받으러 갔어요. 좀 좁고 다세대 주택은 낡았지만, 거기서 가려고 결정하고 있는데 000[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자리가 나서 들어갔다. 000 다섯가구, 방은 세 개고. 1[가구], 2[가구], 2[가구] 사는데, 그땐 절실했고 그때 있던 어린 엄마들이 착했어. 그때 있던 엄마들이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싫다, 이런 집 너무 싫다. 000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오시고 엄마들 목소리를 내달라 그러는데 엄마들이 애길 안하는 거예요. ‘한 방에 한 사람만 살 수 있게 해달라[제가 려게 말했죠].’(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무나 다 받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혼모시설에서도 연결된 공동생활가정에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시설 입장에서는]지내보면서 좀 괜찮은 사람만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과의 잦은 트러블과 ‘나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보니 제가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곳에 연락하고 접촉한지 한 2-3개월 만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사실 4명의 엄마들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5명의 엄마가 살게 되었고 큰방 하나에서 저는 다른 엄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 지금 다른 [미혼모자]공동생활로 처음부터 갈 걸 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사정이 딱해서 원장님께서 빨리 들어오게 해주신 것인데요. 솔직히 각오하지 못한 일이라 매우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니, 가끔씩 보고하니깐 좋아요. 매일 있던 트러블이 없어져서요(26세 미혼모, 12개월 딸 양육).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있으면서 기초수급 받았네요?] 네. [엄마들 몇 명이랑 생활했나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빌라건물인데] 방1개에 애기랑 같이 [지냈어요]. 그건 편했어요. 선생님이 기초수급 빨리 신청하라고 해서 조건 맞아서. [중간에 집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2년제 학교 다녔어요. 네일아트. [학교 다닐 때는 누가 애기 봤나요?] 100일 때부터 어린이집 보냈어요. 아토피, 타박상 있었지만. [학교는 어디로 다녔나요?] 이수에 있는 충신대 2년제. 학교 3시에 끝나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선생님 와서 과외도 하고 애기가 6시에 왔어요. [식사준비와 청소는 어떻게 하셨나요?] [같이 사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당번하고, 언니랑 장보러 1주일에 한번씩 같이 가고. [지내는 것이 재밌었나요?] 재밌는 것도 있고, 단체생활이다 보니 짜증나는 것도 있고. 옆 애가 깨면 우리애도 깨고 하는. [방이 각자 있잖아요. 그래도 소리가 들리나요?] 네. 방이 각자 [모자를 위해서] 있어요. [빌라 한층에] 방이 3개짜리도 있고, 2개 짜리도 있어요. 저는 애가 커서 2개짜리로 갔는데. 한 집에 거실 하나 있고, 방 하나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아기들] 개월수가 다르고, 저는 6개월짜리였고, 처음에 왔을 때 다른 애는 15개월, 15개월짜리가 우리 애를 때리고. 그런 게 스트레스[였어요]. [식사는 같이 해야 하나요?] 같이 먹어야 해요(21세 미혼모, 5세 딸, 22개월 아들 양육).

마.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부족

미혼모시설은 입소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 받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혼모 시설은 산전후 미혼모를 위한 시설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각각 2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와 참여인원에 근거하여 시설을 평가하는 경우,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의 욕구에 이용자가 맞춰줘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다음에 소개되는 시설장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입소자 7명에, 분만 돌이 들어가서 8명에, 산후조리 돌이 들어가 버리면 6명 정도 남아서 프로그램 해서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직업교육을 하자니 누워있는 애들이 많고, 설문조사 할 때쯤 누워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직업교육이 없는 애들이 설문조사 해서 프로그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티켓을 어디서 얻어 와서 영화를 보러 가면 우르르 가는 것 싫다고, 반[은] 가고... 반이 남아 있으면 저녁 프로그램 생활지도원이 혼자인데 반은 남아있고 반은 가야 되니까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게 힘들었어요. 애들 욕구조사를 해서 진행해서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안 돌아가면 시설 평가에도 걸리고 그런 게 힘들어요(경북 0000 미혼모시설 원장).⁵⁶⁾

저희는 거의 애기를 키울 사람들이 많다. 입양 결정했는데 분위기가 양육모니까. 애들이 들어오면 1년 채우고 가니까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추세가 나이 있는 사람, 이혼 후 오는 사람도 오니까, 임박했다 얘기할 때 고민이 많이 된다. 나이 든 사람이 임신 한 미혼모들만 오면 프로그램 진행하기 쉬운데 양육 [모] 데리고 있으면 모든 게 아이 중심이라, 임신한 사람들도 도움받기 힘들다. 또 봉사자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서울 0000미혼모시설 원장).

저희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오전, 오후 계속 프로그램 돌아가고 저녁에는 검정고시 대비 공부를 하고, 월별로 중간에 신용경제 교육, 아까 신용카드 연체라든지 전화 쓰는 거라든지 또 지금 관련해서 이력서 쓰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문제점 중의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보니까 모든 산모를 다 참여시키기 힘들어서 꼭 해야 되는 필수 프로그램이 있고, 선택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는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하다보면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하는데, 의욕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하는 걸 싫어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또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해야 된다’ 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정말 안타깝고 직업 관련해서 저희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도 지금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여러 명이 취득했어요. 현재는 뉴스타트라고 정부에서 시도하는 청소년 직업탐색하고 취업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도 6명이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하면 30만원 돈이 나와요. 두 번째 달부터는 외부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대전 000 미혼모시설 원장).

시설 내부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혼모시설의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개별 미혼모 상황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기에, 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직업교육에 대한 미혼모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정부는 개별 미혼모시설에서 직업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노동부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

56) 여기에 소개된 미혼모시설장 인터뷰는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런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10대 미혼모는 직업교육 필요하다. 미혼모 한사람의 처한 상황,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미혼모들을 좀 더 다양한 그룹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정책도 다양한 미혼모에 맞게. 저는 직업교육 많이 들었어요. 목록 봤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10대 미혼모에게 적합한 미용사, 조리사, 간호사 이런 거 있다. 그런데 사회경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교육내용이고, 불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간을 쏟아야 하는(37세 미혼모, 25개월 딸 양육).

[시설에 있으면]경력단절이 된다. 직업교육이라는 게, 배우고 싶은 것이 없는데도 어쩔수없이 [그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 있지, 내가 하고 싶은거 아니다(37세 미혼모, 19개월 딸 양육).

[그런데 시설에서 제시하는 직업교육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거기서 선택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또 들어간다(38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바. 지역사회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자율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혼모의 의식과 생활방식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경향으로 인하여 집단의 규칙이 적용되는 시설을 피하려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다. 출산이나 의료와 관련된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받고 싶어 한다. 시설을 원하지 않은 미혼모의 사례는 관련시설의 시설장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9년부터 미혼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 거점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미혼한부모 가족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긴급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거점기관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향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미혼모들의 교육수준도 향상되었다. 여느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아이의 삶을 책임질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낸다면 이들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여느 일반 여성과 다를 바가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영향을 받아 2000년 이후 정부의 보육서비스와 직업훈련 서비스는 급속히 개선되고 확대되고 있다. 양육 미혼모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는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수혜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미혼모 자조모임은 정부의 서비스 정보 전달과 당사자의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향후 이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입소자의 경우는 의료비나 생활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시설에 입소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간혹 의료비만 혜택을 줘도 [좋겠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시나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도를 좀 해 놓으면 시설에 입소를 안 하더라도(인천 000 미혼모시설장 원장).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기가 밖에서 지내면 도움받기 원하는 미혼엄마들이 많거든요. 일단 그런 엄마들을 도와주려면 입소정원으로 잡아야 되거든요(서울 △△△ 미혼모시설 원장).

아이들은 시설에 오는 걸 싫어하면 밖에서 보호를 아무 데서도 받을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감당을 못하게 되고,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미혼모들에 대한 상담을 함으로써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대전 000 미혼모시설 원장).

서울시에서 한부모(000)지원센터 만들었잖아요. 미혼모들 퇴소하면 이런 엄마들한테 연계 해줘도 안 가요. 다시 가서 자기 정보를 얘기해야 되니까 원하지 않거든요... 저도 항상 미혼엄마들한테 정말 심리상담 이런 거는 좀 최소한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찾아가서 그 쪽에서 전문가가 있어서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판도 미혼모로 하지 않고 좀 방법을 찾아서 엄마들이 부담갖지 않고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서울시 관계자 만났는데 미혼모 시설들에서 연계해주는 걸 꺼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미혼 엄마들이 안 가는 거예요. 있다는 건 알려주는데(서울 △△△ 미혼모시설장 원장).

VI

양육미혼모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10대와 성인미혼모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필요	139
2.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139
3. 양육미혼모 자조 모임 활성화 적극 지원	140
4. 미혼모자시설(미혼모시설) 서비스 개선	141
5.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개선	142
6. 새로운 형태의 모자보호시설(모자원) 확대	143
7. 미혼부 책임 강화	144
8. 아동양육비 10만원으로 인상	145
9. 양육미혼모 관련 통계구축	145

1. 10대와 성인미혼모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필요

오랫동안 미혼모 관련 정책은 출산후 서비스 제공과 입양 연계에 집중되었다. 양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진 시기는 2000년 중반부터인데, 이때는 양육 희망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미혼모에 대한 자료는 시설 미혼모를 중심으로 축적되었고, 관련 정책도 이것에 기초했다. 본 연구에 의하면 10대 미혼모와 성인미혼모들은 동질적 집단이기보다는 양육의지, 시설 의존도, 교육 및 직업적 배경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10대 미혼모 비중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혼모 시설 자료에 근거한 기존 정책은 미혼모를 미성숙한 존재이며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것은 시설에 입소한 10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성인미혼모의 교육수준을 근거로 여느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10대와 성인 미혼모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각 집단에 적합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성인미혼모 정책은 사회적 차별로 인한 경력 단절의 회복과 어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10대미혼모 정책은 학업지속 지원, 성교육, 향후 진로지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혼외임신부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근로능력이나 양육자로서의 자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느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에게 보장된 출산휴가와 직장을 계속 다닐 권리가 이들에게 거부될 이유가 없다. 임신과 출산을 전후로 미혼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들을 백안시하는 사람들의 편견이다.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은 미혼모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러한 편견으로 많은 미혼모들이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을 거쳐 빈곤하게 된다. 근로의욕과 직업능력을 갖춘 미혼모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과 관

런하여 노동부는 혼외임신부를 퇴직하게 만드는 관행이 불법이며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이들의 권리를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장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다.

미혼모가 예기치 못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쓰면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면 빈곤자로 전락할 필요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며 살 수 있다. 혼외임산부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은 여성노동자의 권리 침해이고, 양육미혼모의 자립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편견은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복지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대대적인 캠페인, 언론을 통한 홍보, 관련 부처의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서 미혼모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

3. 양육미혼모 자조 모임 활성화 적극 지원

정책적 차원에서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자율성과 개성의 존중이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미혼모가 미성숙한 존재이며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이 원하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미혼모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이들이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혼모 당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가장 빨리 수집할 수 있다. 자조모임의 지원 강화로 미혼모 보호에 투입되던 정부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 정책은 미혼모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최근 대다수 미혼모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스스로 자조모임을 통해서 취업과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2000년 이후 직업훈련, 아동양육, 보건·영양, 복지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수혜자의 범위와 서비스의 질은 해마다 확대되고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산물이다.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의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 아동양육, 기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받는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적절히 홍보되고 전달된다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서도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설립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과 복지전달자인 동사무소가 미혼모 자조모임과 협력하고 교류하면, 지역사회 양육미혼모복지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4. 미혼모자시설(미혼모시설) 서비스 개선

시설에 초점을 두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자와 미혼모 당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서도 지역사회에서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진도 이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편견, 출산을 전후로 가족과의 갈등, 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들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미혼모자시설은 당분간 필요하다.

미혼모자시설의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미혼모를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존재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거공간의 편의성이 개선되어야 하고, 미혼모들의 사적 영역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체생활을 위한 규칙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산전후 서비스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미혼모자시설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하는데, 산전후 미혼모에게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고해야 한다. 또 시설 내부에서 직업훈련을 제공하려 하기보다는, 시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미혼모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원하는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미혼모자시설의 주요 기능은 출산에 임박한 미혼모에게 산전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미혼모 시설은 입양이 연계

되는 주요 통로이고, 많은 미혼모자시설이 입양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미혼모시설은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임산부들이 입소할 시설을 찾는 과정에서 양육 의사를 밝히면 미혼모자시설로부터 입소를 거부당하거나, 입소 후 원치 않는데도 입양을 권유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시설은 미혼모가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심사숙고하여 입양과 양육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혼모 의사에 반하여 입양을 권하거나, 양육하려는 미혼 임산부의 입소를 거부하는 시설이 확인되면 정부의 지원금 중단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5.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개선

지역사회 양육미혼모에게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출생신고 단계에서부터 동사무소에서 관련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이다. 자녀 출생신고 과정에서 양육미혼모인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동사무소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매뉴얼 제작과 담당공무원 교육이 시급하다. 동사무소에서는 양육미혼모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계나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을 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확인되었다.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2000년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복지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아동양육비 지급, 아아돌보미 서비스 제공, 집에도 돌보는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 제도가 2000년 이후 신설되고 확대되었다. 산전후 검사, 해산급여, 산모도우미, 영양프로그램 등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서비스이다. 미혼모는 산전후 서비스나 복지급여를 시설에 소속된 경우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 기

초생계급여를 통해서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고, 미혼한부모를 위한 거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전후 검사나 예방접종, 영양제공 서비스는 무료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양육미혼모들은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이 요구된다.

6. 새로운 형태의 모자보호시설(모자원) 확대

양육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의 대대적인 확대가 절실하다. 모자보호시설은 3년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무료 주거공간인데, 모자보호시설이 미혼모자공동생활보다 좋은 점은 부엌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족의 사적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10대나 양육과 진로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적합한 시설이라면 모자보호시설은 독립된 거주공간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새로운 형태의 모자보호시설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모자보호시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여러 세대의 한부모 가구세대가 밀집하여 살고 있어, 이웃주민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외부에 노출되는 밀집거주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집행자들이 미혼모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존재로 본다면 관련 정책의 접근 방식도 변화할 것이다. 모자보호시설을 확대할 때 현재와 같이 밀집된 거주지 형태보다는 2-4가구가 이웃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자보호시설 물량을 확보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 수량을 배분하고 관리를 위임한다. 구청과 동사무소 차원의 관리가 힘들다면 미혼모 자조모임과 협력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의 관리 인력을 지원한다. 양육미혼모 가구의 입퇴소 및 시설 사용과 관련된 규칙은 일반 세입자와 집주인의 계약에 준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다면 보호와 개입을 위해 미혼모나 한부모 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공급 물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양

육미혼모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미혼모는 양육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미래 구성원을 키워내느라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입양송출국이 된 뼈아픈 역사를 기억한다면 양육미혼모의 주거공간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의 소극적 태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양육미혼모에게 있어서 출산 후 처음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은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며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다.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못해 한국의 수많은 아기가 해외로 입양되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생각할 때 미혼모 가족을 위한 모자보호시설의 대대적인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 미혼부 책임 강화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비동거 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 체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이혼절차에서 양육비 집행을 용이하도록 2009년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다. 미혼부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하고 지급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은 오랜 시일과 비용, 그리고 감정적 소모를 동반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사업을 맡고 있다.

정부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혼모들은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정부의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받기지 않는 양육미혼모들이 많은데, 아기 아빠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였기에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 상대와 접촉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징수하는 기관이 없고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여건은 양육비가 절실하여도 미혼부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게 만든다. 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해 미혼부의 소득 및 재산정보나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정보를 법원에 협조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미혼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때, 정부가 아동의 복리를 위해 대지급하고 후에 미혼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혼부의 책임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양육비 집행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8. 아동양육비 1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는 현재 월 5만원인데, 월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 양육지원과 관련된 복지체계가 미비하여 미혼모 자녀 대다수가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대 입양 송출국이라는 오명을 국제사회에서 얻게 되었다. 해외입양과 관련된 미혼모들의 독특한 경험을 고려할 때,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하는 미혼모 자녀는 입양된 아동 못지않게 대우해주어야 한다.

입양가정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양된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 간 아동입양에 대한 1993년 헤이그협약에서도 입양에 앞서서 친부모가 아동을 키우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어머니가 직접 키우면 저소득 가정에 한하여 5만원 양육수당을 제공하지만, 어머니와 헤어져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키워지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복리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부합하지 않기에, 현재의 양육수당은 입양가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이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이들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

9. 양육미혼모 관련 통계구축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혼모에 대한 포괄적 통계가 없다. 정부는 기초생계수급이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복지 수혜자에 대한 정

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를 통해 취합하여 인구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포괄적 통계는 복지정책 수립과 관련 예산 책정에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영실(2002). “미혼양육모! 어떻게 도울까?”. 『제7회 서울시 여성복지세미나』. 서울특별시 여성복지연합회.
- 강은화(2006).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pp. 40-59.
- 강지원(2010).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의 실현 방안”에 대한 토론문”.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의 실현 방안』. 미혼모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포럼 2010년 7월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국여성법무사회.
- 공일숙(2005). “양육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98). “미혼모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 외(2006). 『미혼모의 출산 ·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영 · 이미정 · 홍승아 · 안상수 · 선보영(2009).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들레(2001). “어느 미혼모의 육아일기”. 『신동아』 2002. 12. 01 통권 519호 pp. 622-648.
- 박숙희(2001). “미혼모의 아동양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미(2010). “토론문: 미혼모는 있는데 미혼부는 없는 사회”.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의 실현 방안』. 미혼모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포럼 2010년 7월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국여성법무사회.
- 박홍주 · 조영미 · 채명숙(1993). “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25호.
-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_____ (2010).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_____ (2010). 『2010년도 사업안내 영양플러스+』. 보건복지가족부.
- _____ (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_____ (2008).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보건복지가족부.

- 사연경(2002). “한국미혼모 아동양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해정(2010). “경기도 양육미혼모부자 가족 생활실태 현황 및 과제”. 『경기도 양육미혼모부자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가족여성포럼 2010-19.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안순덕 외(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발생요인 설명과 복지대책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애란원(2010). 『애란원 50년사: 1960-2010』.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애란원.
- 윤미현(2000). “10대 미혼모들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0). 『2010 아아돌보미 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이미정 · 김혜영 · 김승연 · 류연규(2009).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연구: 해외입양, 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2010).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 지원 방안』. 제60차 여성정책포럼 2010년 2월 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시백 · 서정애 · 박인화 · 이제진(2002).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보건복지부.
- 이삼식(1998).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정(2003). “양육미혼모의 욕구에 대한 질적분석과 사회복지실천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종수(2003). “미혼양육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국여성법무사회(2010).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의 실현방안”.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의 실현 방안』. 미혼모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포럼 2010년 7월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국여성법무사회.
- 정용순(2003). “미혼양육모에 대한 사회적응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조주은(2010).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89.
- 한상연(2005). “양육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1998).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1-34.
- 허남순 외(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허남순·윤성승(2005). 『헤이그협약 비준 준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부 록

1. 설문조사지	153
2. 미혼모 지원 관련 제도	164

지역사회 미혼모가족 생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생활 실태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본 조사결과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 복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미혼모 복지 개선방안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 6.

연구책임자 : 이미정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우122-707) (T) 3156-7154

	인 터 뷰 자 료 정 리
① 인터뷰 일자	년 월 일 요일
② 인터뷰 시간	시 분 ~ 시 분
③ 인터뷰 장소	
④ 기 타	
⑤ 면 접 자	

지역사회 미혼모가족 생활 실태조사

귀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1.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문2. 귀하의 자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개월

문3. 임신 당시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예) 경기도 수원시

문4.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예)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중학교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③ 2·3년제 대학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④ 4년제 대학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⑤ 대학원 석사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⑥ 대학원 박사 졸업, 재학, 수료, 중퇴

문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없음
- ② 유교
- ③ 불교
- ④ 원불교
- ⑤ 기독교(개신교)
- ⑥ 천주교(가톨릭)
- ⑦ 기타

문7. 귀하의 부모님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류층
- ② 중상류층
- ③ 중류층
- ④ 중하류층
- ⑤ 하층
- ⑥ 최하층

문8. 귀하 자신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류층
- ② 중상류층
- ③ 중류층
- ④ 중하류층
- ⑤ 하층
- ⑥ 최하층

귀하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1. 출산 및 아기양육과 관련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문2번으로)

문1-1. 출산 및 아기양육과 관련하여 이용하셨던 시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용하셨던 시설사항을 모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시설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시 설 형 태	시 설 명	시설소재지 예)서울성북구	거주기간 예)2005.2.2~ 2006.11.2	아기연령 예)임신7개월 -생후2개월	현재 거주여부
① 미혼모시설					
② 중간의 집					
③ 모자원					
④ 기타시설					

문2. 출산 당시 미혼모 시설에 계셨나요?

- ① 예(☞문5번으로) ② 아니오

문2-1. 출산 당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지 않으셨다면, 출산을 전후로
거주했던 곳은 어디가요?

- ① 나의 집
② 부모님의 집
③ 형제·자매의 집
④ 친구의 집
⑤ 친척분의 집
⑥ 아는 분의 집
⑦ 기 타 _____

문3. 출산 당시 병원 동행 및 퇴원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나요?

- ① 있었다 ② 혼자서 했다(☞문4번으로)

문3-1.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셨나요? _____

문4. 출산전후 관련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① 내가 모아놓은 돈
② 부모님 도움
③ 형제·자매 도움
④ 친구의 도움
⑤ 친척의 도움
⑥ 아는 분의 도움
⑦ 아기아빠/아기아빠 가족
⑧ 기 타 _____

귀하의 출산 전 경제활동상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5. 임신 초기 (5개월 이전) 귀하께서 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 ① 학생 (☞문6번으로)
- ② 진학·취업준비·직업훈련 중 (☞문6번으로)
- ③ 구직활동(실업상태) (☞문6번으로)
- ④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문6번으로)
- ⑤ 소득활동 (☞문5-1번으로)

문5-1. 귀하는 당시 어떤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셨나요? _____

문6. 임신 초기 (5개월 이전)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월급(세금공제 전), 용돈, 아르바이트비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① 수입 없음
- ② 50만원 미만
- ③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④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⑤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⑥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⑦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⑧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 ⑨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⑩ 400만원 이상

귀하의 현재 생활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7.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곳은 어디십니까?

- ① 나의 집 (☞문7-1번으로)
- ② 시설(시설명: _____ (예)영락모자원) (☞문8번으로)
- ③ 부모님의 집 (☞문8번으로)
- ④ 형제·자매의 집 (☞문8번으로)
- ⑤ 친구의 집 (☞문8번으로)
- ⑥ 친척분의 집 (☞문8번으로)
- ⑦ 아는 분의 집 (☞문8번으로)
- ⑧ 기 타 (☞문8번으로)

문7-1. 귀하의 집은 다음 중 어떤 형태에 속합니까? 아래 보기 중 선택하시고, 대략적인 금액을 기입해주세요.

소 유 형 태	금 액
① 자 가	만 원
② 전 세	만 원
③ 월 세	보증금: _____ 만 원, 월세: _____ 만 원 (예: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만원)
④ 임대주택	만 원
⑤ 기 타	만 원

문8.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는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기 간 : _____ 년 _____ 월부터 ~지금까지 예:2007.5~지금까지)

아기월령 : _____ 개월부터 ~지금까지 (개월부터~지금까지)

문9. 요즈음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문10번으로)
- ② 진학·취업준비·직업훈련 중 (☞문10번으로)
(구체적으로)
- ③ 구직활동(실업상태) (☞문10번으로)
(찾는 일자리 구체적으로)
- ④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문10번으로)
- ⑤ 자녀양육에만 전념 (☞문10번으로)
- ⑥ 소득활동 (☞문9-1번으로)

문9-1. 귀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계신가요? _____

문10. 지난 1개월 간 귀하의 총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직업활동, 기초생계비, 아르바이트, 가족의 도움 등 모두 포함해주시요.

수 입 원	금 액
직업활동	만원
기초생계비	만원
한부모가족지원	만원
아르바이트	만원
부모님	만원
형제자매	만원
친구	만원
친척	만원
아기아빠	만원
아기아빠 가족	만원
기 타 _____	만원
합 계	만원

문11. 아이 임신이후 지금까지 받은 기초생계급여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 2008년 3월 ~ 2008년 6월 (생후 2개월 ~ 5개월) 기초생계급여 32만원, 의료1종
 2008년 7월 ~ 2009년 1월 (생후 6개월 ~ 13개월) 기초생계급여 62만원, 의료1종
 2009년 2월 ~ 2010년 5월 (생후 13개월 ~ 16개월) 기초생계급여 0원, 의료2종,
 교육훈련

문12. 지난 1개월 간 귀하와 자녀가 지출한 내용 및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 출 항 목	지 출 금 액	
월 세		만원
식 비 (외식비 제외한 식비)		만원
공과금(전기/수도/관리비 등)		만원
교통비		만원
통신비		만원
자녀양육비용	보육료	만원
	교육비(학원/학습지등)	만원
기저귀·분유		만원
아기장난감		만원
아기옷/신발		만원
의류/신발(본인)		만원
의료비(병원진료/약값)	본인	만원
	자녀	만원
보험료		만원
문화(책/영화/여행 등)		만원
기 타1 _____ (예:경조사비)		만원
기 타2 _____ (예:외식비)		만원
기 타3 _____		만원
합 계	_____	만원

아기임신 5개월 이후 지금까지 주거 등 주위여건 변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거주지 변화 및 생활변화	임신5개월 거주지 예) 부모님집	2번째 거주지 예) 미혼모 시설	3번째 거주지 예) 부모님집	4번째 거주지 예) 친구집	5번째 거주지 예) 공동생활가정	5번째 거주지 예) 나의 집
① 거주지						
② 아이연령						
③ 생활비						
④ 아이아빠와 연락						
⑤ 애아빠 양육비						
⑥ 아버지태도						
⑦ 어머니태도						
⑧ 형제태도						
⑨ 자신감						

아이아빠와의 연락

- ① 연락이 단절되었다 ② 가끔 연락한다
③ 자주 하는 편이다 ④ 거의 매일 연락한다

아버지 태도/ 어머니의 태도/ 형제

- ① 모르심 ② 전혀 이해/수용 못하심 ③ 약간 이해/수용하시는 편임
④ 많이 이해/수용하시는 편임 ⑤ 전적으로 이해/수용하시는 편임

앞으로 생활에 대한 자신감

- ① 매우 절망적이다 ② 약간 절망적이다 ③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④ 무슨 일이든지 해 낼 수 있다

☞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재가 미혼모 인터뷰 질문내용 ****

- 임신사실을 알고 나서 산전 사후 검진을 어떻게 하셨나요? 비용은 얼마나 나왔나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셨나요?
- 출산 당시 병원을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병원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 아기 출생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혹은 구청)에서 미혼모 혹은 한부모 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 출산 직후 아기 12개월 정도까지 관련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 아기 한 돌부터 최근까지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 기초생계비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구하였나요?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기초생계비가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변화하였나요?
- 기초생계비를 신청하였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나요?
- 의료급여는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의료급여로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의료급여 종류가 변화하였나요?
- 기초생계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안내를 하나요?
- 학교에 다니고 계신가요? 학비 등 지원을 받으시나요?
-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라서 아동수당, 교육비 지원 받으시나요? 얼마나 받으시나요?

- 보건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라 직업훈련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훈련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 기초생계를 받으면서 자활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자활급여는 얼마나 받으셨나요?
- 보육료 지원은 받은 적이 있나요? 언제부터 맡기셨나요? 얼마나 지원 받으시나요?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나요? 언제부터 이용하기 시작하나요? 비용은 어떠한가요?
- 임대주택 지원을 준비한 적이 있나요? 살 곳 마련과 관련된 계획은 어떠한가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가요?
- 생계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준비는 잘 되가요? 어떤 점이 어려울가요?
- 뒤돌아 보면 귀하가 임신하고 출산하여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존재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편하셨나요(편하셨을 것 같나요?)

☞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미혼모 지원 관련 제도

목 차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165
2. 미혼모 지원 관련 시설 현황	166
3. 2010년도 한부모가족사업 사업예산	168
4. 지방자치단체별 한부모가족사업 자체사업내역	169
5. 2010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단가 가이드라인	175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항목별 지원 단가 비교	176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통합관리운영비 세부내역	177
8.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178
9.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의료급여	179
10.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179
11. 행정지원인력 채용제도	180
12.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지원	180
13.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181
14.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 지원(취업성공 패키지)	182
15. 모·부자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183
16. 기초생활보장 개요	184
1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내용: 일반 및 조건부 수급자	185
1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188
19. 아동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영유아보육법)	190
20.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191
21. 방과후 보육료 지원	192
22.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93
23.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현황(2008년 현재)	194
24. 보건소 영양프로그램: 영양플러스 사업	195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별도가구 보장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미혼모·부자가족
- 한부모 가족 본인명의로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
-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에 포함 되는 경우

- 2010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0(원/월)	1,116,370	1,444,200	1,772,020	2,099,840	2,427,67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27,820원씩 증가(7인가구 2,755,490원)

※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 절차, 방법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고

- 부양의무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시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아동의 1촌의 직계혈족에 대해서는 부양능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함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4, 27, 40.

2. 미혼모 지원 관련 시설 현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시설수	정 원	시설수	정 원	시설수	정 원	시설수	정 원
총 계	85개소		94개소		100개소		107개소	
모자보호시설	40개소	1,067세대	41개소	1,086세대	41개소	1,064세대	41개소	1,062세대
부자보호시설	—	—	—	—	1개소	20세대	1개소	20세대
모자자립시설	4개소	60세대	4개소	60세대	4개소	62세대	3개소	41세대
일시보호시설	14개소	476명	14개소	476명	14개소	485명	14개소	491명
미혼모(자)시설	18개소	553명	20개소	577명	25개소	649명	27개소	692명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9개소	90명	15개소	146명	15개소	176명	19개소	236명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	—	—	—	—	2개소	26명

자료: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p. 245.

○ 연도별 모·부자보호시설 보호실적

(단위: 개소, 명)

연도별	시설수	입소자수	퇴소자수
2005	40	778	766
2006	41	812	909
2007	42	840	910
2008	42	836	889

자료: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p. 245.

○ 연도별 미혼모자시설 보호실적

(단위: 개소, 명)

구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시 설 수	18	20	25	27
입 소 자	2,123	1,920	2,161	2,153

자료: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p. 246.

○ 연도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보호실적

(단위: 개소, 명)

연도	시 설 수	입소정원	입소현원	종사자 현원
2006	16	146	98	23
2007	15	176	128	21
2008	19	236	192	35

자료: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p. 247.

3. 2010년도 한부모가족사업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 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사업량	예 산	사업량	예 산	
합 계			57,729		66,066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9	2,786	40	2,845	
－ 신축비	개소	1	65	1	645	
－ 증·개축비	개소	3	1,548	3	1,309	
－ 개·보수비	개소	17	649	20	640	
－ 기자재 구입비	개소	18	524	16	251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90,320	50,656	102,473	55,934	
－ 고등학생	명	42,064	29,482	45,473	30,914	
－ 아동양육비	명	48,256	21,174	57,000	25,020	
○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	개소		30		57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세대	200	[3,000]	250	[4,000]	
○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출지원			459		718	
－ 저소득한부모가족 보증보험료			171		352	
－ 저소득한부모가족 이차보전			288		366	
○ 가족역량강화지원			798		2,512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160		424	
－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325		325	
－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지원			313		1,09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신규)					365	
－ 가족충격완충망 운영지원(신규)					300	

※ []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11.

4. 지방자치단체별 한부모가족사업 자체사업내역

시·도별	사 업 내 용	지원단가 (원)	지원인원	예산액 (천원)
서울	○ 중·고생 교통비(인/240일)	1,440	16,880명	5,833,728
	○ 학용품비(인/년)			
	- 초·중·고생	25,000	9,987명	249,675
	- 중·고등생	42,000	16,880명	708,960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565,102
	○ 부자가족 주거안정지원			85,000
	○ 모자보호시설 운영(6개소) 인건비	26,815,000	30명	804,450
	○ 모자보호시설 운영(6개소)관리운영비	673,000	300명	201,900
	○ 모자보호시설 생활자(학생)교통비	1,440	90명	31,104
	○ 모자보호시설 생활자(학생)학용품비	40,000	160명	6,400
	○ 모자보호시설 생활자(학생)부교재·교양도서비	70,000	80명	5,600
	○ 모자보호시설 생활자 이동급식비	1,000	204명	74,460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5,000,000	58명	290,000
	○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2개소)인건비	26,815,600	15명	402,225
	○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2개소)관리운영비	704,000	100명	70,400
	○ 모자일시보호시설 교통비	1,440	60명	20,736
	○ 모자일시보호시설 학용품비	40,000	64명	2,560
	○ 모자일시보호시설 부교재·교양도서비	68,000	54명	3,672
	○ 모자일시보호시설 급식비	1,000	80명	29,200
	○ 미혼모자시설 운영(5개소) 인건비	26,815,600	32명	858,080
	○ 미혼모자시설 운영(5개소)관리운영비	1,262,000	130명	164,060
	○ 미혼모자시설 운영(5개소)미혼모특수치료비	266,000	300명	79,800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4개소) 인건비	26,815,000	9명	241,335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4개소) 운영비	900,000	40세대	432,000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1개소) 인건비	26,815,000	2명	53,630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1개소) 운영비 (관리운영비, 사회적응훈련비 등)	2,160		25,897
	○ 종사자 수당			
	- 5년 이상	3,480,000	40명	139,200
	- 5년 미만	2,880,000	48명	138,240
	○ 시설프로그램비	5,000,000	16개소	80,000
	○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6,600,000	2개소	13,2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여성추가지원			
	- 명절 위문비	30,000	630명	18,900
	- 하계수련비	40,000	630명	252,000
	○ 작은가족 큰사랑 잔치	36,500	630명	23,000
	○ 시설종사자 직무교육	150,000	100명	15,000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50.

170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사도별	사 업 내 용	지원단가 (원)	지원인원	예산액 (천원)
부 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2,441,236	55명	1,784,26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356,364	55명	129,6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47,734,273	11개소	525,077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난방비	1,000,000	9개소	9,0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 지원	60,000	485명	29,1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김장비 부식비 지원	12,500	485명	6,063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000,000	38명	76,000
	○ 모자보호시설 생활자 피복비	100,000	47명	4,7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샵	100,000	40명	4,000
	○ 중고생 교통비 지원	312,000	5,500명	1,716,000
	○ 초·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42,000	8,000명	336,000
	○ 제가 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운영	10,000	4개소	40,000
	○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1,363,636	44세대	60,000
	○ 한부모가족 고교입학생 준비금	50,000	420명	21,000
	○ 복지시설 자립프로그램사업	1,820,000	11개소	20,020
대구	○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교육 직업훈련비 지원	3,750,000	40명	150,000
	○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	100,000	270명	27,000
	○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50,000	3,740명	187,000
	○ 모자세대 자녀 심성훈련비 지원	20,000	50명	1,00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채수용품비 지원	50,000	11,000명	55,00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문화탐방		30명	7,000
인천	○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160,000	3,321명	531,360
	○ 중·고생 학습비 지원	360,000	5,117명	1,842,120
	○ 중·고생 교통비 지원	160,000	5,117명	818,720
	○ 중·고생 교복비 지원	200,000	1,828명	365,600
	○ 한부모가족 아이돌보미 파견	5,000,000	30명	15,000
	○ 난방 연료비 지원	120,000	7,616명	913,920
	○ 월동대책비 지원	250,000	350명	87,500
	○ 건강검진비 지원	120,000	500명	60,000
	○ 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지원사업	52,500,000	5개소	262,500
	○ 기술교육비 지원	1,000,000	112명	112,000
	○ 대학 입학금 지원	1,000,000	20명	20,000
	○ 질병 치료비 지원	1,000,000	10명	10,000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6개소	1,488,226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51.

사도별	사 업 내 용	지원단가 (원)	지원인원	예산액 (천원)
광 주	○ 자립지원비(세대/년)	600,000	620세대	372,000
	○ 세대주 사회적응훈련 및 자녀 캠프(년2회)	106,000	100명	10,600
	○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피복비(인)	70,000	80명	5,600
	○ 미혼모자시설 생활자 여성용품 구입비(인/월)	30,000	480명	14,400
	○ 종사자 특별수당(인/12월)	100,000	15명	18,000
	○ 취업준비 교육지원(6월)	600,000	53명	32,000
	○ 예비 창업교육(세대주)	183,000	30명	5,500
	○ 저소득 한부모가족사업 리플렛제작			4,000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설,추석)	100,000	700세대	70,000
대 전	○ 자녀생활 교육비	120,000	427명	51,240
	○ 입학생 학용품비(초·중·고)	50,000	840명	42,000
	○ 월동비	220,000	2,650세대	583,0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춘계 부식비	12,000	179명	2,148
	- 월동용 김장비	13,000	179명	2,327
	- 종사자 특별수당	180,000	23명	49,680
	- 명절(설, 추석)위문(10,000원*2회)		179명	3,580
	○ 모자보호시설			
	- 도서구입비(15,000원*4회)		31명	1,860
울 산	- 하계수련회가족캠프)	100,000	22세대	2,200
	○ 모자일시보호시설 거주자 피복비		55명	4,400
	○ 교육교재비(인/12월)			
	- 초·중학생	50,000	1,895명	1,137,000
	- 고등학생	70,000	780명	655,200
	○ 가계지원비(세대/12월)	50,000	2,110세대	1,266,000
	○ 전세자금 지원	2,000,000	50세대	100,000
	○ 여름·겨울 캠프	100,000	200명	20,000
	○ 치료회복 사업	100,000	60명	6,000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52.

사도별	사 업 내 용	지원단가 (원)	지원인원	예산액 (천원)
경 기	○ 학습재료비(초·중·고 인/월)	15,000	28,981명	5,216,580
	○ 중·고 신입생 교복비(인/2회)	150,000	5,962명	1,788,600
	○ 생필품비(세대/2회)	50,000	22,492세대	2,249,200
	○ 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인/월)			
	- 5년 이상	200,000	27명	64,800
	- 5년 이하	150,000	22명	39,600
	○ 시설환경 개선비(개소)	5,000,000	10개소	50,000
	○ 시설 입소자 부식비(인/365일)	700	358명	91,468
	○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개소)	5,000,000	10개소	50,000
강 원	○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피복비(인)	130,000	188명	24,440
	○ 학습비 지원(초·중·고 인/년)			
	- 초등학생	70,000	1,730명	121,100
	- 중·고등학생	100,000	2,025명	202,500
	○ 신입생 교복비(중·고)	200,000	650명	130,000
	○ 대학 입학금	1,500,000	120명	180,000
	○ 난방연료비	300,000	3,635세대	1,090,500
충 북	○ 난방비 지원(4개월)	50,000	3,300세대	660,000
	○ 수학여행비(중학생)	100,000	450명	45,000
	○ 가족캠프 지원	125,000	80명	10,0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3개소	522,375
	○ 모자보호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2,000,000	15세대	30,000
충 남	○ 학용품비(중·고생)	40,000	2,102명	84,080
	○ 방과후 능력개발비(중·고생)	200,000	2,102명	420,400
	○ 참고서 구입비(중·고생)	80,000	2,102명	168,160
	○ 수학여행비(중·고생)	100,000	3,427명	342,700
	○ 월동비	200,000	3,060세대	612,000
	○ 대학입학금	600,000	135명	81,000
	○ 한부모가구주 기술교육(3월)	2,400,000	133명	319,200
	○ 시설 입소자녀 보조학습비		100명	60,000
	○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12월)		17명	33,600
	- 3년 미만	100,000		
	- 3년 ~ 5년	150,000		
	- 5년 이상	180,000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53.

사도별	사 업 내 용	지원단가 (원)	지원인원	예산액 (천원)
전 북	○ 교복비(중·고생, 인/년)	170,000	1,377명	234,090
	○ 참고서 구입비(중·고생, 인/년)	50,000	3,168명	158,400
	○ 학용품비(중·고생, 인/년)	30,000	3,168명	95,040
	○ 교통비(중·고생, 인/년)	800	1,691명	297,616
	○ 대학입학금	1,500,000	180명	270,000
	○ 월동비	200,000	2,488세대	496,600
	○ 피복비	50,000	2,488세대	124,400
	○ 영세세대 자립금	2,000,000	46세대	92,000
	○ 모자시설 세대 김장비	100,000	120세대	12,000
	○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 피복비	100,000	30명	5,0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기능강화 캠프	120,000	300명	36,000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설·추석)	100,000	100명	10,0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수당		34명	48,510
	- 5년미만	120,000		
	- 5년이상	150,000		
	○ 수학여행비(중·고생, 인/년)	300,000	740명	222,000
전 남	○ 생활안정자금지원(세대/월)		7,513명	2,704,680
	○ 대입자녀 학자금 지원	1,000,000	502명	502,000
	○ 아동양육비 지원(인/365일)	109,500	3,055명	334,524
	○ 교통비(중·고생, 인/240일)	216,000	2,517명	543,672
	○ 장애가족 생활용품 지원	500,000	89세대	44,500
경 북	○ 학용품비			
	- 초등학생	100,000	1,654명	165,400
	- 중학생	200,000	1,042명	208,400
	○ 대학입학금	2,000,000	410명	820,000
	○ 월동 연료비(4월)	400,000	3,109세대	1,243,600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2,000,000	120세대	240,000
	○ 시설 입소자 부식 김장비	50,000	410명	20,500
	○ 시설 입소세대 하계수련비	210,000	122세대	23,500
	○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운영	—	120세대	40,000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54.

174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사도별	사 업 내 용	지원단가 (원)	지원인원	예산액 (천원)
경남	○ 생활자립금 지원	3,000,000	189세대	567,000
	○ 직업훈련비	500,000	89명	44,500
	○ 난방연료비	400,000	6,492세대	2,596,800
	○ 건강관리비	100,000	474세대	47,400
	○ 방과후 자녀학습비	480,000	1,475명	708,000
제 주	○ 직업훈련 생계비(6월)	300,000	25명	45,000
	○ 월동준비금(세대/년)	300,000	206명	61,800
	○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3,000,000	150명	450,000
	○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동하복)	250,000	768명	192,000
	○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70,000	532명	148,960
	○ 수학여행 경비	250,000	725명	181,250
	○ 대학입학금	1,000,000	176명	176,000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2,000,000	13명	26,000
	○ 모자보호시설 하계수련회		3개소	4,000
	○ 미혼모시설 입소자 의료비		1개소	4,000
	○ 미혼모시설 입소자 직업훈련비		1개소	8,000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자립정착금지원	2,000,000	3명	6,00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냉난방비		3개소	12,000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55.

5. 2010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단가 가이드라인

1) 통합관리운영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	모자부자 보호시설* (인/년)	모자자립 시설 (인/년)	일시보호 시설 (인/년)	미혼모자 시설 (인/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세대/월)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 (인/월)	모·부자공동 생활가정
지원 단가	565,000	139,000	601,000	1,313,000	954,000	213,000	139,000

* 3. 통합관리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2) 항목별 지원비

(단위 : 원)

구 분	학용품비(인/년)			부교재비 (중고생, 인/년)	교통비 (중고생, 인/240일)	아 동 급식비 (인/365일)	미혼모 특수 치료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단가	19,600	32,000	34,000	70,000	실비*	900	239,000

* 교통비 : 시설 소재지 마을버스 왕복요금

* 부자보호시설 : 주·부식/ 취사연료비(3,700원, 인/일), 월동대책비(2,300원, 인/1월)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47.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항목별 지원 단가 비교

가. 통합관리운영비

(단위 : 원)

유 형 별	2009년	2010년	비 고
모(부)자보호시설(인/년)	549,000	565,000	3.0%인상
모(부)자자립시설(인/년)	135,000	139,000	"
모자일시보호시설(인/년)	584,000	601,000	"
미혼모자시설(인/년)	1,275,000	1,313,000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세대/월)	927,000	954,000	"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인/월)	207,000	213,000	"
모(부)자 공동생활가정(인/월)	-	213,000	

나. 항목별 지원비

(단위 : 원)

항 목 별	2009년	2010년	비 고
－ 학용품비(인/년)			
· 초등학생	19,000	19,600	3.0%인상
· 중 학 생	31,000	32,000	"
· 고등학생	33,000	34,000	"
－ 부교재비(중고생, 인/년)	68,000	70,000	"
－ 교통비(중고생, 인/240일)	실비	실비	-
－ 아동급식비(인/365일)	800	900	12.5%인상
－ 미혼모특수치료비	232,000	239,000	3.0%인상
－ 주·부식, 취사연료비(인/일)*	3,600	3,700	"
－ 월동대책비(인/1월)*	2,200	2,300	"

* 부자보호시설만 해당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48.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통합관리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원)

항 목 별	2009년	2010년	비 고
－ 수용기관경비(인/년)	36,000	37,000	3.0%인상
－ 건물유지비(㎡)			2002년 기준
－ 공공요금(인/년)	41,200	42,400	3.0%인상
－ 난방연료비(150일)	4,000	4,100	"
－ 차량유지비(대/년)	1,898,000	1,954,000	"
－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년)	412,000	424,000	"
－ 도서구입비(시설당)	227,000	234,000	"
－ 의료비(인/년)	36,000	37,000	"
－ 약품비(인/년)	3,600	3,700	"
－ 프로그램비(인/월)	6,200	6,400	"

* 2010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심리검사 등의 검사 실시, 정신보건센터 및 병원, 치료센터 등을 통한 전문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함.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249.

8.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수급자 선정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적용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미혼모부 가정
-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과 금융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 ※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산정시는 생활준비금(300만원)과 금융부채(담보·신용·약관대출 등)를 공제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 ◆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 15%
-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 ※ 금융재산 산정시는 생활준비금(300만원)과 금융부채(담보·신용·약관대출 등)를 공제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87-88.

9.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의료급여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15일
- 지원금액: 1, 2종 구분없이 20만원
- 사용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산부인과의 개설된 병원 또는 보건기관
- 진료과목 제한 및 상한금액 설정
 -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89.

10.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 출산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출산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 지원금액: 2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1일 4만원 범위내 사용액 제한)
 - ※ 2010.4.1 이후 신청자부터 30만원 한도
 -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 사용기간: 카드수령시부터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KB 국민은행 영업점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88-89.

11. 행정지원인력 채용제도

-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자문회의 등 포함)에서 근무할 “행정지원인력” 채용시 저소득층 우대(미혼모·부 포함)
 - 행정지원인력 신규 채용시 10% 이상을 저소득자로 채용
 - 직종유형: 사무보조, 우편물 구분원, 시험연구보조원, 통계조사원 등
 - ※ 행정지원인력의 범위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행정자치부, 2006.12)에 의해 관리되는 “무기계약근로자”,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 파견, 용역 등에 의한 간접고용 근로자 제외
- ☞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90.

12.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항 :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 지원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57-58.

13.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

-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한부모가족(1순위)
 - ※ 동일순위내 경쟁시
 자활사업 참여기간(3점~7점), 당해지역 연속거주기간(1점~3점), 부양가족수(1점~3점),
 청약저축납입횟수(1점~3점), 최저주거기준미달(3점~4점)
- 대상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지원내용: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 2회연장(최장 6년)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116-117.

○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1순위)
 - ※ 입주자선정: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및 구청장)
- 지원내용: 임대기간은 최초 2년, 2년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117.

14.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 지원(취업성공 패키지)

- 지원대상: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이하 가구원으로 18-64세 이하인 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인정액 (B = A × 1.5)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보험료 (B × 0.02665)	20,161	34,328	44,409	54,490	64,570	74,651

※ '10년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액 상한 설정

※ 건강보험료 미납자를 감안하여 납부액과 부과액을 동일하게 운용

■ 지원내용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 ※ 1단계 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실비 3만원 지급
- ※ 지원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하여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지급(지급대상은 일반신청자로 한정,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자활대상자 제외)
-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시, 3차례에 걸쳐 취업성공수당 지급
(3개월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일자리/ 23단계 참여일 이후 취업-취업지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까지 인정)
(취업일 기준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118-119.

15. 모·부자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경감요건: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모자 또는 부자가정세대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 중 또는 학생인 세대에 대해 보험료 경감 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

※ 보험료 경감기준

구 분	경감적용	적 용 요 건		구비서류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모자·부자가정	30	360만원이하	5,500만원이하	재학증명서 등
	20		8,500만원이하	
	10		13,000만원이하	

주1)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주2) 경감 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

자료: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121.

16. 기초생활보장 개요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²²⁾
- ②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③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④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근로능력 있음 처리
- ⑤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5-93호 회귀·난치성 질환 목록(107개)에 해당할 경우(부록참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KCD 분류번호 확인
 - 회귀·난치성 질환으로 보건소 등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자료: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 5, pp. 65-66.

1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내용: 일반 및 조건부 수급자

① 생계급여

- 일반수급자

- 급여내용: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제공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2010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타 지원액(B)	82,164	139,901	180,983	222,065	263,147	304,229
현금급여기준 (C=A-B)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주거급여액(D)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생계급여액 (E=C-D)	335,198	570,742	738,341	905,941	1,073,540	1,241,139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증가(7인 가구 : 1,774,296원)

-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자)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3월마다 조건이행여부 확인후 지급여부 결정

② 긴급생계급여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 급여대상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급여액: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37.6%)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10년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89,518	322,692	417,451	512,210	606,969	701,728

※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94,759원 추가지급

- 급여기간: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 급여방법: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다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③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2010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u>504,344</u>	<u>858,747</u>	<u>1,110,919</u>	<u>1,363,091</u>	<u>1,615,263</u>	<u>1,867,435</u>
주거급여 한도액	<u>86,982</u>	<u>148,104</u>	<u>191,595</u>	<u>235,085</u>	<u>278,576</u>	<u>322,067</u>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 ※ 주거급여제외대상자: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쉼터, 한국전쟁보호 공단시설 및 에이즈쉼터’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 급여내용

- 주거현금급여: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2010년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단위 : 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현물 급여	<u>9,000</u>	<u>14,000</u>	<u>19,000</u>	<u>23,000</u>	<u>27,000</u>	<u>31,000</u>	<u>36,000</u>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00원 추가

- 주거현물급여: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급여 지급(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원칙이나,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3년 1회이상 현물주거급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교육급여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시행령 제16조제2항)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해서는 학비 전액을 지급

※ 2004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급여내용

-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과서대(부교재비포함): 고등학생, 1인당 112.3천원 지급(연1회)
- 부교재비: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1인당 34천원 지급(연1회)
-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1인당 46.6천원 지급(학기당 23.3천원씩 연 2회)

⑤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출산: 사산 또는 유산 포함(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만 해당), 낙태 비해당

-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지급)

⑥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 50만원

⑦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자료: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141-154, pp. 155-164.

1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지원대상

-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 보장시설 자체 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27쪽 참조, 부록 조건표 참조)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 단,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만을 고려

※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 급여내용

- ① 생계급여: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보장시설에)

※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36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213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36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 ② 주거급여: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 ③ 교육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 ④ 장제급여, 해산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자료: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197-198, pp. 204-212.

19. 아동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영유아보육법)

가. 지원대상(만0세~4세)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4세 아동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0~만2세아동은 지원 불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³⁵⁾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2)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나.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영유아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영유아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영유아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총일	야간	24시
영유아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100%	만0세	383,000	383,000	574,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영유아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60%	만0세	229,800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03,300
			만2세	16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영유아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30%	만0세	114,900	114,900	172,35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만4세	51,600	51,600	77,400

자료: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253-254.

20.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만5세아도 지원됨에 유의
- 2010년도 만5세아보육료는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만5세인 2004.1.1~12.31일 출생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함
- 2005년 1.1~2.28일생 아동이 상위반(만5세반)으로 편성되더라도 만5세아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차등보육료를 지원
※ '09년에 만5세아보육료를 지원받은 '04.1.1~2.28일 출생아동은 만5세반에 재편성되더라도 만5세아보육료는 재지원하지 않으며 차등보육료를 지원
- 취학대상(2003.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신만5세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지원단가 : 172천원

- 만5세아보육료 지원 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에 따른 보육시설 실수납액과 정부지원단가의 차액을 수납하지 않음
- 만5세아 지원아동에 대하여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는 소득하위50% 이하 정부지원단가로 함

자료: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256-257.

21.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12세 이하 취학아동)

-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단위 :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19	137	154	168

나. 지원단가

1) 일반아동

- 정부지원단가(만5세아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2)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1,500원)
 -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만5세아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장애아동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100% 지원)
 -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원

자료: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262-263.

22.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0세(3개월 이상)~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희망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파견, 월 80시간(연 480시간 이내)

※ 이용일 현재 만 12세 이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경우 연 720시간(월 80시간) 지원

- 서비스 수요유형에 따라 아동양육중심의 양육돌봄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돌봄서비스 제공

- 기관 돌보미 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서비스 제공(2010 신규)

※ 기관 돌보미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기관

※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서비스: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맞벌이·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연계원칙

- 예약 가정 비 경합시 신청순으로 서비스 연계

- 예약가정이 동시에 서비스 신청하거나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동일 순위내에서는 저소득 우선지원)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저소득 한부모가정)

② 그외 한부모 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③ 맞벌이 가정

④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중에서,

· 12세 이하 쌍둥이,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순 연계

■ 예산: 총 30,849백만원(국비 19,705백만원, 지방비 11,144백만원)

■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 기본 가격: 시간당 5,000원 (주말·심야 6,000원)

아동수	기본가격	심야(주말)가격
1명	5,000원	6,000원
2명	7,500원	9,000원

※ 심야: PM 9:00 ~ AM 8:00, 주말: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 이용료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이용요금(1시간당)		
유형	소득 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이용요금 80%지원)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100% (이용요금 20% 지원)	5,000원	1,000원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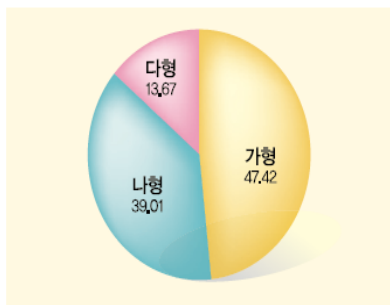
자료: 『201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10), pp. 4-5, pp. 18-19, p. 22, pp. 25-27.

23.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현황(2008년 현재)

■ 아이돌보미 지원 현황

- 사업시행기관: 2008년 현재 65개소
- 아동돌보미 총 2,518명 양성
- 총 378,169명 아동을 대상으로 280,141건의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 가정 소득 유형별 비율(%)〉



〈이용 아동 연령별 비율(%)〉



자료: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24. 보건소 영양프로그램: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개요

-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 사업수행 보건소 : 전국 16개 시도 250개 보건소

■ 지원대상

- 만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유산 및 사산한 여성도 포함), 수유부

※ 대상자적인정기간

구분	자격기간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 6개월 간격 재심사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후 7개월 계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가구 건강보험료가 최저생계비 120%에 준하는 기준치 미만인 경우 자부담 제외

※ 보충식품비 단가: 1인당 월 62,000원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 대상자 1인당 62,000원(국비지원)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 미만: 대상자 1인당 55,800원(국비지원)/6,200원(수혜대상자 부담)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적용

구분	설명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 2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구분	설명
우선순위 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 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우선순위 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6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 7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추가우선순위

- 소득수준이 더 낮은 대상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예) 최저생계비 대비 120% 혹은 150% 미만 대상자 우선선정
-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안에서 추가 우선순위 부여할 수 있음
 - 유아 중 1-2세 아동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등에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

※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꿀, 오렌지 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 가정배달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특성에 따라 대상자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과 병행 가능

- 정기적 영양평가

자료: 「2010년도 사업안내 영양플러스+」, 보건복지가족부(2010), pp. 4-6, pp. 10-11, p. 35.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2010년 9월 발행

발행인 : Richard Boas

발행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UMSN)
1908 OFFICIAL BD, Shinmoon-ro 1ga,
Kwanghwamoon, Chonro-ku,
Seoul 110-999 Korea
전화 / 02-734-5007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